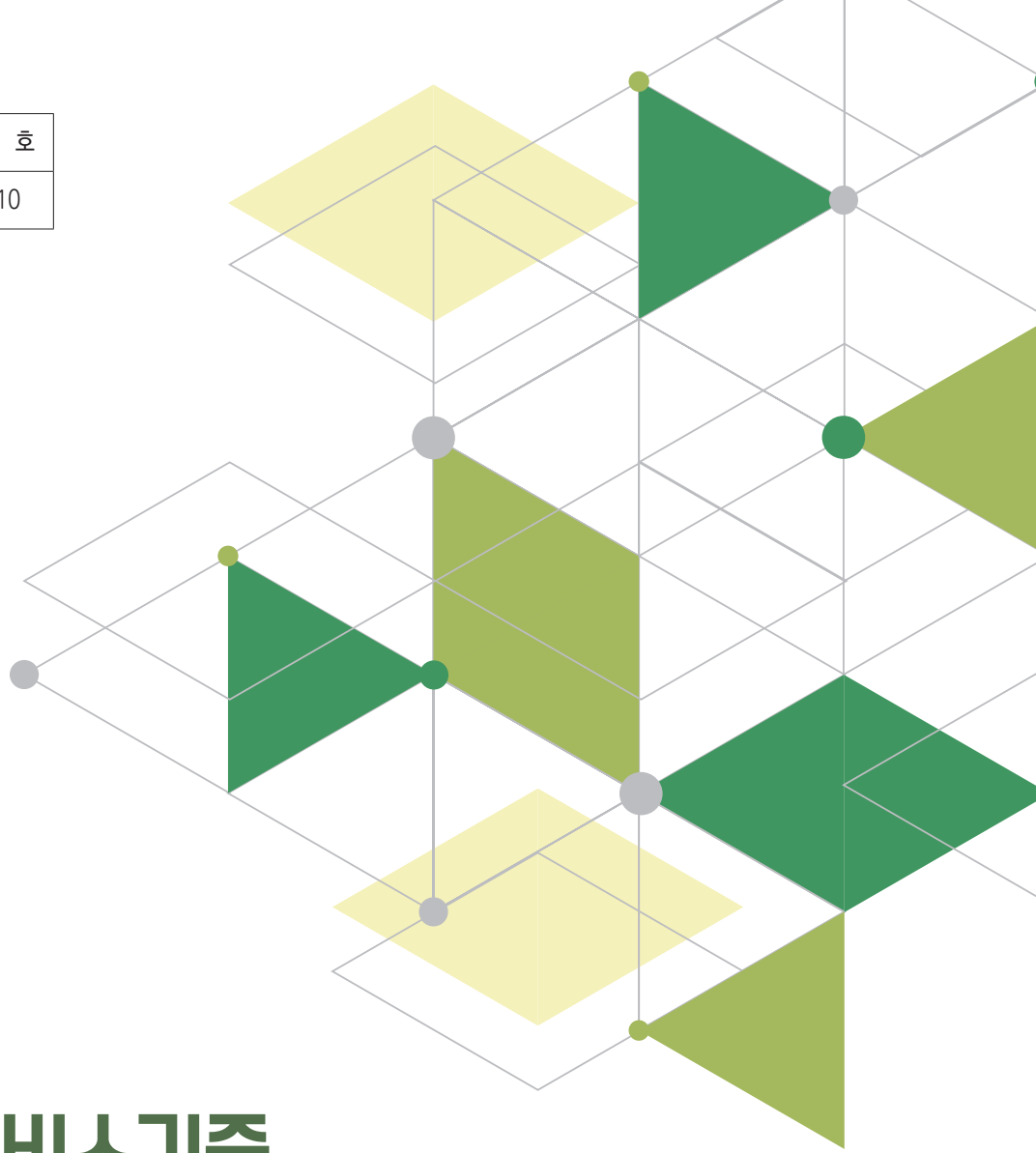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0349-10



2022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 담당

권인혜 | 전문연구원 | 연구 총괄

나현수 | 연구원 | 자료조사 및 분석

손경민 | 연구원 | 자료조사 및 분석

연구보고 E20-2022-3

2022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등 록 |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 2022. 12.

발 행 인 | 김홍상

발 행 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 쇄 처 | (주)프리비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제1장 농어촌서비스기준 개요

- 1. 제도 도입 배경 1
- 2. 제도 연혁 3

제2장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 구성 및 이행실태 점검 방법

- 1. 항목 구성 7
- 2. 점검 방법 및 자료 17

제3장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결과

- 1. 주요 점검 결과 21
- 2. 세부 점검 결과 24

제4장 농어촌서비스기준 개선을 위한 고려사항 및 향후 계획

- 1. 농어촌서비스기준 개선을 위한 고려사항 89
- 2. 향후 계획 91

부록

- 1. 2022년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행정조사표(시·군 대상) 93
- 2. 2022년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부처 간 협조자료 요청 목록 97
- 3. 2022년 시·군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결과 99

- 참고문헌** 111

표 차례

제1장

| | |
|--|---|
| 〈표 1-1〉 농어촌서비스기준 관련 업무 추진 현황(2011~2022년) | 6 |
|--|---|

제2장

| | |
|---|----|
| 〈표 2-1〉 농어촌서비스기준과 기초인프라의 국가 최저기준 비교 | 8 |
| 〈표 2-2〉 읍 지역 도시가스보급률 전망 | 13 |
| 〈표 2-3〉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의 국가최소기준 및 목표치 | 15 |
| 〈표 2-4〉 농어촌서비스기준 점검 방법 및 자료 | 17 |
| 〈표 2-5〉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을 위한 자료 구축 현황 | 19 |

제3장

| | |
|---|----|
| 〈표 3-1〉 2022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주요 점검 결과 | 21 |
| 〈표 3-2〉 국가최소기준에 따른 2022년 농어촌서비스기준 목표치 및 이행실태 점검 결과 .. | 22 |
| 〈표 3-3〉 진료 항목의 지역별·중요과목별 의료기관 평균 접근시간 | 25 |
| 〈표 3-4〉 진료 항목의 지역별·중요과목별 서비스기준 충족 주민 거주지 비율 | 26 |
| 〈표 3-5〉 진료 항목의 동·읍·면부 중요과목별 의료기관 평균 접근시간 | 27 |
| 〈표 3-6〉 진료 항목의 동·읍·면부 중요과목별 서비스기준 충족 주민 거주지 비율 .. | 27 |
| 〈표 3-7〉 진료 항목의 서비스기준 충족 시·군 현황 | 28 |
| 〈표 3-8〉 응급의료 항목 이행실태 현황 | 31 |
| 〈표 3-9〉 영유아 보육·교육 항목의 지역별·시설별 평균 접근시간 | 34 |
| 〈표 3-10〉 영유아 보육·교육 항목의 지역별·시설별 서비스기준 충족 주민 거주지 비율 | 34 |
| 〈표 3-11〉 영유아 보육·교육 항목의 동·읍·면부 시설별 평균 접근시간 | 34 |
| 〈표 3-12〉 영유아 보육·교육 항목의 동·읍·면부 시설별 서비스기준 충족 주민 거주지 비율 .. | 35 |
| 〈표 3-13〉 영유아 보육·교육 항목의 서비스기준 충족 시·군 현황 | 35 |
| 〈표 3-14〉 노인복지 항목 이행실태 현황 | 38 |
| 〈표 3-15〉 초·중등교육 항목의 지역별·시설별 평균 접근시간 | 41 |

| | |
|---|----|
| 〈표 3-16〉 초·중등교육 항목의 지역별·시설별 서비스기준 충족 주민 거주지 비율 | 42 |
| 〈표 3-17〉 초·중등교육 항목의 동·읍·면부 시설별 평균 접근시간 | 42 |
| 〈표 3-18〉 초·중등교육 항목의 동·읍·면부 시설별 서비스기준 충족 주민 거주지 비율 | 43 |
| 〈표 3-19〉 초·중등교육 항목의 서비스기준 충족 시·군 현황 | 43 |
| 〈표 3-20〉 평생교육 항목 이행실태 현황 | 46 |
| 〈표 3-21〉 문화 항목의 지역별 평균 접근시간 및 서비스기준 충족 주민 거주지 비율 | 49 |
| 〈표 3-22〉 문화 항목의 동·읍·면부 평균 접근시간 및 서비스기준 충족 주민 거주지 비율 | 50 |
| 〈표 3-23〉 문화 항목의 서비스기준 충족 시·군 현황 | 50 |
| 〈표 3-24〉 도서관 항목의 지역별 평균 접근시간 및 서비스기준 충족 주민 거주지 비율 | 53 |
| 〈표 3-25〉 도서관 항목의 동·읍·면부 평균 접근시간 및 서비스기준 충족 주민 거주지 비율 | 53 |
| 〈표 3-26〉 도서관 항목의 서비스기준 충족 시·군 현황 | 54 |
| 〈표 3-27〉 체육시설 항목의 지역별 평균 접근시간 및 서비스기준 충족 주민 거주지 비율 | 57 |
| 〈표 3-28〉 체육시설 항목의 동·읍·면부 평균 접근시간 및 서비스기준 충족 주민 거주지 비율 | 57 |
| 〈표 3-29〉 체육시설 항목의 서비스기준 충족 시·군 현황 | 57 |
| 〈표 3-30〉 슬레이트 소재 주택 철거 사업 실적 | 60 |
| 〈표 3-31〉 상수도 항목 이행실태 현황 | 62 |
| 〈표 3-32〉 하수도 항목 이행실태 현황 | 64 |
| 〈표 3-33〉 난방 항목 이행실태 현황 | 67 |
| 〈표 3-34〉 대중교통 항목 이행실태 현황(법정리) | 70 |
| 〈표 3-35〉 대중교통 항목 이행실태 현황(시·군) | 71 |
| 〈표 3-36〉 생활폐기물(영농폐기물) 항목 이행실태 현황 | 74 |
| 〈표 3-37〉 생활폐기물(생활폐기물) 항목 이행실태 현황 | 74 |
| 〈표 3-38〉 방법설비 항목 이행실태 현황 | 77 |
| 〈표 3-39〉 경찰순찰 항목 이행실태 현황 | 80 |
| 〈표 3-40〉 소방출동 항목 이행실태 현황 | 83 |
| 〈표 3-41〉 창업·취업 컨설팅 교육 항목 이행실태 현황 | 86 |

제2장

〈그림 2-1〉 경상남도 거창군 산부인과 항목 접근성 및 ‘주민 거주지 비율’ 측정 사례 .. 11

제3장

〈그림 3-1〉 진료 항목 서비스기준 충족 지역 현황 29

〈그림 3-2〉 응급의료 항목 서비스기준 충족 지역 현황 32

〈그림 3-3〉 영유아 보육·교육 항목 서비스기준 충족 지역 현황 36

〈그림 3-4〉 노인복지 항목 서비스기준 충족 지역 현황 39

〈그림 3-5〉 초·중등교육 항목 서비스기준 충족 지역 현황 44

〈그림 3-6〉 평생교육 항목 서비스기준 충족 지역 현황 47

〈그림 3-7〉 문화 항목 서비스기준 충족 지역 현황 51

〈그림 3-8〉 도서관 항목 서비스기준 충족 지역 현황 55

〈그림 3-9〉 체육시설 항목 서비스기준 충족 지역 현황 58

〈그림 3-10〉 상수도 항목 서비스기준 충족 지역 현황 63

〈그림 3-11〉 하수도 항목 서비스기준 충족 지역 현황 65

〈그림 3-12〉 난방 항목 서비스기준 충족 지역 현황 68

〈그림 3-13〉 대중교통 항목 서비스기준 충족 지역 현황 72

〈그림 3-14〉 생활폐기물 항목(영농폐기물) 서비스기준 충족 지역 현황 75

〈그림 3-15〉 생활폐기물 항목(생활폐기물) 서비스기준 충족 지역 현황 76

〈그림 3-16〉 방법설비 항목 서비스기준 충족 지역 현황 78

〈그림 3-17〉 경찰순찰 항목 서비스기준 충족 지역 현황 81

〈그림 3-18〉 소방출동 항목 서비스기준 충족 지역 현황 84

〈그림 3-19〉 창업·취업 컨설팅 교육 항목 서비스기준 충족 지역 현황 87

1

농어촌서비스기준 개요

1. 제도 도입 배경

- 도·농 간 생활 격차 완화와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정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농어업인삶의질법’)
- ‘농어업인삶의질법’ 제5조 및 제6조에 근거하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계획으로 농어업인 등의 복지증진과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지역개발 촉진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함.
- 단일 부처에서 해결이 어려운 문제들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범부처 계획임.
- ‘제1차 기본계획(2005-2009)’ 기간 동안 133개 과제에 대하여 22.8조 원의 투용자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관련 사업을 지속 추진 중임.
- ‘제4차 기본계획(2020-2024)’ 기간에는 4대 부문 178개 과제에 대해 51.1조 원의 투용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 농어촌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중앙정부의 적극적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농어촌 공공서비스 공급에 관한 객관적·과학적 기준의 필요성이 제기됨.

- '제2차 기본계획(2010-2014)' 수립 당시 농어촌 공공·민간 서비스에 대한 공급기준을 설정함.
- 농어촌의 다양한 공공·민간 서비스의 공급 실태 및 주민 수요 분석을 통해 농어촌서비스기준의 기틀을 마련함(송미령 외 2009, 송미령 외 2009, 김광선 외 2010).
- 영국의 '농어촌서비스기준' 및 독일의 '전 국토에 대한 등가치적 생활 조건 확립' 등 농어촌 공공서비스 공급 기준과 관련한 해외 정책 사례 조사를 실시함.

참고: 영국의 농어촌서비스기준 도입 배경과 주요 내용¹⁾

- 1985년 발생한 광우병이 영국을 휩쓸면서 영국의 농촌은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쇠퇴에 직면함.
- 이후 영국 정부는 광우병 이외에도 다차원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농촌 문제에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기 시작함.
- 농촌의 양극화, 사회적 배제, 지역서비스 공급 부족, 일자리 부족, 환경 악화 등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모든 부처들이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대처하기 위해 노력함.
- 그 결과, 영국 정부는 지속가능한 농촌사회를 구축하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2000년 「농촌백서」(Our Countryside: the future)를 발간하고 농촌 발전의 비전을 제시함.
- 특히 「농촌백서」에 명시된 사항으로, 농촌발전의 비전과 관련하여 '공평한 서비스 접근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농어촌서비스기준'(Rural Services Standard)을 공표함.
- 영국의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와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달성해야 하는 주요 서비스의 국가적인 최소 수준(national minimum)을 의미함.
- 영국의 농어촌서비스기준은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점차 간소화됨. 즉 2000년 처음 발표된 것은 14개 부문 35개 기준이었지만, 2004년에는 11개 부문 35개 기준, 그리고 2006년에는 8개 부문 13개 항목으로 간소화됨 - ① 교육 및 아동 서비스, ② 광대역 통신망(학교), ③ 사회적 돌봄, ④ 우체국 서비스, ⑤ 보건, ⑥ 인터넷 접속, ⑦ 긴급서비스(구급·소방·경찰), ⑧ 교통.
- 영국은 2007년부터는 중앙정부 차원의 농어촌서비스기준 운용을 중단하고, 기준 설정에 대한 의사 결정권을 지방에 이양함. 그 이유는 첫째, 국가 최소 수준 측면에서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기 때문임. 둘째, 농어촌 지역의 다양성 및 지역 간 상이한 여건과 차별성으로 인해 전 국가적으로 공통된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더 이상 운용하는 데 한계가 따랐기 때문임.

1) 송미령·김광선·박주영. 2009. 「기초생활권 생활서비스 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참조.

2. 제도 연혁

- ‘농어촌서비스기준’은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2차 기본계획’ 시기에 신규 도입한 제도임.
 - ‘농어촌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공공서비스(public services)’를 의미하며, 초안은 8개 부문 30개 항목을 설정함.
 - 이후 전문가 검토와 공청회 및 국회 토론회, 관련 부처의 실무자 협의 등을 통해 2009년 말, 8개 부문 31개 항목으로 최종(안)을 구성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제출함.
 - 2010년 ‘농어업인삶의질법’ 개정을 통해 농어촌서비스기준 도입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농어업인삶의질법’은 농어촌서비스기준이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위원회가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달성 정도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도 및 시·군·구 계획에서도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을 위한 노력을 장려함.

- 농어촌서비스기준 각 항목의 목표치는 제도 도입 당시 삶의 질 향상 정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를 고려하여 설정하고, 구득 가능한 최신 현황 및 통계 자료를 근거로 제시함.
 - 주요 서비스 시설의 과부족 분석 결과와 관련 통계 및 부처별 성과지표 등을 반영하고, 설문조사 및 현장 인터뷰,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목표치를 설정함.
 - 목표치(안)는 관련 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인터뷰, 전문가 설문조사 등 ‘적합성 확인’ 절차를 통해 확정함.

-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각 항목별 달성 정도에 대한 점검 및 평가가 지속적으로 실시됨.
 - 2011년 8개 부문 31개 항목으로 시작된 농어촌서비스기준은 2013년 ‘안전’ 부문과 ‘경찰순찰’ 항목이 추가되어 9개 부문 32개 항목으로 확대 개편됨.

- ‘제3차 기본계획(2015-2019)’ 수립 시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실효성 강화 및 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제도를 개편함.
 -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이원화하여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핵심항목’ 7개 부문 17개와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제정 및 운용하는 ‘선택항목’으로 구성함.
 - 계획 수용성과 달성 가능성, 주민 수요 조사 및 전문가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핵심항목을 대폭 축소하고, 목표치도 현실화하여 재설정함.

- ‘제3차 기본계획’ 기간에는 제도 개선과 실효성 강화를 위한 연구를 수행함.
 - 2017년 관련 부처의 담당 공무원 및 분야별 전문가, 농어촌 주민, 전문지원기관(한국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진으로 구성된 농어촌서비스기준협의회 개최를 통하여 이행실태 점검이 어려운 주택 항목 및 경찰순찰 항목에 대한 점검 방법의 개선 및 목표치 재 설정에 관련하여 논의를 진행함.
 - 2018년 전문지원기관에서는 주택 항목의 개편 방안 도출을 위한 심층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전문지원기관 및 충남연구원이 공동으로 ‘농어촌서비스기준 실효성 강화를 위한 지자체의 정책 연계 및 추진 체계 개선 연구’를 수행함.

- ‘제4차 기본계획(2020-2024)’ 수립 시기와 맞물려 2019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고, 2020년 법제화 과정을 거쳐 새롭게 개편된 농어촌서비스기준에 따라 점검 방법을 개발하고, 이에 따른 이행실태 결과를 도출함.
 - 주요 개편 내용은 정부의 국가적 생활 SOC 확대 기조에 따라 체육시설, 도서관, 생활 폐기물 3개 항목을 신설하고, 6개 항목에 대해서는(진료, 영유아 보육·교육, 도서관, 초·중등교육, 문화, 체육시설) 접근성 측정방식 적용함.

참고: '농어업인 삶의 질법'의 농어촌서비스기준 관련 주요 내용

- 제3조 제6호: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정의
 - 농어촌서비스기준이란 농어업인 등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요구되는 공공서비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항목과 그 항목별 목표치를 의미
- 제5조 제1항 제10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의 내용(범위)
 - 5년마다 '농어촌서비스기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기본계획 수립
- 제8조 제1·2항: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
 - 정부는 농어업인 등의 복지실태, 농어촌의 교육여건 및 교통·통신·환경·기초생활여건 등 지역개발에 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조사해야 하며, 조사 항목·방법 등을 정할 때에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 제42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보고 등
 - ② 정부는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결과, 해당 연도 시행계획, 전년도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에 대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0. 8. 28.>
- 제44조 제1항~제5항: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운용 등
 - ① 정부는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정·운용할 수 있음.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③ 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시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야 함.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시행계획, 시·도 계획 및 시·군·구 계획을 세우고 시행할 때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⑤ 정부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달성 정도를 점검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에 실태조사 등을 위탁할 수 있음.
 - ⑥ 제1항에 따른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 및 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표 1-1〉 농어촌서비스기준 관련 업무 추진 현황(2011~2022년)

| 연도 | 연차별 공통업무 | 연차별 특별업무 |
|-------------------|--|---|
| 2011 | (1) 점검통계를 활용한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① 공식통계 구축 ② 부처 협조를 통한 통계 구축 ③ 지자체 행정조사 실시 (2)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지수 ① 종합·부문별 이행지수 ② 핵심 이행지수 | (1)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삶의질향상계획 반영 실태 분석 ① 기본계획 분석 ② 2011년 시행계획 분석 ③ 시·도계획(충남), 시·군 계획(화천군·장흥군) 심층분석 (2) 사례지역 심층조사 ① 시·군 단위 삶의 질 향상계획 분석 ② 기준 항목 관련 사업예산 분석 ③ 읍·면 단위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조사 |
| 2012 | | (1) 농어촌서비스기준 주요 부문별 연구 ① 농어촌 도로·교통 부문 (2) 농어촌서비스기준 개편안 마련 ① 농어촌서비스기준 현장 적합성 및 달성가능성 조사 ② 농어촌 주민의 공공서비스 만족도 및 정책수요 조사 (3) 농어촌서비스기준 관련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모범사례 발굴 → '총괄팀'의 별도 자료집 발간 |
| 2013 | (1) 점검통계를 활용한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① 공식통계 구축 ② 부처 협조를 통한 통계 구축 ③ 지자체 행정조사 실시 (2)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지수 ① 종합·부문별 이행지수 | (1) 농어촌서비스기준 주요 부문별 연구 ① 문화 부문 심층연구 (2)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 평가 ①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 전문가 평가 조사 ② 농어촌서비스기준 관련 공공서비스 향상 여부에 대한 주민 만족도와 서비스 수요 조사 (3)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중·장기 운영방향 제시 |
| 2014 | (1) 점검통계를 활용한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① 공식통계 구축 ② 부처 협조를 통한 통계 구축 ③ 지자체 행정조사 실시 (2)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지수 ① 종합·부문별 이행지수 | (1) 농어촌서비스기준 개편안 마련 ① 개편안의 핵심항목 및 선택항목 구성 (2)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개선 방안 |
| 2015 | (1) 이행실태 점검·평가 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주요 업무: 핵심항목 이행실태 점검·평가 | (1) 이행실태 점검·평가 기관: 9개 시·도 연구원 (2) 주요 업무: 선택항목 제정 및 이행실태 점검·분석 |
| 2016 ~ 2018 | (1) 이행실태 점검·평가 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주요 업무: 핵심항목 이행실태 점검·평가 및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의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 도출 | (1) 이행실태 점검·평가 기관: 7개 시·도 연구원('16~'17) 8개 시·도 연구원('18) (2) 주요 업무: 선택항목 이행실태 점검·분석 |
| 2019 | (1) 이행실태 점검·평가 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제4차 기본계획을 반영한 농어촌서비스기준 개편안 마련 | (1) 이행실태 점검·평가 기관: 8개 시·도 연구원('19) (2) 주요 업무: 선택항목 이행실태 점검·분석 |
| 2020 ~ 2022 | (1) 이행실태 점검·평가 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주요 업무: 제4차 기본계획에 따른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 (1) 이행 부진 항목 및 취약 지역 관련 연구 (2) 주요 업무: 농어촌서비스기준과 관련된 농어업인 삶의질법 시행령 및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개정('21) |

2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 구성 및 이행실태 점검 방법

1. 항목 구성

1.1. '제4차 기본계획' 및 정부 정책 기조를 반영하여 항목 개편

- '제4차 기본계획'은 지역 및 정책 대상별 수요 맞춤형 정책 수행을 목표로 함.
 - 기존 '1~3차 기본계획'의 방향성은 삶의 질 향상을 통한 도·농 간 격차 완화에 있었으나 '제4차 기본계획'은 농어촌서비스기준을 통해 농어촌 내 삶의 질 격차를 평가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취약한 곳에 정책적인 투자 근거를 제시하고자 함.
 - 또한, 농어촌 인구 구조 및 사회적 변화를 따른 신규 정책 수요 발굴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한 정책 추진을 넘어서 농어촌의 삶의 질과 관련된 다양한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자 함.
 - 기본계획을 구성하는 각 부처 과제에 대한 협의·조정과 이행 담보를 위한 추진 체계의 실효성 강화에 초점을 둬.

- 구체적인 운영 기준 미비 및 강제 이행 방안 등의 부재로, 본래 의도로 기능하지 못하는 한계가 발견되어 제도적 장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 중앙정부 중심의 개별 사업 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중앙정부 및 지자체, 민관의 협치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한 정책 추진 체계로의 변화를 추구함.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역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도모하고자 함.
- ‘제4차 기본계획’의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보건의료·복지, 교육·문화, 정주여건, 경제활동 부문의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구성됨.
 - ‘제4차 기본계획’ 수립 시 기초생활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와 중앙정부의 생활SOC 확충 기조에 따라 농어촌서비스기준 일부 항목을 개편함.
 - 생활SOC 확대 계획에 따라 도서관, 체육시설, 생활폐기물 3개 핵심항목을 신설함.
 - 국토교통부 기초생활 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을 반영하여 접근성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농어촌 교통 여건 등을 감안하여 최소 접근시간 목표치를 설정하여 제시함.
 - 농어촌 주민에게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로서 공급 여건을 지속적으로 측정·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노인복지, 상수도, 하수도, 난방 및 대중교통 등 총 12개 항목은 변경 없이 유지함.

〈표 2-1〉 농어촌서비스기준과 기초인프라의 국가 최저기준 비교

| 구분 | 농어촌서비스기준(농림축산식품부) | 기초인프라 최저기준(국토교통부) |
|---------------|--|---|
| 근거 법령 |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제3조,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 도시재생특별법 제4조 및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국토부 공고) |
| 대상 지역 | 농어촌 및 도농복합시 | 도시 |
| 목표치 설정 (최저기준) | 농어촌 및 항목의 특성을 고려해 설정 (접근성, 행정구역 내 존재 유무 등) | 시설에 도착하는 데 필요한 시간으로 설정 (기본방침상 '농어촌 지역'은 농어촌서비스기준을 고려한다고 명시) |
| 차별 항목 | 주택, 상수도, 하수도, 난방, 대중교통, 방범설비, 경찰순찰, 소방출동 | 근린공원, 거점 공원, 주거편의시설, 마을 주차장 |

자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2020. '2020~2024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1.2. 항목별 내용 및 목표치 도출 근거

○ (접근성 측정 관련 항목) 진료, 영유아 보육·교육, 초·중등교육, 문화, 도서관, 체육시설 항목은 거주지에서 주요 서비스 시설까지 일정한 목표시간 내 도달하는 것을 기준 내용으로 정함.

- 서비스의 위계 및 특성을 고려해 진료 항목은 30분~1시간, 영유아 보육·교육 항목은 20분, 초·중등교육 항목은 10분, 문화 항목은 40분, 도서관 항목은 10분, 체육시설 항목은 30분으로 목표치로 설정함.
- 농어촌 주민의 거주지²⁾ 및 접근성 항목 관련 시설³⁾의 위치, 도로망 정보⁴⁾ 등을 활용해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서비스시설(closest facility)까지의 거리를 측정하고 농어촌 차량 이동 평균속도(32.2km/h)⁵⁾를 적용하여 평균 접근시간을 산출함.

참고: 항목별 목표시간 도출 방식

- ◆ 마을에서 주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여 서비스 계층별 시간 도출
 - 전체 마을(행정리, 36,786개소) 가운데 소재지 마을 및 소재지와의 시간 거리가 5분 이내인 마을(3,422개소)을 제외한 마을 33,364개소를 기준으로 마을부터 시설까지의 소요 시간을 측정하여 서비스 계층별 기준을 제시
 - 서비스 계층별 시간 거리에 따라 시설이 주로 면 소재지에 입지할 경우 10분, 읍·면 소재지에 있는 경우 15분, 시·군 소재지에 있는 경우 20분으로 기준 설정
 - 계층별 기준을 반영하여 진료, 문화, 체육시설은 시·군 소재지 이상의 고차 중심지에 위치하므로 각각 30분~1시간, 40분, 30분으로, 영유아 보육·교육은 시·군 소재지에 위치하여 20분으로, 초·중등교육과 도서관은 면 소재지에 위치하여 10분으로 목표시간을 설정

| 구분 | 읍면 사무소 | 거점 읍·면 소재지 주요 시설 | | | 고차 중심지에 속하는 주요 시설 | | |
|---------------|--------|------------------|------|---------|-------------------|-----------|------|
| | | 재래시장 | 고등학교 | 시외버스터미널 | 상설영화 상영관 | 백화점·대형할인점 | 종합병원 |
| 시설까지 소요 시간(분) | 9.6 | 14.2 | 14.6 | 14.6 | 24.9 | 28.7 | 33.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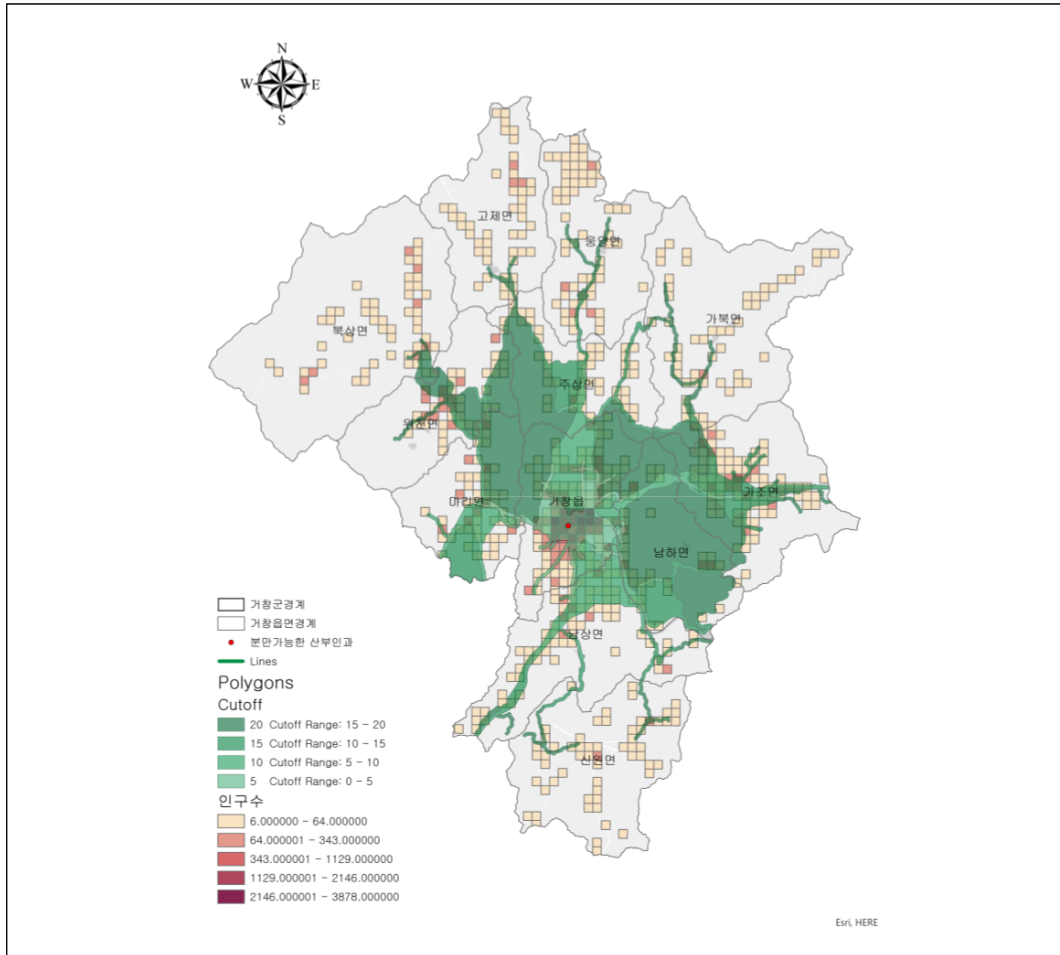
* 근거: 2015년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 2) 국토정보플랫폼(<http://map.ngii.go.kr>)에서 제공하는 인구수가 포함된 500m×500m 격자 정보. 격자 정보는 '국도를 직각으로 교차하는 가로(n)와 세로(m)선으로 구분하여 n×m 개로 구획하여 표현하는 공간 단위(mesh)의 집합'을 의미함.
- 3) 항목 관련 개별 시설 주소를 공간정보로 변환함.
- 4)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Korea Transport Data Base)의 교통망 정보를 활용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구축한 도로망 정보임.
- 5) 농어촌 노선버스 평균 운행속도(25.9km/h)와 특·광역시의 승용차와 시내버스 운행속도 차이(6.3km/h)를 반영함 (국토교통부 '19년 대중교통현황조사 및 '18년 국가교통통계).

- (서비스 충족 주민 거주지 비율 측정) 평균 접근시간 산출 결과에 대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농어촌서비스기준에서 제시된 목표시간 내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지역을 도출하여 보조지표로 활용하고자 함.
 - 국토정보플랫폼을 통해 구축한 격자 체계를 기반으로 인구 5명 이상 거주하는 500m×500m 격자를 ‘주민 거주지’로 정의함.
 - ‘주민 거주지’ 중 항목별 관련 서비스시설까지 농어촌의 평균 차량 이동 속도(32.2km/h)로 목표시간 내 도달이 가능한 주민 거주지 수와 비율을 측정하고, 농어촌 시·군 별로 최소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주지 비율을 제시함.

- (접근성 및 서비스 충족 주민 거주지 비율 측정 예시) 경상남도 거창군의 산부인과 위치 및 주민 거주지 격자를 지도에 표시하여 농어촌 평균 차량 이동 속도를 적용한 접근성과 서비스기준을 충족하는 주민 거주지 격자 비율을 측정함.
 - 거창군에 위치한 산부인과(빨간색 점)와 주민 거주지 격자 간 거리를 측정하고 평균 차량 이동 속도를 적용하여 평균 접근시간을 측정함.
 - 서비스기준 충족 주민 거주지 격자 비율은 목표시간 내 산부인과 도착이 가능한 주민 거주지 격자수(초록색 범위에 근접한 주민 거주지)를 측정함.

〈그림 2-1〉 경상남도 거창군 산부인과 항목 접근성 및 ‘주민 거주지 비율’ 측정 사례



- (응급의료) 응급환자 발생 시 기본적인 응급장비가 마련되고 전문인력이 동승한 구급차가 30분 이내 도착하여 응급처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을 항목의 내용과 목표로 정함.
 - ‘제3차 기본계획’ 기간과 기준 내용은 동일하지만 접근시간이 포함된 다른 항목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이행실태 측정을 기존 목표시간 내 도착 비율에서 평균 소요 시간으로 변경함.
- (노인복지)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방문요양·돌봄 등의 서비스 및 같은 법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군 비율이 80% 이상 되도록 항목 내용과 목표치를 설정함.

- '제4차 기본계획' 수립 시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서비스의 범위와 목표치를 설정하고, '농어업인삶의질법' 개정 과정에서 법제처 검토를 거쳐 확정함.

○ (평생교육) 읍·면 내에서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또는 같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설치·지정된 평생학습센터에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을 항목 내용으로 설정함.

- '제3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에는 평생교육 시설의 범위로 규정하지 않았던 주민자치 센터까지 포함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목표치를 70%로 상향함.

-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은 비형식 시설⁶⁾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학교 및 학점은행기관의 평생교육시설은 측정 시설 범위에서 제외함.

○ (주택) 최저주거기준 이상 주택에서의 거주 여부 및 주택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개량 비율을 항목 내용으로 설정하였으나 현재 최저주거기준 관련 자료 구득이 불가능한 관계로 슬레이트 지붕 철거·개량 비율로 이행실태 점검·평가함.

- 2021년부터 측정 자료를 국토교통부의 건축물 대장 표제부 자료에서 환경부 슬레이트 지붕 철거·개량 실적 자료로 변경하여 이행실태를 측정함.

○ (상수도) 면 지역 보급률로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하며, 목표치는 최근 3년간의 실적을 반영하여 설정함.

- 목표치 설정 시 최근 3년 결과치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제4차 기본계획'이 종료되는 시점('24년)까지 매년 3% 실적이 향상된다고 가정했을 때의 예상값을 도출해 목표치를 85%로 설정함.

6) 평생교육시설은 준형식과 비형식으로 구분됨. 준형식 평생교육시설은 학교 및 대학교 등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식적인 학교 시설을 의미하며, 비형식 평생교육시설은 학교 부설, 원격형태,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평생학습관, 주민자치센터 등의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외의 시설을 의미함.

○ (하수도) 군 지역 하수도 보급률로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하며, 목표치는 환경부와의 논의를 통해 76%로 설정하였음.

- 농어촌서비스기준 하수도 항목과 환경부 농어촌 지역 하수도 보급률은 동일한 지표이나 '제3차 기본계획' 기간에 대상 지역의 범위에 대한 차이⁷⁾가 존재하여 협의를 통해 통일함.

○ (난방) 읍 지역 도시가스 보급률로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하며, '제4차 기본계획'이 종료되는 시점인 2024년까지의 읍 지역 도시가스 보급률 추정치에 따라 목표치를 설정함.

- 제13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및 전국 도시가스 보급 추이를 근거로 목표치를 67.9%로 설정함.

〈표 2-2〉 읍 지역 도시가스보급률 전망

단위: %, 천 개

| 구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보급률 | 66.8 | 67.2 | 67.5 | 67.7 | 67.8 | 67.9 |
| 가정용 수요가수 | 1,480 | 1,539 | 1,597 | 1,655 | 1,715 | 1,774 |
| 주민등록세대수 | 2,446 | 2,528 | 2,367 | 2,446 | 2,528 | 2,613 |

주: 가정용 수요가수 및 최근 5년 주민세대수 연평균증가율로 추정

○ (대중교통) 대중교통을 1일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는 법정리 비율을 측정하며, 대중교통 취약지역 대상 마을 수 및 준공공교통 프로그램 사업 수혜 마을 수와 도서 지역 본섬 기준 여객선 운행 여부를 보완지표로 제시함.

- 하루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의 범위를 버스에서 대중교통수단으로 확대함.
- '22년부터는 지자체 행정조사를 통해 대중교통 취약지역 대상 마을 수 및 준공공교통 프로그램 사업 수혜 마을 수를 조사함.

7)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농어촌 시·군 대상, 환경부는 군 지역을 대상으로 농어촌 하수도 보급률을 발표함.

- (생활폐기물) 행정리내 영농·생활 폐기물 수집 및 처리 가능 여부를 조사함.
 - ‘제4차 기본계획’ 수립 시, 생활SOC 확충 정책과 연계 강화를 목적으로 추가한 항목으로, 전문가 자문 및 부처 협의를 거쳐 행정리 내에서 100% 영농·생활폐기물 집하장 또는 처리장이 설치·운영되고 있는지를 목표치로 설정함.

- (방법설비) 방법용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행정리 비율로 이행실태를 측정하며, 목표치는 최근 3년간 실적을 반영하여 설정함.
 - 항목 내용은 기존과 동일하며, 농어촌서비스기준 개편 시 법률에 적합한 용어로 일부 수정됨.

- (경찰순찰) 지역주민이 요청하는 장소·시간에 대한 탄력순찰 시행 여부를 항목 내용으로 설정함.
 - 지역주민의 요청과 112신고 및 범죄 발생 여부 등을 종합하여 탄력순찰 대상 지역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리적 특성 및 해당 지점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순찰 범위 및 종류, 반복·거점 순찰 여부 등을 결정하여 순찰하는 제도임.
 - 1일 1회 이상 순찰 원칙을 적용하여 목표치를 100%로 설정하고, 탄력순찰 실시율을 바탕으로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함.

- (소방출동) 화재 발생 신고 접수 후 소방차가 지역별 목표시간 내에 현장에 도착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이행실태를 측정하며, 목표치는 70%로 설정함.
 - 기본 목표시간 7분을 기준으로 기준거리(2.5km) 초과 시 0.5km당 1분씩 목표시간을 추가하는 ‘지역별 목표시간’ 개념을 적용하여 측정 방식을 개편하고 달성 여부를 파악함.

〈참고〉 지역별 목표시간 개념

◆ (개념) 물리적으로 달성 불가능한(기준거리* 초과) 경우 목표시간 보정

* 기준거리(2.5km) 초과 시 0.5km 당 1분씩 목표시간 추가 ex) 출동거리 3km → 목표시간 8분



○ (창업·취업 컨설팅 교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창업·취업 관련 지원센터에서 사업체 창업·취업에 관한 전문적인 컨설팅 또는 교육서비스를 1년 1회 이상 받을 수 있는지를 측정하며, 목표치는 최근 3년간 이행실태 점검 결과 추이를 반영해 설정함.

- 농어촌서비스기준 최근 3년의 결과값을 바탕으로 제4차 기본계획 종료 시점(24년)까지 매년 3% 실적이 향상된다는 가정하에 예상값을 도출하여 목표치를 86%로 설정함.

〈표 2-3〉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의 국가최소기준 및 목표치

| 부문 | 항목 | 국가최소기준 | 목표치 (분, %) |
|------------|-----------|---|------------|
| 1. 보건의료·복지 | 진료 | 차량을 이용하여 30분~1시간 이내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가능하다. | 30분 ~1시간 |
| | 응급의료 | 응급환자 발생 시 기본적인 응급장비가 마련되고 전문인력이 동승한 구급차가 30분 이내 도착하여 응급처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30분 |
| | 영유아 보육·교육 | 차량을 이용하여 20분 이내로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공립·민간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할 수 있다. | 20분 |
| | 노인복지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방문요양·돌봄 등의 서비스 및 같은 법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비율을 80% 이상으로 한다. | 80% |

(계속)

| 부문 | 항목 | 국가최소기준 | 목표치 (분, %) |
|----------|--------------|--|----------------|
| 2. 교육·문화 | 초·중등교육 | 차량을 이용하여 10분 이내에 농어촌 초등학교·중학교에 도달할 수 있다. 지역여건에 맞는 농어촌 초등학교·중학교를 육성하고 통학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한다. | 10분 |
| | 평생교육 | 읍·면내에서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또는 같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설치·지정된 평생학습센터에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을 70% 이상으로 한다. | 70% |
| | 문화 | 차량을 이용하여 40분 이내에 「공연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지방문화원진흥법」제4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문화원에 도달할 수 있으며, 월 1회 이상 문화프로그램과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다. | 40분 |
| | 도서관 | 차량을 이용하여 10분 이내에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같은 호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은 제외한다)을 이용할 수 있다. | 10분 |
| | 체육시설 | 차량을 이용하여 30분 이내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30분 |
| 3. 정주여건 | 주택 | 주민 누구나 「주거기본법」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한 최저주거기준에 적합한 주택에서 거주한다. 슬레이트(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를 말한다)가 사용된 주택 지붕의 철거·개량 비율을 23% 이상으로 한다. | 23% |
| | 상수도 | 면 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85% 이상으로 한다. | 85% |
| | 하수도 | 군 지역 하수도 보급률을 76% 이상으로 한다. | 76% |
| | 난방 | 읍지역 도시가스 주택보급률을 68% 이상으로 한다.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엘피지(LPG) 소형저장탱크를 활용하여 가스 보급을 확대한다. | 68% |
| | 대중교통 | 행정리 내에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기목에 해당하는 대중교통수단(이하 “대중교통수단”이라 한다)을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 수요 부족으로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 어려운 지역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도입한다. 도서지역의 경우 모든 본섬에 「선박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여객선이 1일 왕복 1회 이상 운항된다. | 100% |
| | 생활폐기물 | 행정리내에서 영농·생활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할 수 있다. | 마을 내 (100%) |
| 3. 정주여건 | 방범설비 | 범죄 예방을 위해 마을 주유지점과 주요 진입로의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말한다)의 설치율을 60% 이상으로 한다. | 60% |
| | 경찰순찰 | 지역주민이 요청하는 장소·시간에 대하여 탄력적인 방식의 순찰을 1일 1회 이상 실시한다. | 100% |
| | 소방출동 | 화재 발생 신고 접수 후 소방차가 지역별 목표시간 내에 현장에 도착하는 비율을 70% 이상으로 한다. | 70% |
| 4. 경제활동 | 창업·취업 컨설팅 교육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창업·취업 관련 지원센터에서 사업체 창업·취업에 관한 전문적인 컨설팅 또는 교육서비스를 1년 1회 이상 받을 수 있는 비율을 86% 이상으로 한다. | 86%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1-43호의 [별표]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항목과 항목별 목표치 세부 내용

2. 점검 방법 및 자료

-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보건의료·복지, 교육·문화, 정주여건, 경제활동 등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구성됨.
 - 4대 부문 19개 핵심항목을 국가최소기준으로 설정하고, 각 항목에 대한 139개 농어촌 시·군의 이행실태를 측정함.
- 공식통계 및 부처 협조자료와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를 토대로 구축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함.
 - 자료 구득이 불가능한 주택 항목(최저주거기준)을 제외하고 총 26개의 통계 자료가 필요함.
 - 공식통계 자료 11개, 부처협조자료 9개,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 자료 5개, 민간업체 협조자료 1개를 활용함.
 - 통계 자료는 직전 연도인 2021년을 기준으로 하며, 가장 최근의 통계 자료 구득이 가능한 경우 2022년 기준 자료를 활용함.

〈표 2-4〉 농어촌서비스기준 점검 방법 및 자료

| 부문 | 항목 | 세부항목 | 점검 방법 | 점검 자료 | 자료 |
|--------------------|-----------|--------|--|-----------------------------------|-------|
| 1. 보건·의료·복지 | 진료 | 내과 | 농어촌 주민 거주지에서 4대 중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소 데이터 | 공식 통계 |
| | | 외과 | 과목에 해당하는 내과, 외과, 산부 | | |
| | | 산부인과 | 인과,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가능 | | |
| | | 소아청소년과 | 한 인접 의료기관까지 차량으로 소요되는 평균 접근 시간 | | |
| | 응급의료 | - | 시·군별 119 구급대 현장 도착 평균 소요시간 | 소방청: 소방서별 119구급대 출동 소요시간 현황 | 협조 자료 |
| | 영유아 보육·교육 | 어린이집 | 농어촌 주민 거주지에서 인접한 국공립·민간 어린이집 및 유치원 시설까지 차량으로 소요되는 평균 접근 시간 |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국공립·민간 어린이집 주소 현황 자료 | 협조 자료 |
| | | 유치원 | 교육통계서비스: 유치종등 및 고등교육 기관 주소록 | 공식 통계 | |
| | 노인복지 | - |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이용자 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수) / (65세 이상 노인인구)} × 100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 통계 | 공식 통계 |
| | | | |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현황 | 공식 통계 |
| | |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혜자 현황 | 행정 조사 |
| 행정안전부: 65세 이상 노인인구 | | | | 공식 통계 | |

(계속)

| 부문 | 항목 | 세부항목 | 점검 방법 | 점검 자료 | 자료 |
|----------|--------------|---------------------------------------|---|---|----------|
| 2. 교육·문화 | 초·중등교육 | - | 농어촌 주민 거주지에서 인접한 초·중학교까지 차량으로 소요되는 평균 접근 시간 | 교육통계서비스: 초·중학교 주소록 | 공식 통계 |
| | 평생교육 | - |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읍·면 수 / 총 읍·면 수)×100 | 비형식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읍·면 현황 | 행정 조사 |
| | 문화 | 문화예술 회관 및 지방 문화원 | 농어촌 주민 거주지에서 인접한 문화시설까지 차량으로 소요되는 평균 접근 시간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기반시설총람): 시·군별 문화예술회관 및 지방문화원 현황 | 공식 통계 |
| | 도서관 | 도서관 | 농어촌 주민 거주지에서 인접한 작은 도서관, 공공도서관시설까지 차량으로 소요되는 평균 접근 시간 |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 공식 통계 |
| | 체육시설 | - | 농어촌 주민 거주지에서 인접한 체육시설까지 차량으로 소요되는 평균 접근 시간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및 체육진흥관리공단: 공공체육시설(경기장, 체육관, 수영장) 및 생활체육시설(체육도장, 체력단련장, 간이운동장) 주소 | 협조 자료 |
| 3. 정주 여건 | 주택 | 석면 슬레이트 주택지붕 | {('14부터 '21년까지의 슬레이트 주택 철거 실적)/ '14 슬레이트 주택 수}×100 | 환경부: 슬레이트 철거 실적 - 주택 철거·처리 분야 | 협조 자료 |
| | 상수도 | - | (시·군별 면 지역 광역·지방 상수도 급수인구 / 시·군별 면 지역 주민등록인구)×100 | 환경부: 상수도 통계 | 공식 통계 |
| | 하수도 | - | (군 지역별 공공하수처리 인구 / 군 지역별 인구)×100 | 환경부: 하수도 통계 | 공식 통계 |
| | 난방 | - | (읍내 도시가스 보급 가구 수 / 읍 전체 가구 수)×100 | 산업통상자원부(도시가스협회): 도시가스 보급 가구 현황 | 협조 자료 |
| | | | {소형LPG저장탱크 공급마을 가구 수 / (읍·면 지역 총 가구 수 - 읍·면 지역 도시가스 보급 가구)}×100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LPG산업협회) | 협조 자료 |
| | 대중교통 | - | (도보 15분내 정류장에서 하루 버스 운행 3회 이상인 법정리 수 / 총 법정리 수)×100 | 대중교통 버스노선 정보 (※아로정보기술) | 민간 기업 자료 |
| | | | 도서 지역 여객선 운항 현황 | 해양수산부: 도서별 여객선 이용실적 | 협조 자료 |
| | 생활폐기물 | 영농폐기물 처리장 | (영농폐기물 처리장이 있는 읍·면 수 / 총 읍·면 수)×100 |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공동집하장 정보 목록 조회 | 공식 통계 |
| | | 생활폐기물 처리장 |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이 있는 행정리 수 / 총 행정리 수)×100 | 지자체조사: 행정리별 생활폐기물 처리 시설 및 영농폐기물 집하장 설치 현황 | 행정 조사 |
| | 방법설비 | - | (방법용 CCTV 설치 행정리 수 / 총 행정리 수)×100 | 지자체조사: 방법용 CCTV 설치 현황 | 행정 조사 |
| 경찰순찰 | - | 주민이 요청하는 순찰시간·장소에 대해 1일 1회 이상 탄력순찰 여부 | 경찰청: 시·군별 탄력순찰 대상 지역 및 탄력순찰 실시 현황 | 협조 자료 | |
| 소방출동 | - | (시·군별 목표시간내 도착 건수 / 총 출동 건수)×100 | 소방청: 각 시·군별 화재 발생 장소 및 출동거리 | 협조 자료 | |
| 4. 경제 활동 | 창업·취업 컨설팅 교육 | - | 시·군별 사업체 창업·취업에 관한 컨설팅·교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 여부 | 지자체 조사: ① 창업지원센터 유무 ② 일자리지원센터 유무 ③ 전담인력 고용 여부 ④ 전문프로그램 운영 횟수 | 행정 조사 |

〈표 2-5〉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을 위한 자료 구축 현황

| 부문 | 관련항목 | 통계명 | 기준 년도 | 구축 여부 |
|--------------------------------------|--------------|---|---------------|----------------------------|
| 1. 보건 의료· 복지 | 진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과, 산부인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주소자료 | 2022 | ○ (공식통계) |
| | 응급의료 | 소방서(시·군)별 119 구급대 응급출동 소요시간 현황자료 | 2022 | ○ (소방청 협조) |
| | 영유아 보육·교육 | 국공립·민간 어린이집 주소 현황 자료 | 2022 | ○ (보건복지부 협조) |
| | | 교육통계서비스: 유치중등 및 고등교육기관 주소록 | 2022 | ○ (공식통계) |
| | 노인복지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 통계 | 2021 | ○ (공식통계) |
| | |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현황 | 2022 | ○ (공식통계) |
|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혜자 현황 | 2022 | ○ (지자체 조사) |
| | | 행정안전부: 65세 이상 노인인구 | 2021 | ○ (공식통계) |
| 2. 교육· 문화 | 초·중등교육 | 교육통계서비스: 유치중등 및 고등교육기관 주소록 | 2022 | ○ (공식통계) |
| | 평생교육 |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읍·면 수 | 2022 | ○ (지자체 조사) |
| | 문화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기반시설총람): 시·군별 문화예술 회관 및 지방문화원 현황 | 2021 | ○ (공식통계) |
| | 도서관 |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 2022 | ○ (공식통계) |
| | 체육시설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및 체육진흥관리공단: 공공체육시설(경기장, 체육관, 수영장) 및 생활체육시설(체육도장, 체력단련장, 간이운동장) 주소 | 2022 | ○ (문체부 협조) |
| 3. 정주 여건 | 주택 | 환경부: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실적 - 주택 철거·처리 분야 | 2022 | ○ (환경부 협조) |
| | 상수도 | 환경부: 상수도통계 | 2021 | ○ (공식통계) |
| | 하수도 | 환경부: 하수도통계 | 2021 | ○ (공식통계) |
| | 난방 | 시·군별 읍·면부 도시가스 보급률 | 2021 | ○ (산업통상자원부 협조) |
| | | 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 실적 | 2021 | ○ (산업통상자원부 협조) |
| | 대중교통 | 대중교통 버스노선 정보 | 2022 | ○ (민간기업(㈜아로정보기술) 자료 구입) |
| | | 도서지역(시·군)별 본도(읍·면) 여객선 운항 현황 | 2022 | ○ (해양수산부 협조) |
| | 생활폐기물 |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공동집하장 정보 목록 | 2022 | ○ (공식통계) |
| 시·군별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및 영농폐기물 집하장 설치 행정리 수 | | 2022 | ○ (지자체 조사) | |

(계속)

| 부문 | 관련항목 | 통계명 | 기준 년도 | 구축여부 |
|-------------|-----------------|---|----------|---------------|
| | 방법설비 | 시·군별 방법용 CCTV 설치 행정리 수 | 2022 | ○ (지자체 조사) |
| | 경찰순찰 | 시·군별 탄력순찰 대상 지역 및 실시 현황 | 2022 | ○ (경찰청 협조) |
| | 소방출동 | 시·군별 화재 발생 장소 및 출동거리 | 2022 | ○ (소방청 협조) |
| 4. 경제 활동 | 창업·취업 컨설팅 교육 | i) 창업보육지원센터 등 창업 및 사업체 운영을 위한 지원센터 유무 ii) 일자리 센터 등 취업 상담 및 지원을 위한 센터 유무 iii) 창업 및 사업체 운영, 취업 상담 전담인력 고용 여부 iv) 창업, 사업체 운영, 취업 관련 전문프로그램 종류 및 운영 횟수(연간) | 2022 | ○ (지자체 조사) |

3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결과

1. 주요 점검 결과

○ 2022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결과, 대상이 되는 139개 농어촌 지역은 4대 부문 19개 항목 중 12개(전년 同) 항목에서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보건의료·복지 부문 4개 항목, 교육·문화 부문 5개 항목, 정주여건 3개 항목이 달성함.

〈표 3-1〉 2022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주요 점검 결과

| 부문 | 합계 | 보건의료·복지 (4항목) | | 교육·문화 (5항목) | | 정주여건 (9항목) | | 경제활동 (1항목) | |
|--------|----|------------------|--------------------------|----------------|-----------------------------|---------------|-----------------------------------|---------------|------------|
| 달성 항목 | 12 | 4 | 진료, 응급의료, 영유아보육·교육, 노인복지 | 5 | 초·중등교육, 평생교육, 문화, 도서관, 체육시설 | 3 | 주택, 난방, 방범설비 | - | - |
| 미달성 항목 | 7 | - | - | - | - | 6 | 상수도, 하수도, 대중교통, 생활폐기물, 경찰순찰, 소방출동 | 1 | 창·취업 컨설팅교육 |

○ 부문별 점검 결과, 4대 부문 중 보건의료·복지와 교육·문화는 모든 항목이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주여건 및 경제활동 부문은 목표치 미달 항목이 다수 존재해 향후 목표치 달성을 위한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요구됨.

- 보건의료·복지 부문 및 교육·문화 부문의 전체 9개 항목은 목표치를 달성했으나 정주여건 부문 중에서는 3개 항목(주택, 난방, 방범설비)만이 목표치를 달성함.
- 정주여건 부문의 6개 항목(상수도, 하수도, 대중교통, 생활폐기물, 경찰순찰, 소방출동)과 경제활동 부문 창업·취업 컨설팅 교육 항목은 목표치 미달성 항목으로 이행실태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표 3-2〉 국가최소기준에 따른 2022년 농어촌서비스기준 목표치 및 이행실태 점검 결과

| 부문 | 항목 | 국가최소기준 | 목표치 (분, %) | 이행 실태 |
|------------|----------|---|---------------|----------|
| 1. 보건의료·복지 | 진료 | 차량을 이용하여 30분~1시간 이내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가능하다. | 30분~1시간 | 23.1분 |
| | 응급의료 | 응급환자 발생 시 기본적인 응급장비가 마련되고 전문인력이 동승한 구급차가 30분 이내 도착하여 응급처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30분 | 13.8분 |
| | 영유아보육·교육 | 차량을 이용하여 20분 이내로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 및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국공립·민간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할 수 있다. | 20분 | 9.1분 |
| | 노인복지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방문요양·돌봄 등의 서비스 및 같은 법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비율을 80% 이상으로 한다. | 80% | 100% |
| 2. 교육·문화 | 초·중등교육 | 차량을 이용하여 10분 이내에 농어촌 초등학교·중학교에 도달할 수 있다. 지역여건에 맞는 농어촌 초등학교·중학교를 육성하고 통학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한다. | 10분 | 7.4분 |
| | 평생교육 | 읍·면내에서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또는 같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설치·지정된 평생학습센터에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을 70% 이상으로 한다. | 70% | 83.5% |
| | 문화 | 차량을 이용하여 40분 이내에 「공연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지방문화원진흥법」제4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문화원에 도달할 수 있으며, 월 1회 이상 문화프로그램과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다. | 40분 | 24.1분 |
| | 도서관 | 차량을 이용하여 10분 이내에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같은 호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은 제외한다)을 이용할 수 있다. | 10분 | 10.0분 |
| | 체육시설 | 차량을 이용하여 30분 이내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30분 | 16.6분 |

(계속)

| 부문 | 항목 | 국가최소기준 | 목표치 (분, %) | 이행 실태 |
|---------|--------------|--|-------------------------|----------------|
| 3. 정주여건 | 주택 | 주민 누구나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한 최저주거기준에 적합한 주택에서 거주한다. 슬레이트(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를 말한다)가 사용된 주택 지붕의 철거·개량 비율을 23% 이상으로 한다. | 23% | 34.8% |
| | 상수도 | 면 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85% 이상으로 한다. | 85% | 81.6% |
| | 하수도 | 군 지역 하수도 보급률을 76% 이상으로 한다. | 76% | 75.6% |
| | 난방 | 읍지역 도시가스 주택보급률을 68% 이상으로 한다.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엘피지(LPG) 소형저장탱크를 활용하여 가스 보급을 확대한다. | 68% | 70.0% |
| | 대중교통 | 행정리 내에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대중교통수단(이하 “대중교통수단”이라 한다)을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 수요 부족으로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 어려운 지역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도입한다. 도서지역의 경우 모든 본섬에 「선박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여객선이 1일 왕복 1회 이상 운항된다. | 100% | 89.1% |
| | 생활폐기물 | 행정리내에서 영농·생활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할 수 있다. | 마을 내 (생활/영농 100%) | 76.6% 20.6% |
| | 방법설비 | 범죄 예방을 위해 마을 주요지점과 주요 진입로의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말한다)의 설치율을 60% 이상으로 한다. | 60% | 75.9% |
| | 경찰순찰 | 지역주민이 요청하는 장소·시간에 대하여 탄력적인 방식의 순찰을 1일 1회 이상 실시한다. | 100% | 95.4% |
| | 소방출동 | 화재 발생 신고 접수 후 소방차가 지역별 목표시간 내에 현장에 도착하는 비율을 70% 이상으로 한다. | 70% | 69.1% |
| 4. 경제활동 | 창업·취업 컨설팅 교육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창업·취업 관련 지원 센터에서 사업체 창업·취업에 관한 전문적인 컨설팅 또는 교육서비스를 1년 1회 이상 받을 수 있는 비율을 86% 이상으로 한다. | 86% | 77.5% |

주: 음영 표시는 미달성 항목임.

2. 세부 점검 결과

2.1. 보건 의료·복지 부문

2.1.1. 진료

차량을 이용하여 30분~1시간 이내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가능하다.

가. 점검 방법 및 결과

- (점검 방법) 농어촌 주민 거주지에서 4대 중요 진료과목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까지의 접근시간을 측정하여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함.
 - 차량 이동 시(평균속도 32.2km/h) 의료기관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평균 30분⁸⁾ 이내면 서비스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함.
- (점검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병·의원 위치 정보와 국토지리원에서 제공하는 주민 거주지 위치 정보를 활용하여 농어촌 주민 거주지에서 인접한 의료시설까지 차량으로 소요되는 평균 접근 시간을 측정함.
 - 전국의 내과 6,845개, 외과 1,947개, 산부인과 1,914개, 소아청소년과 3,025개 의료시설의 주소를 지리정보(GIS)로 변환하여 점검·평가에 활용함.
- (점검 결과) 4대 중요 진료과목 의료시설 접근까지 필요한 시간은 평균 23.1분으로 목표시간 내 접근 가능함.
 - 전체 농어촌 시·군 중 94개(67.6%) 지역은 30분 내 모든 중요과목 진료가 가능하며, 45개(32.4%) 지역은 목표시간 내 의료기관 접근이 불가능함.

⁸⁾ 기준은 30분~1시간 이내로 제시하고 있으나, 보수적으로 30분을 기준으로 서비스기준을 점검·평가하고 분석함.

나. 접근시간 세부 분석

- 139개 농어촌 시·군의 진료과목별 평균 접근시간 측정 결과, 내과(18.6분), 외과(21.9분), 소아청소년과(25.4분), 산부인과(26.4분) 순으로 나타남.
- 지역 구분에 따른 접근시간 측정 결과, 군 지역은 4대 중요 진료과목 의료시설까지 평균 28.6분, 도농복합시는 평균 17.7분 소요되어 군 지역이 도농복합시보다 10.9분 더 소요됨.
 - 군 지역은 내과 22.1분, 외과 26.1분, 소아청소년과 32.8분, 산부인과 33.4분 소요됨.
 - 도농복합시는 내과 15.3분, 외과 17.8분, 소아청소년과 18.3분, 산부인과 19.6분 소요됨.

〈표 3-3〉 진료 항목의 지역별·중요과목별 의료기관 평균 접근시간

단위: 분

| 지역 구분 | 중요과목 평균 | | | | |
|------------|---------|------|--------|------|------|
| | 내과 | 외과 | 소아청소년과 | 산부인과 | |
| 군 | 28.6 | 22.1 | 26.1 | 32.8 | 33.4 |
| 도농복합시 | 17.7 | 15.3 | 17.8 | 18.3 | 19.6 |
| 전체 농어촌 시·군 | 23.1 | 18.6 | 21.9 | 25.4 | 26.4 |

- 진료 항목 서비스기준을 충족하는 주민 거주지 비율은 72.7%임.
 - 진료과목별 서비스기준을 충족하는 주민 거주지 비율은 내과(81.7%), 외과(75.8%), 소아청소년과(67.1%), 산부인과(66.1%) 순임.
 - 지역 구분에 따른 서비스기준 충족 주민 거주지 비율은 도농복합시(84.1%) 대비 군 지역(60.8%)이 23.3%p 낮음.
 - 특히, 4대 중요 진료과목 중 소아청소년과 서비스기준 충족 주민 거주지 비율이 도농복합시(82.3%)보다 군 지역(51.2%)이 31.1%p 낮아 군 지역의 소아청소년과 서비스 여건이 크게 열악한 상황임.

- 진료과목별 서비스기준을 충족하는 주민 거주지 비율이 매우 낮은 시·군이 존재하며, 특히 소아청소년과 및 산부인과 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 내과 진료를 30분 이내 받을 수 있는 주민 거주지의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경상북도 청송군(0.0%), 경상남도 산청군(7.1%), 경상남도 하동군(9.2%) 순임.
 - 외과 진료를 30분 이내 받을 수 있는 주민 거주지 비율이 낮은 지역은 강원도 평창군(0.6%), 강원도 인제군(2.2%), 전라북도 장수군(5.4%), 경상남도 산청군(6.6%), 경상남도 의령군(12.9%), 충청북도 단양군(13.8%) 순임.
 -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30분 이내 받을 수 있는 주민 거주지 비율이 낮은 지역은 전라남도 진도군(0.0%), 경상북도 영양군(0.0%), 경상북도 청송군(0.0%), 강원도 평창군(0.0%), 강원도 화천군(0.4%), 전라북도 무주군(0.4%) 순임.
 - 산부인과 진료를 30분 이내 받을 수 있는 주민 거주지 비율이 낮은 지역은 경상남도 거창군(0.0%), 경상남도 함양군(0.0%), 경상북도 영양군(0.0%), 경상북도 청송군(0.0%), 강원도 평창군(0.0%), 경상남도 산청군(0.0%), 전라북도 무주군(0.4%) 순임.

〈표 3-4〉 진료 항목의 지역별·중요과목별 서비스기준 충족 주민 거주지 비율

단위: %

| 지역 구분 | 중요과목 평균 | | | | |
|------------|---------|------|--------|------|------|
| | 내과 | 외과 | 소아청소년과 | 산부인과 | |
| 군 | 60.8 | 74.6 | 66.3 | 51.2 | 51.1 |
| 도농복합시 | 84.1 | 88.6 | 85.0 | 82.3 | 80.6 |
| 전체 농어촌 시·군 | 72.7 | 81.7 | 75.8 | 67.1 | 66.1 |

- 동·읍·면 구분에 따른 4대 중요 진료과목 평균 접근시간은 면부가 26.6분으로, 읍부(17.9분)보다 8.7분, 동부(5.3분)보다 21.3분 더 소요됨.
 - 내과의 경우, 면부(22.2분)가 읍부(12.1분)보다 10.1분, 동부(4.4분)보다 17.8분이 더 소요됨.
 - 외과는 면부(24.9분)가 읍부(17.7분)보다 7.2분, 동부(5.7분)보다 19.2분이 더 소요됨.
 - 소아청소년과는 면부(29.3분)가 읍부(20.2분)보다 9.1분, 동부(5.0분)보다 24.3분이 더 소요됨.

- 산부인과는 면부(30.1분)가 읍부(21.7분)보다 8.4분, 동부(6.0분)보다 24.1분이 더 소요됨.

〈표 3-5〉 진료 항목의 동·읍·면부 중요과목별 의료기관 평균 접근시간

단위: 분

| 동·읍·면 구분 | 중요과목 평균 | | | |
|----------|---------|------|--------|------|
| | 내과 | 외과 | 소아청소년과 | 산부인과 |
| 동부 | 5.3 | 4.4 | 5.7 | 6.0 |
| 읍부 | 17.9 | 12.1 | 17.7 | 21.7 |
| 면부 | 26.6 | 22.2 | 24.9 | 30.1 |

주: 농어촌서비스기준 대상 139개 시·군 내의 동·읍·면 지역임.

○ 동·읍·면 구분에 따른 서비스기준 충족 주민 거주지 비율은 면부 67.3%, 읍부 80.9%, 동부 99.7%로 면부가 가장 낮으며, 소아청소년과 및 산부인과의 동부와 면부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내과 진료를 목표시간 내에 받을 수 있는 거주지 비율은 면부(76.9%)가 읍부(91.3%)보다 14.4%p 낮으며, 동부(99.9%)보다는 23.0%p 낮음.
- 외과 진료를 목표시간 내에 받을 수 있는 거주지 비율은 면부(71.5%)가 읍부(81.3%)보다 9.8%p 낮으며, 동부(99.9%)보다는 28.4%p 낮음.
-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목표시간 내에 받을 수 있는 거주지 비율은 면부(60.7%)가 읍부(76.2%)보다 15.5%p 낮으며, 동부(99.9%)보다는 39.2%p 낮음.
- 산부인과 진료를 목표시간 내에 받을 수 있는 거주지 비율은 면부(59.9%)가 읍부(74.8%)보다 14.9%p 낮으며, 동부(99.1%)보다는 39.2%p 낮음.

〈표 3-6〉 진료 항목의 동·읍·면부 중요과목별 서비스기준 충족 주민 거주지 비율

단위: %

| 동·읍·면 구분 | 중요과목 평균 | | | |
|----------|---------|------|--------|------|
| | 내과 | 외과 | 소아청소년과 | 산부인과 |
| 동부 | 99.7 | 99.9 | 99.9 | 99.1 |
| 읍부 | 80.9 | 91.3 | 81.3 | 74.8 |
| 면부 | 67.3 | 76.9 | 71.5 | 59.9 |

주: 농어촌서비스기준 대상 139개 시·군 내의 동·읍·면 지역임.

다. 시·군 이행실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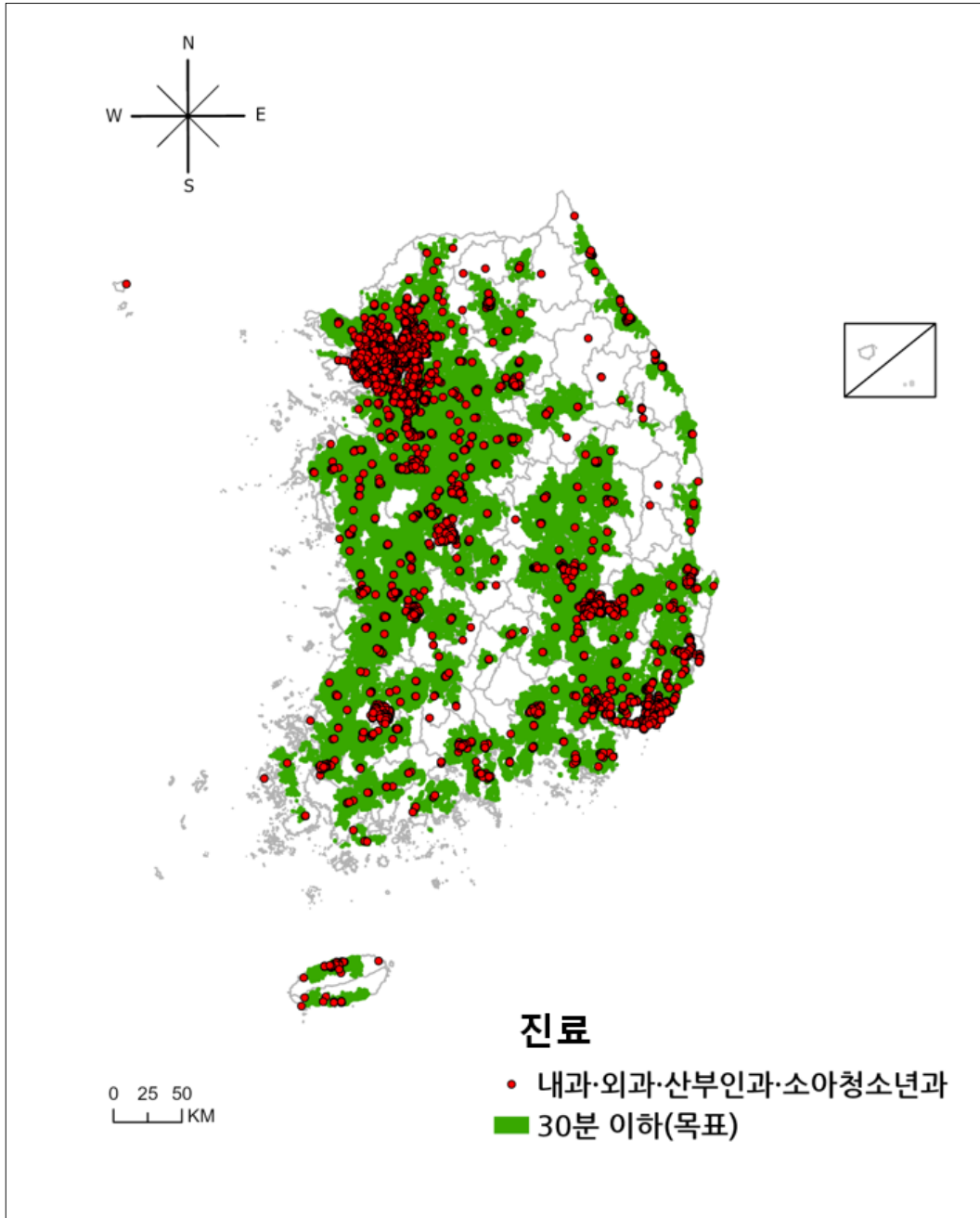
- 진료과목별로 평균 30분 이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군 수는 전체 내과 125개(89.9%), 외과 112개(80.6%), 소아청소년과 98개(70.5%), 산부인과 96개(69.1%)임.
 - 특히, 군 지역 중 서비스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 수를 진료과목별로 살펴보면, 내과가 13개(15.9%), 외과 23개(28.0%), 소아청소년과 38개(46.3%), 산부인과 40개(48.8%) 지역으로, 목표시간(30분) 내 중요과목 진료를 받지 못하는 곳이 상당수임.
- 농어촌 139개 중 94개(67.6%) 지역에서는 30분 이내에 4대 중요 진료과목 시설까지 접근 가능하나 나머지 45개(32.4%) 지역은 목표시간 내 접근이 불가능함.
 - 군 지역 41곳(50.0%), 도농복합시 53곳(93.0%)에서 30분 이내에 4대 중요 진료과목 모두 진료가 가능해 지역에 따른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표 3-7〉 진료 항목의 서비스기준 충족 시·군 현황

단위: 개, %

| 지역 구분 | 중요과목 전체 | | | | | | | | | |
|------------|----------|------|-----------|------|-----------|------|----------|------|----------|------|
| | | | 내과 | | 외과 | | 소아청소년과 | | 산부인과 | |
| | 시·군 수 | 비율 | 시·군 수 | 비율 | 시·군 수 | 비율 | 시·군 수 | 비율 | 시·군 수 | 비율 |
| 군 | 41 / 82 | 50.0 | 69 / 82 | 84.1 | 59 / 82 | 72.0 | 44 / 82 | 53.7 | 42 / 82 | 51.2 |
| 도농복합시 | 53 / 57 | 93.0 | 56 / 57 | 98.2 | 53 / 57 | 93.0 | 54 / 57 | 94.7 | 54 / 57 | 94.7 |
| 전체 농어촌 시·군 | 94 / 139 | 67.6 | 125 / 139 | 89.9 | 112 / 139 | 80.6 | 98 / 139 | 70.5 | 96 / 139 | 69.1 |

〈그림 3-1〉 진료 항목 서비스기준 충족 지역 현황



2.1.2. 응급의료

응급환자 발생 시 기본적인 응급장비가 마련되고 전문인력이 동승한 구급차가 30분 이내 도착하여 응급처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가. 점검 방법 및 결과

- (점검 방법) 신고일시를 기준으로 119 구급대 출동부터 현장 도착까지의 평균소요시간을 측정함.
 -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방서별 119구급대 소요시간' 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농어촌 시·군 139개 중 소방서가 위치한 131개 지역의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함.
 - 농어촌 시·군별 119구급대의 평균 소요시간이 30분(목표치) 이내면 서비스기준을 달성한 것으로 판단함.
- (점검 자료) 소방청의 협조를 받아 '소방서별 119구급대 소요시간' 자료를 확보하여 농어촌 시·군별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함.
 - 전국의 256개 소방서별 119구급대 출동 건수 및 평균소요시간(초) 현황 자료를 활용하여 시·군별 평균 출동 소요시간을 산출함.
 - '22년에 소방서가 신설된 전라남도 진도군, 전라남도 신안군, 경상북도 청송군, 경상북도 봉화군을 포함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의 대상이 되는 농어촌 지역 소방서는 131개임.
 - 119구급대 총 출동 건수 1,996,639건 중 899,620건(45.1%)이 농어촌 지역에서 발생함.
 - 농어촌 지역에서 발생한 119구급대 출동 건수 중 867,301건(96.4%)은 30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함.

○ (점검 결과) 소방서가 위치한 농어촌 131개 시·군의 119 구급대 소요시간은 평균 13.8분으로 목표치를 달성함.

- 목표 달성 시·군 수는 131곳 중 131곳(100%)으로 평균 30분 내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하여 모든 농어촌 시·군이 서비스기준 목표치를 충족함.
- 소방서 단위로 자료가 집계되므로 소방서가 없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전라북도 무주군, 전라북도 임실군, 전라남도 곡성군, 전라남도 구례군, 경상북도 군위군, 경상북도 영양군, 경상북도 울릉군은 제외됨.

나. 이행실태 세부 분석

○ 소방서가 위치한 131개 농어촌 시·군의 119 구급대 소요시간은 평균 13.8분이며, 지역별 약간의 편차가 존재함.

- 지역 구분에 따른 119 구급대 소요시간은 군 지역 평균 14.7분, 도농복합시 평균 12.7분으로, 군 지역이 도농복합시보다 평균 2분 가량 더 소요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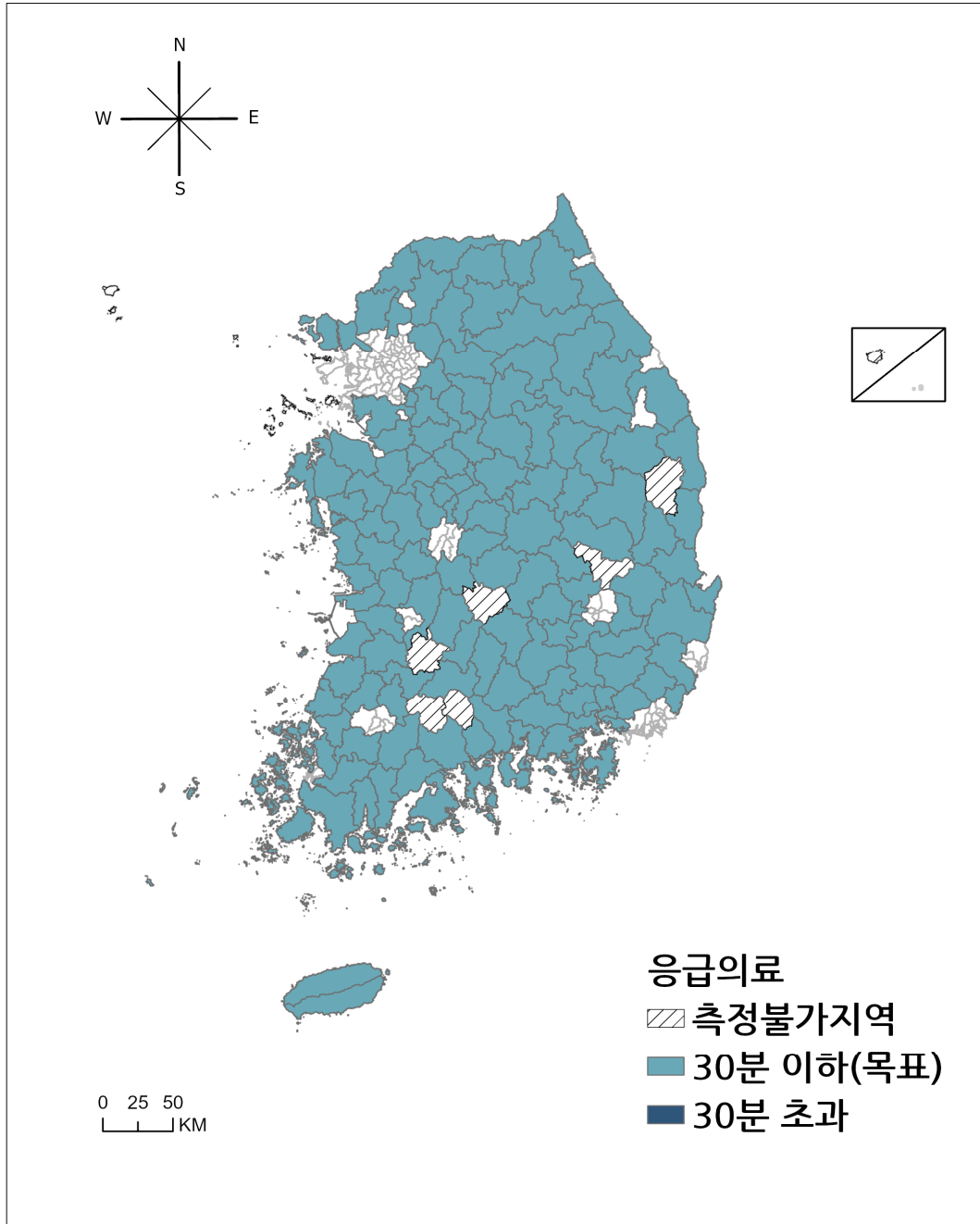
〈표 3-8〉 응급의료 항목 이행실태 현황

단위: 분, 개, %

| 지역 구분 | 평균 도착 시간 | 목표 달성 지역 | |
|------------|----------|-----------|--------|
| | | 시·군 수 | 시·군 비율 |
| 군 | 14.7 | 74 / 74 | 100 |
| 도농복합시 | 12.7 | 57 / 57 | 100 |
| 전체 농어촌 시·군 | 13.8 | 131 / 131 | 100 |

주: 소방서 단위로 자료가 집계되므로, 농어촌 시·군 중 소방서가 위치한 131개 지역의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함.

〈그림 3-2〉 응급의료 항목 서비스기준 충족 지역 현황



주: 전체 시·군 중 도시 지역은 제외하고 농어촌 시·군만 표시함.

2.1.3. 영유아 보육·교육

차량을 이용하여 20분 이내로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공립·민간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할 수 있다.

가. 점검 방법 및 결과

- (점검 방법) 농어촌 주민 거주지와 가장 가까운 국공립·민간 어린이집 및 유치원시설까지의 접근시간을 측정하여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함.
 - 차량 이동 시(평균속도 32.2km/h) 국공립·민간 어린이집 및 유치원 시설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20분 이내면, 서비스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함.
- (점검 자료)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지역별 주민 거주지 위치 정보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국공립·민간 어린이집 주소자료를 활용함.
 - 전국의 어린이집 15,502개소, 유치원 8,749개소의 주소를 공간정보로 변환함.
- (점검 결과)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에 대한 평균 접근시간은 9.1분으로, 농어촌 주민은 20분 이내에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 이용 가능하여 서비스기준을 달성함.
 - 다만, 자가 차량 외 통학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이동 경로에 따른 시간이 증가하여 목표시간(20분)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이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나. 접근시간 세부 분석

-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별 평균 접근시간 측정 결과, 어린이집 6.2분, 유치원 12.0분으로 나타남.
- 지역 구분에 따른 접근시간 측정 결과, 군 지역 10.7분, 도농복합시 7.5분으로, 군 지역이 도농복합시보다 3.2분 더 소요됨.

〈표 3-9〉 영유아 보육·교육 항목의 지역별·시설별 평균 접근시간

단위: 분

| 지역 구분 |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 평균 | |
|------------|-----------------|------|
| | 어린이집 | 유치원 |
| 군 | 10.7 | 14.4 |
| 도농복합시 | 7.5 | 9.6 |
| 전체 농어촌 시·군 | 9.1 | 12.0 |

○ 20분 이내에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주민 거주지 비율은 89.9%임.

- 서비스기준을 충족하는 주민 거주지 비율은 군지역이 85.9%, 도농복합시가 93.9%로 8.0%p의 편차가 있음.
- 목표시간 내에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주민 거주지 비율이 70% 미만 지역은 전라북도 임실군(56.4%), 강원도 영월군(63.1%), 강원도 홍천군(66.1%), 강원도 횡성군(66.7%), 강원도 정선군(67.1%), 전라남도 신안군(67.8%) 순임.

〈표 3-10〉 영유아 보육·교육 항목의 지역별·시설별 서비스기준 충족 주민 거주지 비율

단위: %

| 지역 구분 |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 평균 | |
|------------|-----------------|------|
| | 어린이집 | 유치원 |
| 군 | 85.9 | 74.1 |
| 도농복합시 | 93.9 | 88.9 |
| 전체 농어촌 시·군 | 89.9 | 81.6 |

○ 동·읍·면 구분에 따른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 접근성은 면부가 평균 10.6분으로, 읍 지역(6.5분)보다 4.1분, 동 지역(2.8분)보다 7.8분 더 소요됨.

- 어린이집의 경우, 면부 6.8분, 읍부 5.3분, 동부 2.8분, 유치원은 면부가 14.3분, 읍부 7.7분, 동부 2.8분이 평균적으로 소요됨.

〈표 3-11〉 영유아 보육·교육 항목의 동·읍·면부 시설별 평균 접근시간

단위: 분

| 동·읍·면 구분 |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 평균 | |
|----------|-----------------|------|
| | 어린이집 | 유치원 |
| 동부 | 2.8 | 2.8 |
| 읍부 | 6.5 | 7.7 |
| 면부 | 10.6 | 14.3 |

주: 농어촌서비스기준 대상 139개 시·군 내의 동·읍·면 지역임.

○ 동·읍·면 구분에 따른 서비스기준 충족 주민 거주지 비율은 면부 86.9%, 읍부 96.3%, 동부 99.9%로 나타남.

- 어린이집에 목표시간 내 도달할 수 있는 주민 거주지 비율은 면부 97.7%, 읍부 99.0%, 동부 99.9%로 대부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반면, 유치원의 경우 면부 76.1%, 읍부 93.5%, 동부 99.8%로 면부의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함.

〈표 3-12〉 영유아 보육·교육 항목의 동·읍·면부 시설별 서비스기준 충족 주민 거주지 비율

단위: %

| 동·읍·면 구분 |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 평균 | | |
|----------|-----------------|------|------|
| | | 어린이집 | 유치원 |
| 동부 | 99.9 | 99.9 | 99.8 |
| 읍부 | 96.3 | 99.0 | 93.5 |
| 면부 | 86.9 | 97.7 | 76.1 |

주: 농어촌서비스기준 대상 139개 시·군 내의 동·읍·면 지역임.

다. 시·군 이행실태 분석

○ 농어촌 시·군 139개 지역 중 131개 지역(94.2%)이 서비스기준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군 지역은 82곳 중 75곳(91.5%), 도농복합시는 57곳 중 56곳(98.2%)이 목표치를 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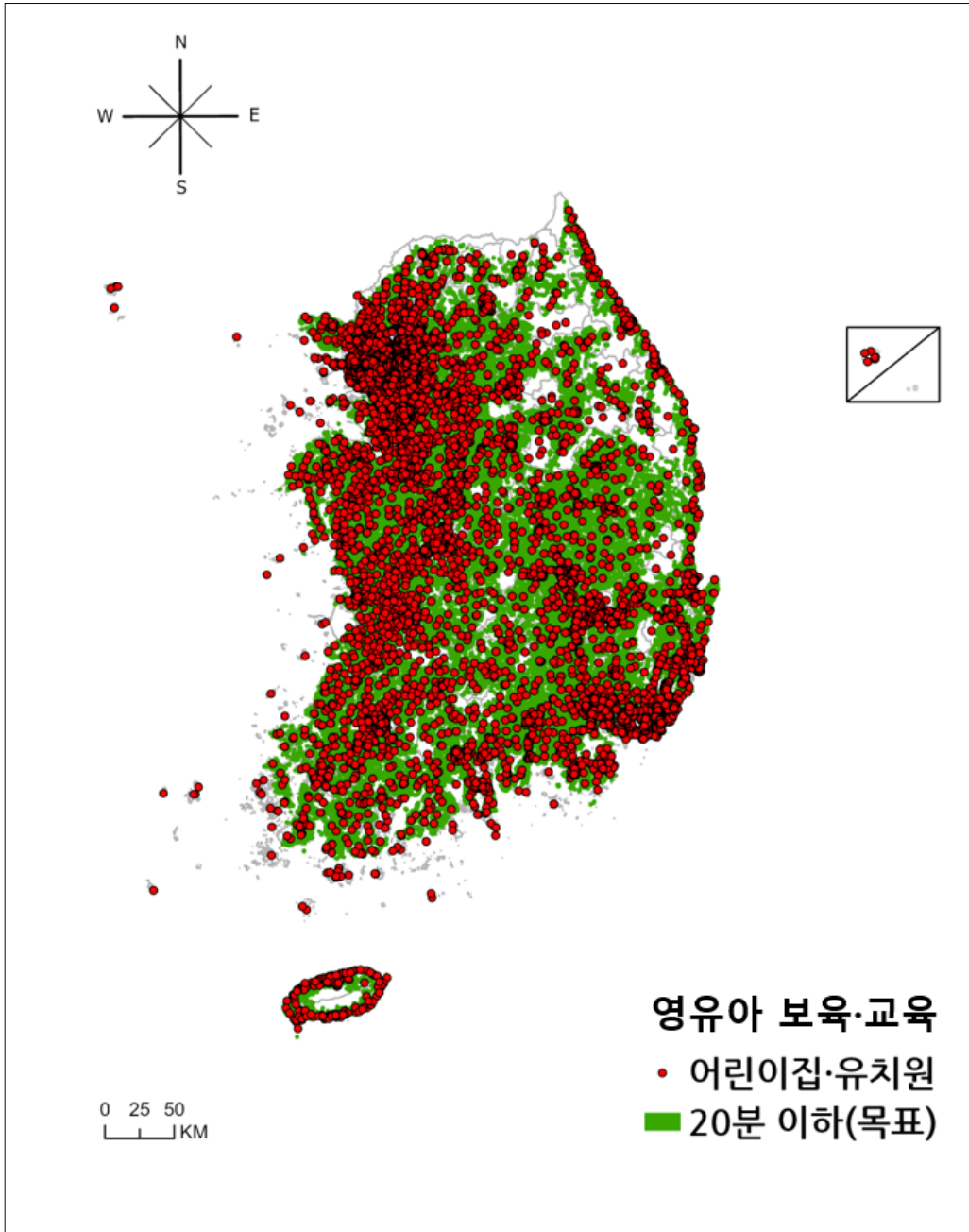
○ 시설별로 살펴보면, 어린이집은 전체 농어촌 시·군이 목표치를 충족했으며, 유치원은 131곳(94.2%)이 목표치를 달성함.

〈표 3-13〉 영유아 보육·교육 항목의 서비스기준 충족 시·군 현황

단위: 개, %

| 지역 구분 |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 전체 | | | | | |
|------------|-----------------|--------|-----------|--------|-----------|--------|
| | | | 어린이집 | | 유치원 | |
| | 시·군 수 | 시·군 비율 | 시·군 수 | 시·군 비율 | 시·군 수 | 시·군 비율 |
| 군 | 75 / 82 | 91.5 | 82 / 82 | 100.0 | 75 / 82 | 91.5 |
| 도농복합시 | 56 / 57 | 98.2 | 57 / 57 | 100.0 | 56 / 57 | 98.2 |
| 전체 농어촌 시·군 | 131 / 139 | 94.2 | 139 / 139 | 100.0 | 131 / 139 | 94.2 |

〈그림 3-3〉 영유아 보육·교육 항목 서비스기준 충족 지역 현황



2.1.4. 노인복지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방문요양·돌봄 등의 서비스 및 같은 법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비율을 80% 이상으로 한다.

가. 점검 방법 및 결과

- (점검 방법) 농어촌 지역 중 독립적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는 저소득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군 비율을 측정함.
 -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대상을 독립적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는 저소득 노인가구(6.5%⁹⁾)로 설정하여 각 농어촌 시·군에서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최소 6.5% 이상의 노인에게 제공하고 있는지 측정함.
 - 전체 농어촌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재가노인지원서비스¹⁰⁾ 이용자 수+노인맞춤돌봄서비스¹¹⁾ 이용자 수} / 65세 이상 노인인구 × 100’이 6.5% 이상인 시·군 비율이 80% 이상이면 서비스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함.
- (점검 자료) 공식통계자료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주요통계’와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현황’ 및 ‘행정안전부 65세 이상 노인인구’, 지자체 행정조사 결과를 활용함.
 - 농어촌 지역 65세 이상 인구는 4,014,642명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는 360,537명,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자(현원)는 106,331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는 277,904명임.

9) 6.5%=16.6%(재가노인 중 IADL제한) × 70%(기초연금수급비율) × 55.9%(독거 및 부부동거가구 비율)(출처: 2017년 노인실태조사 및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 장래가구추계(2000~2045))

10) 현재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서비스 기관(시설)으로부터 제공되는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종류에는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재가지원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등임.

11)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을 위한 방문형, 통원형(집단프로그램) 등의 직접 서비스 연계 서비스 제공

○ (점검 결과) 139개 모든 농어촌 시·군이 독립적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는 저소득 노인가구(6.5%)를 대상으로 재가서비스를 제공하여 이행실태는 100%로, 목표치(80%)를 크게 상회함.

나. 이행실태 세부 분석

○ 전체 농어촌 지역의 독립적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는 저소득 노인가구(6.5%) 대상 재가 노인복지서비스 제공률은 18.6%임.

- 지역 구분에 따른 이행실태 분석 결과, 군 지역 24.4%, 도농복합시 16.0%로, 지역별 편차가 있음.

○ 139개 모든 농어촌 시·군이 독립적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는 노인가구(6.5%)를 대상으로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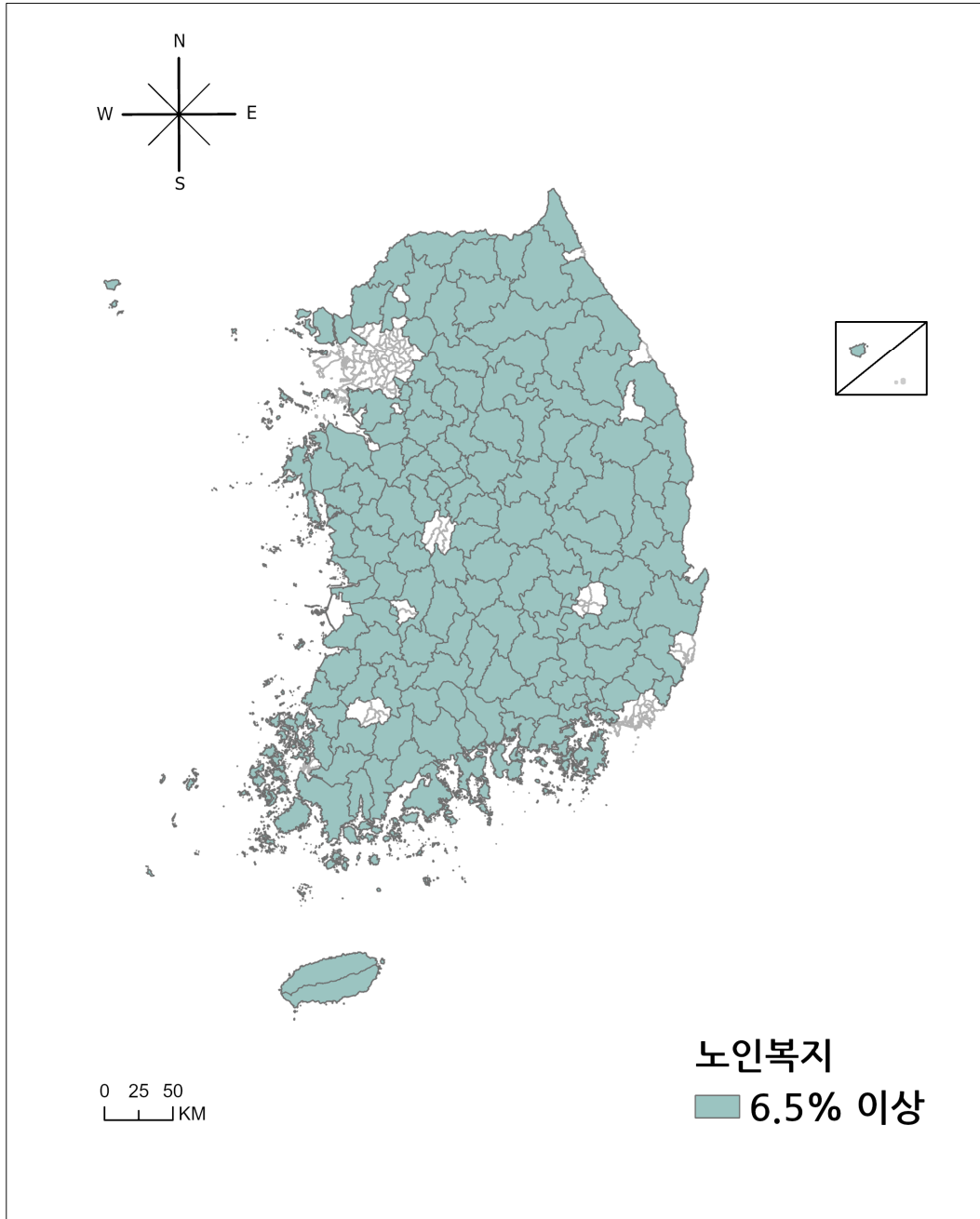
- 군 지역(82곳) 및 도농복합시(57곳) 전 지역이 서비스기준을 충족하여 달성률 100%임.

〈표 3-14〉 노인복지 항목 이행실태 현황

단위: %, 개, %

| 지역 구분 | 재가서비스 제공률 | 목표 달성 지역 | |
|------------|-----------|-----------|--------|
| | | 시·군 수 | 시·군 비율 |
| 군 | 24.4 | 82 / 82 | 100 |
| 도농복합시 | 16.0 | 57 / 57 | 100 |
| 전체 농어촌 시·군 | 18.6 | 139 / 139 | 100 |

〈그림 3-4〉 노인복지 항목 서비스기준 충족 지역 현황



주: 전체 시·군 중 도시 지역은 제외하고 농어촌 시·군만 표시함.

2.2. 교육·문화 부문

2.2.1. 초·중등교육

차량을 이용하여 10분 이내에 농어촌 초등학교·중학교에 도달할 수 있다. 지역여건에 맞는 농어촌 초등학교·중학교를 육성하고 통학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한다.

가. 점검 방법 및 결과

- (점검 방법) 농어촌 주민 거주지와 가장 가까운 초·중학교까지의 접근시간을 측정하여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함.
 - 차량 이동 시(평균속도 32.2km/h) 초·중학교 시설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각각 평균 10분 이내면 서비스기준을 달성한 것으로 판단함.
- (점검 자료)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지역별 주민 거주지 위치 정보와 교육통계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초·중학교 위치 정보를 활용함.
 - 전국의 초등학교 6,359개, 중학교 3,278개 주소자료를 확보해 공간정보로 변환함.
- (점검 결과) 초·중학교 평균 접근시간은 7.4분으로 목표시간 내 접근이 가능함.
 - 농어촌 139개 중 97개(69.8%) 시·군이 10분 이내에 초·중학교 모두 접근 가능함.
 - 통학 차량 이용 시 이동 거리가 늘어나 목표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나. 접근시간 세부 분석

- 시설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접근시간은 평균 5.9분, 중학교는 평균 8.9분 소요됨.
- 지역 구분에 따른 접근시간 분석 결과, 초·중학교 평균 접근시간은 군 지역이 8.1분, 도농복합시 6.7분으로, 군 지역이 도농복합시보다 1.4분이 더 소요됨.

- 군 지역은 6.5분, 도농복합시는 5.3분 내 초등학교에 도달 가능하며, 중학교 도달 시간은 군 지역 평균 9.6분, 도농복합시 평균 8.1분 소요됨.

〈표 3-15〉 초·중등교육 항목의 지역별·시설별 평균 접근시간

단위: 분

| 지역 구분 | 초·중학교 시설 평균 | |
|------------|-------------|-----|
| | 초등학교 | 중학교 |
| 군 | 8.1 | 9.6 |
| 도농복합시 | 6.7 | 8.1 |
| 전체 농어촌 시·군 | 7.4 | 8.9 |

- 농어촌 주민 거주지에서 10분 이내에 초·중학교 시설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주민 거주지 비율은 75.1%임.
 - 군 지역과 도농복합시의 주민 거주지 비율은 각각 70.6%, 79.4%로 8.8%p의 편차가 있음.
- 시설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접근이 10분 내 가능한 주민 거주지 비율은 84.8%이며, 중학교는 65.4%가 10분 이내 도달 가능함.
 - 초등학교에 목표시간 10분 내 도달할 수 있는 주민 거주지 비율이 낮은 곳은 경상북도 청송군(55.1%), 경상북도 영양군(56.6%), 충청북도 단양군(63.5%), 강원도 영월군(64.0%) 순임.
 - 중학교에 목표시간 10분 내 도달할 수 있는 주민 거주지 비율이 낮은 곳은 충청북도 단양군(33.4%), 경상남도 의령군(34.7%), 경상북도 안동시(35.7%), 경상북도 영양군(36.1%) 순임.

〈표 3-16〉 초·중등교육 항목의 지역별·시설별 서비스기준 충족 주민 거주지 비율

단위: %

| 지역 구분 | | 초·중학교 평균 | |
|------------|------|----------|------|
| | | 초등학교 | 중학교 |
| 군 | 70.6 | 81.0 | 60.2 |
| 도농복합시 | 79.4 | 88.4 | 70.3 |
| 전체 농어촌 시·군 | 75.1 | 84.8 | 65.4 |

○ 동·읍·면 구분에 따른 초·중학교 평균 접근시간은 면 지역이 8.1분으로, 읍 지역(6.3분)보다 1.8분, 동 지역(3.7분)보다 4.4분 더 소요됨.

- 초등학교 접근시간은 면 지역 평균 6.4분으로, 읍 지역(5.1분)보다 1.3분, 동 지역(3.0분)보다 3.4분이 더 소요됨.
- 중학교 접근시간은 면 지역 평균 9.8분으로, 읍 지역(7.4분)보다 2.4분, 동 지역(4.3분)보다 5.5분이 더 소요됨.

〈표 3-17〉 초·중등교육 항목의 동·읍·면부 시설별 평균 접근시간

단위: 분

| 동·읍·면 구분 | | 초·중학교 평균 | |
|----------|-----|----------|-----|
| | | 초등학교 | 중학교 |
| 동부 | 3.7 | 3.0 | 4.3 |
| 읍부 | 6.3 | 5.1 | 7.4 |
| 면부 | 8.1 | 6.4 | 9.8 |

주: 농어촌서비스기준 대상 139개 시·군 내의 동·읍·면 지역임.

○ 초·중학교에 목표시간 10분 내 도달이 가능한 주민 거주지 비율은 면부 70.4%, 읍부 83.3%, 동부 95.7%로 동·읍·면 구분에 따른 이행실태 편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초등학교에 10분 내 접근할 수 있는 주민 거주지 비율은 면부 81.7%, 읍부 90.5%, 동부 97.6%로 나타남.
- 중학교에 10분 내 접근할 수 있는 주민 거주지 비율은 면부 59.0%, 읍부 76.1%, 동부 93.8%로 나타남.

〈표 3-18〉 초·중등교육 항목의 동·읍·면부 시설별 서비스기준 충족 주민 거주지 비율

단위: %

| 동·읍·면구분 | 초·중학교 평균 | | |
|---------|----------|------|------|
| | | 초등학교 | 중학교 |
| 동부 | 95.7 | 97.6 | 93.8 |
| 읍부 | 83.3 | 90.5 | 76.1 |
| 면부 | 70.4 | 81.7 | 59.0 |

주: 농어촌서비스기준 대상 139개 시·군 내의 동·읍·면 지역임.

다. 시·군 이행실태 분석

○ 농어촌 시·군 139개 지역 중 97개 지역(69.8%)이 초·중등학교 항목 서비스기준을 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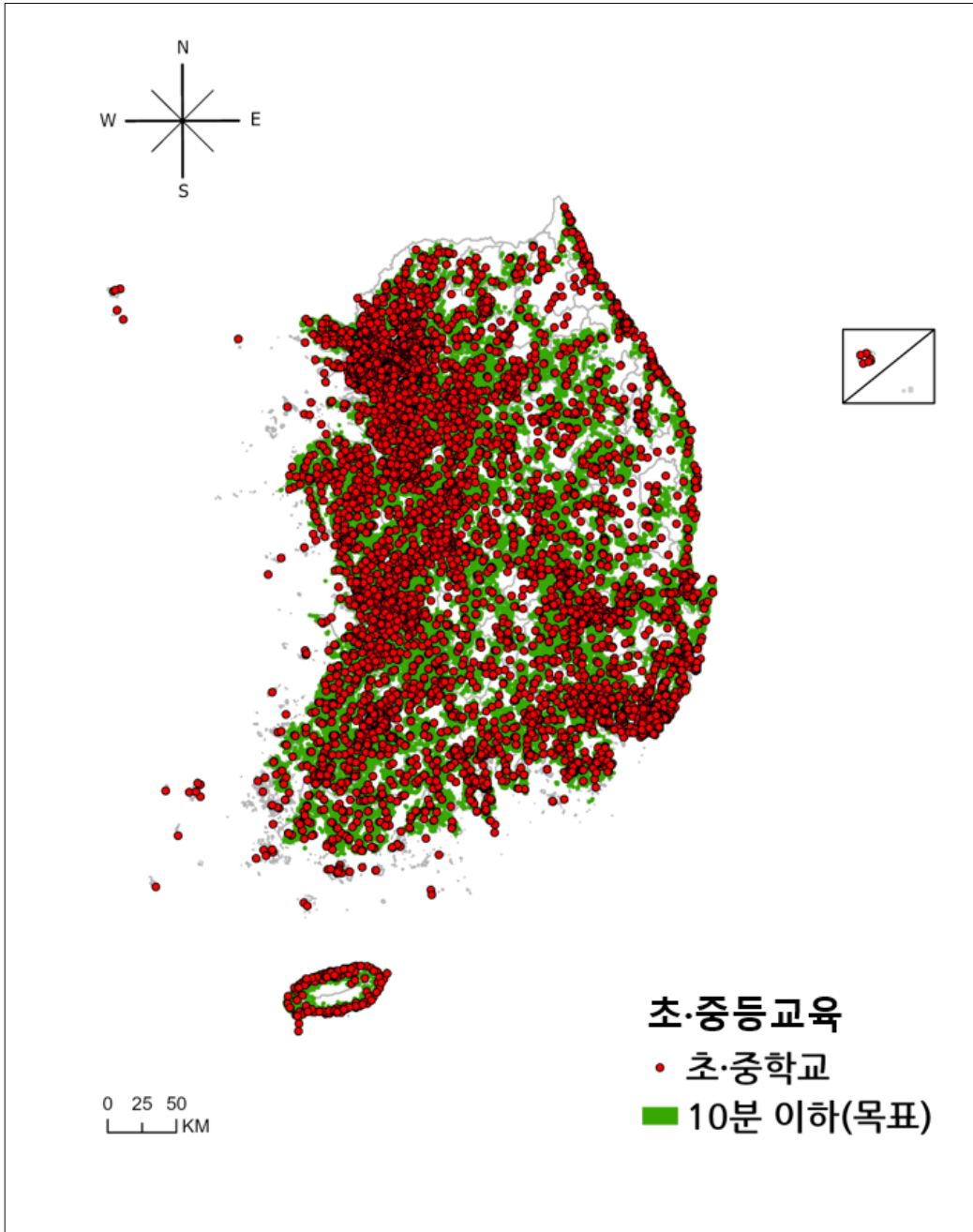
- 초등학교 평균 접근시간이 10분 이내인 농어촌 지역은 139곳 중 138곳(99.3%)이며, 군 지역의 98.8%, 도농복합시 100%임.
- 중학교 평균 접근시간이 10분 이내인 농어촌 지역은 139곳 중 97곳(69.8%)이며, 군 지역의 58.5%, 도농복합시의 86.0%임.

〈표 3-19〉 초·중등교육 항목의 서비스기준 충족 시·군 현황

단위: 개, %

| 지역 구분 | 초·중학교 전체 | | | | | |
|------------|----------|--------|-----------|--------|----------|--------|
| | | | 초등학교 | | 중학교 | |
| | 시·군 수 | 시·군 비율 | 시·군 수 | 시·군 비율 | 시·군 수 | 시·군 비율 |
| 군 | 48 / 82 | 58.5 | 81 / 82 | 98.8 | 48 / 82 | 58.5 |
| 도농복합시 | 49 / 57 | 86.0 | 57 / 57 | 100.0 | 49 / 57 | 86.0 |
| 전체 농어촌 시·군 | 97 / 139 | 69.8 | 138 / 139 | 99.3 | 97 / 139 | 69.8 |

〈그림 3-5〉 초·중등교육 항목 서비스기준 충족 지역 현황



2.2.2. 평생교육

읍·면내에서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또는 같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설치·지정된 평생학습센터에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을 70% 이상으로 한다.

가. 점검 방법 및 결과

- (점검 방법) 주민센터 등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읍·면 비율을 시·군별로 조사하여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함.
 - 농어촌 시·군별로 ‘(비형식 평생교육시설이 있는 읍·면 수 / 총 읍·면 수) × 100’을 계산한 값이 70%(목표치) 이상이면 서비스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함.

- (점검 자료) 지자체 행정조사를 통해 주민자치센터를 포함해 비형식 평생교육시설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읍·면 비율을 농어촌 시·군별로 조사하여 집계함.
 -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 및 동법 제21조의3에 근거한 주민자치센터 등을 포함하여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서 정규교육과정 외 학력보완교육 및 성인 기초·문자해독교육, 문화예술교육 및 시민참여교육 등과 같은 모든 형태의 조직적 교육활동을 운영하는 곳을 대상으로 설정함.

- (점검 결과) 139개 농어촌 시·군의 이행실태는 83.5%로 서비스기준을 달성함.
 - 전체 농어촌 시·군 중 114곳(82.0%)은 목표치(70%)를 충족했으나 나머지 25곳(18.0%)은 목표치에 미달함.
 - * '22 안건 기준 평생교육 항목 이행실태는 84.6%이나 일부 지역 원자료 수정으로 인하여 이행실태를 재측정한 수치임.

나. 이행실태 세부 분석

○ 읍·면 1,412개 중 주민자치센터를 포함한 비형식 평생교육시설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읍·면 수는 총 1,179개로, 이행실태는 83.5%임.

- 지역 구분에 따른 이행실태는 군 지역 84.1%, 도농복합시 82.7%이며, 군지역에 속한 읍·면 828곳 중 696곳, 도농복합시에 속한 읍·면 584곳 중 483곳에서 각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임.

- 추가적으로, 비대면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읍·면 조사 결과, 군 지역 읍·면 828곳 중 144곳(17.4%), 도농복합시 읍·면 584곳 중 113곳(19.3%)에서 비대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

○ 139개 농어촌 시·군 중 114개(82.0%) 지역이 목표치(70%)를 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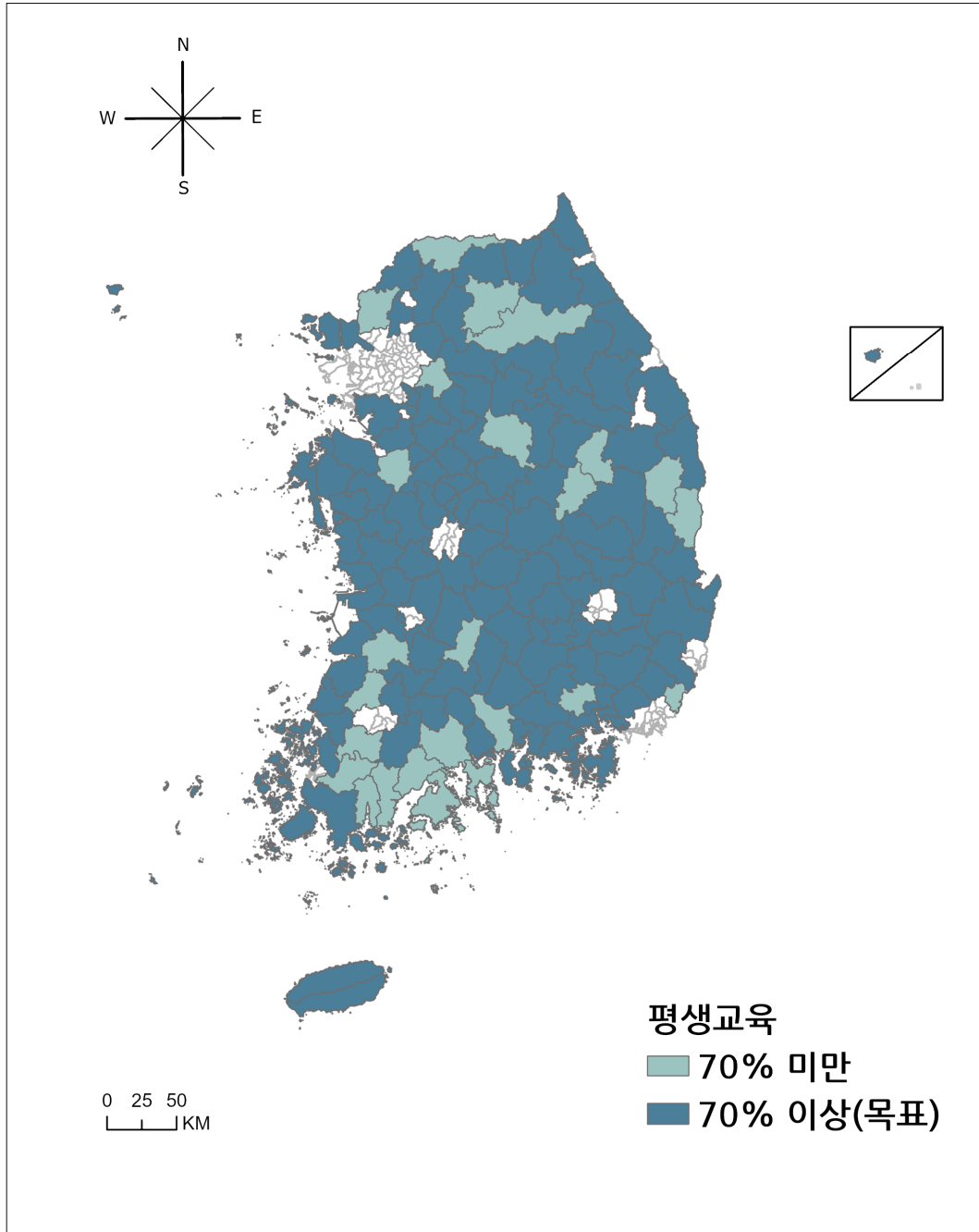
- 군 지역 82곳 중 67곳(81.7%), 도농복합시 57곳 중 47곳(82.5%)이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표 3-20〉 평생교육 항목 이행실태 현황

단위: %, 개, %

| 지역 구분 |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읍·면 비율 | 목표 달성 지역 | |
|------------|---------------------|-----------|--------|
| | | 시·군 수 | 시·군 비율 |
| 군 | 84.1 | 67 / 82 | 81.7 |
| 도농복합시 | 82.7 | 47 / 57 | 82.5 |
| 전체 농어촌 시·군 | 83.5 | 114 / 139 | 82.0 |

〈그림 3-6〉 평생교육 항목 서비스기준 충족 지역 현황



주: 전체 시·군 중 도시 지역은 제외하고 농어촌 시·군만 표시함.

2.2.3. 문화

차량을 이용하여 40분 이내에 「공연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지방문화원진흥법」제4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문화원에 도달할 수 있으며, 월 1회 이상 문화프로그램과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다.

가. 점검 방법 및 결과

- (점검 방법) 농어촌 주민 거주지와 가장 가까운 문화시설까지 접근시간을 측정하여 이행 실태를 점검·평가함.
 - 차량 이동 시(평균속도 32.2km/h) 문화시설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평균 40분 이내면 서비스기준을 달성한 것으로 판단함.
- (점검 자료)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지역별 주민 거주지 위치 정보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공하는 한국문화기반시설총람을 활용함.
 - 전국의 문화시설 유형 중 문화예술회관과 지방문화원의 486개 시설의 주소를 공간 정보(GIS) 형태로 구축하여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함.
- (점검 결과) 농어촌 지역에서 문화시설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24.1분으로 목표시간 내에 문화시설 접근이 가능함.
 - 농어촌 지역 중 132개 지역(95.0%)이 40분 내 문화예술회관 및 지방문화원 등의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음.

나. 접근시간 세부 분석

- 지역 구분에 따른 접근시간 분석 결과, 군 지역 평균 26.1분, 도농복합시 평균 22.2분으로, 문화시설에 접근하는 데 군 지역이 도농복합시보다 3.9분 더 소요됨.
- 농어촌 시·군 주민 거주지에서 40분 이내에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주민 거주지 비율은 86.5%임.
 - 지역 구분에 따른 서비스기준 충족 주민 거주지 비율은 군지역 82.9%, 도농복합시는 90.0%로 나타남.
 - 문화시설에 목표시간 40분 내 도달할 수 있는 주민 거주지 비율이 50.0% 이하인 지역은 인천광역시 옹진군(4.3%), 경상북도 청송군(5.5%), 전라남도 구례군(27.5%), 강원도 평창군(34.2%), 전라남도 신안군(39.4%)임.

〈표 3-21〉 문화 항목의 지역별 평균 접근시간 및 서비스기준 충족 주민 거주지 비율

단위: 분, %

| 지역 구분 | 평균 접근시간 | 서비스기준 충족 주민 거주지 비율 |
|------------|---------|--------------------|
| 군 | 26.1 | 82.9 |
| 도농복합시 | 22.2 | 90.0 |
| 전체 농어촌 시·군 | 24.1 | 86.5 |

- 동·읍·면 구분에 따른 문화시설 접근시간 분석 결과, 면 지역 27.3분, 읍 지역 19.1분, 동 지역 8.7분 소요되어 편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남.
- 문화시설 목표시간 40분 내 도달이 가능한 주민 거주지 비율은 면부 83.9%, 읍부 90.2%, 동부 99.9%로 나타남.

〈표 3-22〉 문화 항목의 동·읍·면부 평균 접근시간 및 서비스기준 충족 주민 거주지 비율

단위: 분, %

| 동·읍·면 구분 | 평균 접근시간 | 서비스기준 충족 주민 거주지 비율 |
|----------|---------|--------------------|
| 동부 | 8.2 | 99.9 |
| 읍부 | 19.1 | 90.2 |
| 면부 | 27.3 | 83.9 |

주: 농어촌서비스기준 대상 139개 시·군 내의 동·읍·면 지역임.

다. 시·군 이행실태 분석

○ 문화 항목 서비스기준 달성 시·군은 139곳 중 132곳(95.0%)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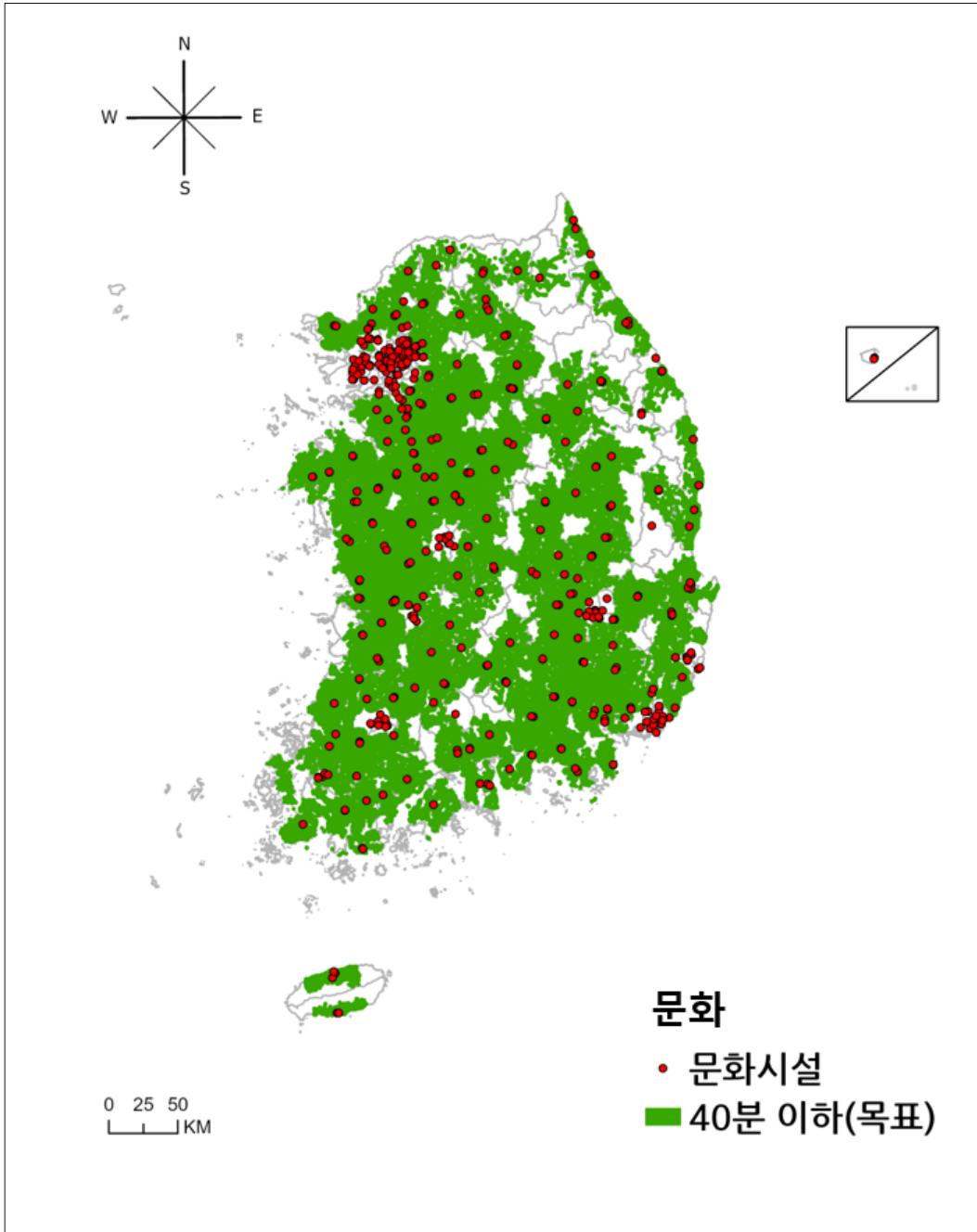
- 군 지역은 75곳(91.5%), 도농복합시는 57곳(100%)이 목표치를 달성함.

〈표 3-23〉 문화 항목의 서비스기준 충족 시·군 현황

단위: 개, %

| 지역 구분 | 시·군 수 | 시·군 비율 |
|------------|-----------|--------|
| 군 | 75 / 82 | 91.5 |
| 도농복합시 | 57 / 57 | 100.0 |
| 전체 농어촌 시·군 | 132 / 139 | 95.0 |

〈그림 3-7〉 문화 항목 서비스기준 충족 지역 현황



2.2.4. 도서관

차량을 이용하여 10분 이내에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같은 호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은 제외한다)을 이용할 수 있다.

가. 점검 방법 및 결과

- (점검 방법) 도서관 항목은 농어촌 주민 거주지와 가장 가까운 도서관 시설까지의 접근 시간을 측정하여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함.
 - 차량 이동 시(평균속도 32.2km/h) 도서관 시설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평균 10분 이하면 서비스기준을 달성한 것으로 판단함.
- (점검 자료)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지역별 주민 거주지 위치 정보와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작은 도서관, 공공도서관의 위치 정보를 활용함.
 - 전국 7,672개의 도서관(국·공립 도서관, 작은 도서관)의 주소자료를 확보해 공간정보를 구축하여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함.
- (점검 결과) 도서관 시설 평균 접근시간이 10.0분으로 목표시간 내 도달이 가능하여 서비스기준을 달성함.
 - 139개 농어촌 시·군 중 79개(56.8%) 지역이 10분 내 도서관 접근이 가능함.

나. 접근시간 세부 분석

- 지역 구분에 따른 접근시간 분석 결과, 군 지역 평균 11.8분, 도농복합시 평균 8.3분 내 도서관 시설에 접근이 가능하여 군 지역이 도농복합시보다 3.5분 더 소요됨.
- 도서관에 10분 내 접근이 가능한 주민 거주지 비율은 61.0%임.
 - 군 지역의 서비스기준 충족 주민 거주지 비율은 52.1%로 도농복합시 69.6%와 비교해 17.5%p 낮음.

- 서비스기준을 충족하는 주민 거주지 비율이 낮은 곳은 인천광역시 옹진군(4.3%), 충청북도 단양군(13.9%), 전라남도 장흥군(18.0%), 경상북도 군위군(20.5%), 전라남도 해남군(22.3%) 순임.

〈표 3-24〉 도서관 항목의 지역별 평균 접근시간 및 서비스기준 충족 주민 거주지 비율

단위: 분, %

| 지역 구분 | 평균 접근시간 | 서비스기준 충족 주민 거주지 비율 |
|------------|---------|--------------------|
| 군 | 11.8 | 52.1 |
| 도농복합시 | 8.3 | 69.6 |
| 전체 농어촌 시·군 | 10.0 | 61.0 |

- 동·읍·면 구분에 따른 도서관 접근시간 분석 결과, 면부 평균 11.6분, 읍부 평균 7.1분, 동부 평균 3.4분으로 면부는 목표시간 10분 내 도서관 이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 동·읍·면 구분에 따른 서비스기준 충족 주민 거주지 비율은 동부 95.8%, 읍부 78.4%, 면부 52.0%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표 3-25〉 도서관 항목의 동·읍·면부 평균 접근시간 및 서비스기준 충족 주민 거주지 비율

단위: 분, %

| 동·읍·면 구분 | 평균 접근시간 | 서비스기준 충족 주민 거주지 비율 |
|----------|---------|--------------------|
| 동부 | 3.4 | 95.8 |
| 읍부 | 7.1 | 78.4 |
| 면부 | 11.6 | 52.0 |

주: 농어촌서비스기준 대상 139개 시·군 내의 동·읍·면 지역임.

다. 시·군 이행실태 분석

○ 도서관 시설까지 접근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평균 10분 이내인 지역은 79곳으로 농어촌 지역의 56.8%가 서비스기준을 충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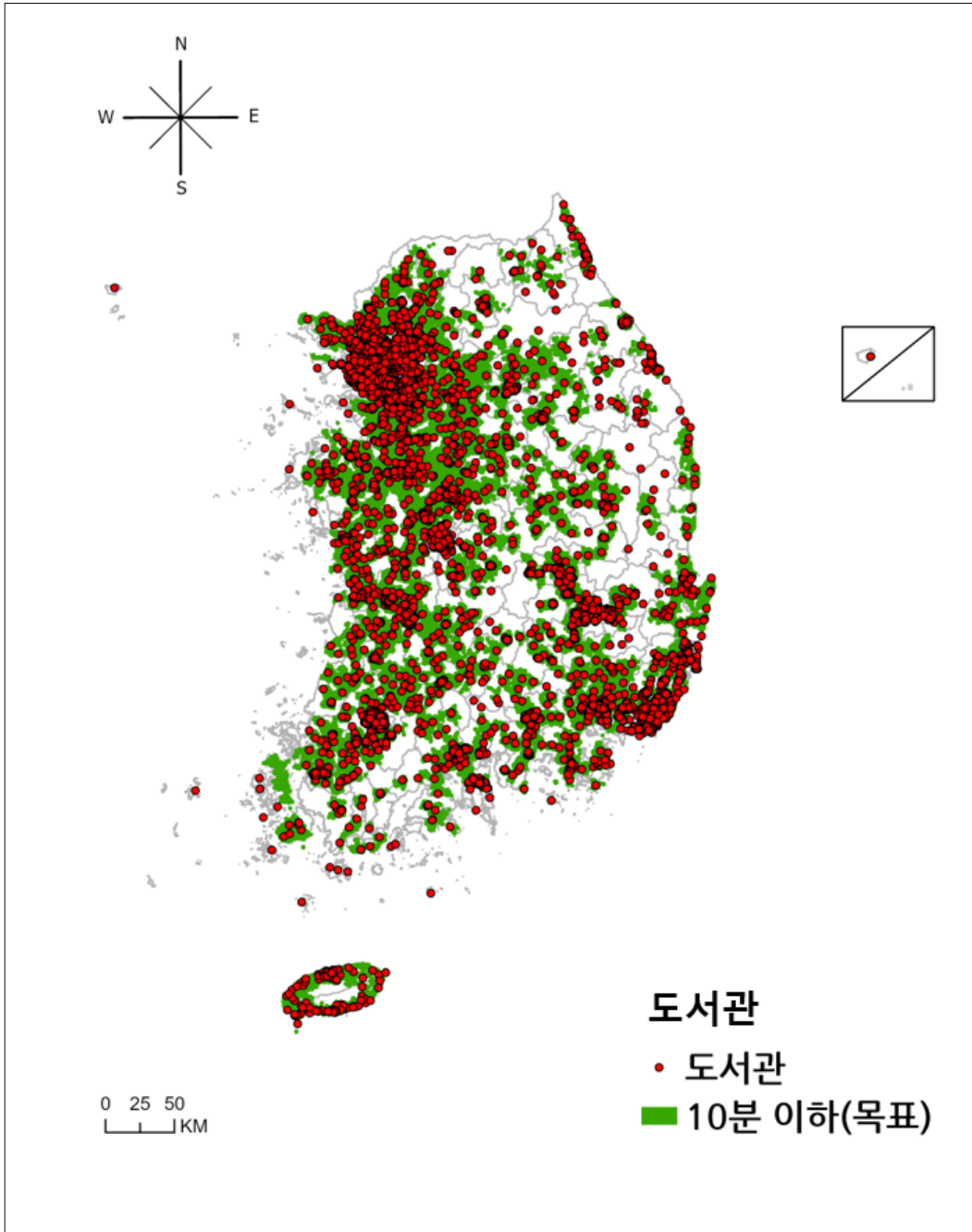
- 군 지역은 35곳(42.7%), 도농복합시는 44곳(77.2%)이 도서관 시설까지 10분 내 도달이 가능함.

〈표 3-26〉 도서관 항목의 서비스기준 충족 시·군 현황

단위: 개, %

| 지역 구분 | 시·군 수 | 시·군 비율 |
|------------|----------|--------|
| 군 | 35 / 82 | 42.7 |
| 도농복합시 | 44 / 57 | 77.2 |
| 전체 농어촌 시·군 | 79 / 139 | 56.8 |

〈그림 3-8〉 도서관 항목 서비스기준 충족 지역 현황



2.2.5. 체육시설

차량을 이용하여 30분 이내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가. 점검 방법 및 결과

- (점검 방법) 농어촌 주민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체육시설까지의 접근시간을 측정하여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함.
 - 차량 이동 시(평균속도 32.2km/h) 체육시설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평균 30분 이내면 서비스기준을 달성한 것으로 판단함.
- (점검 자료)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지역별 주민 거주지 위치 정보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공하는 체육시설(경기장, 체육관, 수영장)의 체육시설 주소자료를 활용함.
 - 전국 1,913개의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공간정보를 구축하여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하였으며, 동네 간이 체육시설은 소규모, 관리 문제 등으로 점검·평가에서 제외함.
- (점검 결과) 농어촌 지역의 체육시설 평균 접근시간은 16.6분으로, 목표시간 내 도달이 가능함.
 - 전체 농어촌 시·군 중 136개(97.8%) 지역에서 30분 이내 체육시설에 접근이 가능함.

나. 접근시간 세부 분석

- 지역 구분에 따른 접근시간 분석 결과, 체육시설에 접근하는 데 군 지역은 18.0분, 도농복합시는 15.3분 소요되어 군 지역이 도농복합시보다 2.7분 더 소요됨.
- 농어촌 지역에서 30분 이내에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주민 거주지 비율은 87.1%임.
 - 군 지역의 서비스기준 충족 주민 거주지 비율은 84.4%로, 도농복합시(89.7%)보다 5.3%p 낮음.
 - 목표시간 내 접근 가능한 주민 거주지 비율이 낮은 지역은 인천광역시 옹진군(25.4%), 경상북도 청송군(50.3%), 경상북도 울진군(55.6%), 강원도 평창군(55.0%) 순임.

〈표 3-27〉 체육시설 항목의 지역별 평균 접근시간 및 서비스기준 충족 주민 거주지 비율

단위: 분, %

| 지역 구분 | 평균 접근시간 | 서비스기준 충족 주민 거주지 비율 |
|------------|---------|--------------------|
| 군 | 18.0 | 84.4 |
| 도농복합시 | 15.3 | 89.7 |
| 전체 농어촌 시·군 | 16.6 | 87.1 |

○ 동·읍·면 구분에 따른 체육시설 평균 접근시간은 면부 19.4분으로, 읍부(11.1분)보다 8.3분, 동부(6.2분)보다 13.2분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 체육시설에 30분 이내 도달 가능한 주민 거주지 비율은 면부 83.3%, 읍부 95.1%, 동부 99.9%로 나타남.

〈표 3-28〉 체육시설 항목의 동·읍·면부 평균 접근시간 및 서비스기준 충족 주민 거주지 비율

단위: 분, %

| 동·읍·면 구분 | 평균 접근시간 | 서비스기준 충족 주민 거주지 비율 |
|----------|---------|--------------------|
| 동부 | 6.2 | 99.9 |
| 읍부 | 11.1 | 95.1 |
| 면부 | 19.4 | 83.3 |

주: 농어촌서비스기준 대상 139개 시·군 내의 동·읍·면 지역임.

다. 시·군 이행실태 분석

○ 농어촌 시·군 139개 지역 중 136개 지역(97.8%)이 체육시설 항목 서비스기준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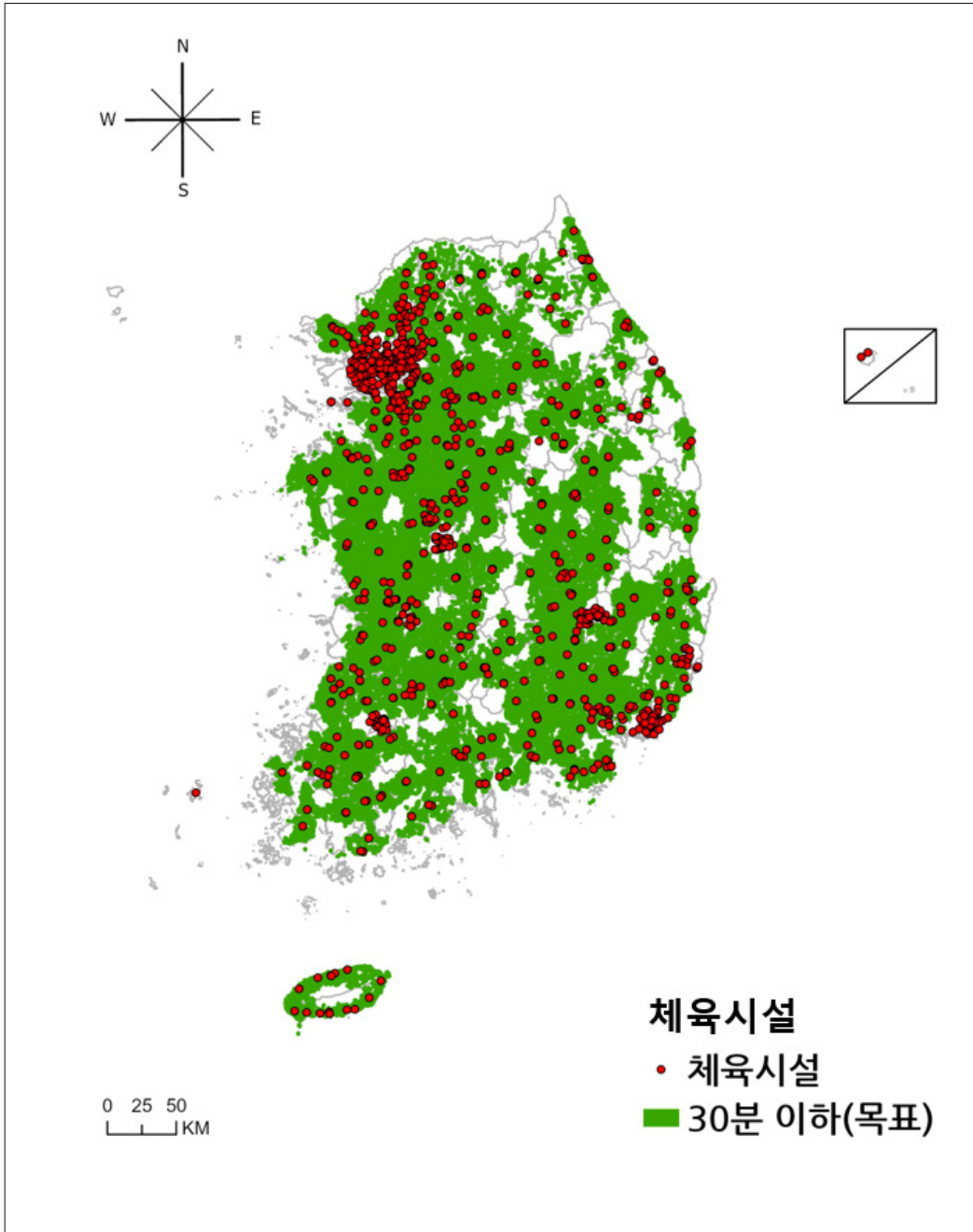
- 서비스기준을 충족하는 곳은 군 지역 82개 중 79개(96.3%), 도농복합시 57개 중 57개(100%) 지역임.

〈표 3-29〉 체육시설 항목의 서비스기준 충족 시·군 현황

단위: 개, %

| 지역 구분 | 시·군 수 | 시·군 비율 |
|------------|-----------|--------|
| 군 | 79 / 82 | 96.3 |
| 도농복합시 | 57 / 57 | 100.0 |
| 전체 농어촌 시·군 | 136 / 139 | 97.8 |

〈그림 3-9〉 체육시설 항목 서비스기준 충족 지역 현황



2.3. 정주여건 부문

2.3.1. 주택

주민 누구나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한 최저주거기준에 적합한 주택에서 거주한다. 슬레이트(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를 말한다)가 사용된 주택 지붕의 철거·개량 비율을 23% 이상으로 한다.

가. 점검 방법 및 결과

- (점검 방법) 2014년 석면 슬레이트 소재 주택 수와 2014년부터 2022년까지의 석면 슬레이트 소재 주택 철거 실적 자료를 활용함.
 - ‘ $(2014\text{년부터 } 2022\text{년까지의 슬레이트 주택 철거 수}) / 2014\text{ 슬레이트 주택 수} \times 100$ ’ 산식을 적용하여 23% 이상이면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판단함.
 - 최저주거기준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적합한 전수 조사 자료가 부재하여 농어촌 지역의 주택에 대한 최저주거기준 현황 점검이 불가함.
- (점검 자료) 환경부의 전국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및 연도별 석면 슬레이트 소재 주택 철거 실적 자료를 통해 이행실태를 조사함.
 - 2014년 슬레이트 소재 주택 수 자료의 경우 시·군 구분이 불가능한 관계로 2014년 슬레이트 소재 주택 수와 2014년부터 2022년까지의 농어촌 슬레이트 주택 철거 수 (누적)로 산출함.
 - ’20년도 이행실태는 환경부 자료 미제공으로 국토교통부의 건축물대장 표제부 자료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가공했으나 ’21년 이후 환경부 농어촌 슬레이트 철거 실적 자료를 기준으로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함.
- (점검 결과) 주택 항목 이행실태는 34.8%로 목표치를 충족함.
 - 2014년 슬레이트 소재 주택 수는 총 701,396호이며,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철거한 농어촌 지역 슬레이트 소재 주택 철거처리 물량은 243,991호임.

〈표 3-30〉 슬레이트 소재 주택 철거 사업 실적

단위: 호

| 구분 | 2015-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누적 철거실적 |
|------------------------|------------|--------|--------|--------|---------|
| 농어촌 슬레이트 주택 철거처리 물량 | 147,022 | 35,802 | 32,302 | 28,865 | 243,991 |

자료: 환경부 내부자료.

나. 이행실태 세부 분석

- 농어촌 지역 주택 항목 이행실태는 34.8%이며, 환경부 자료의 경우 농어촌 시·군별 실적 자료가 부재하여 세부 분석이 불가함.

2.3.2. 상수도

면 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85% 이상으로 한다.

가. 점검 방법 및 결과

- (점검 방법) 면 지역 주민등록인구(등록외국인포함) 대비 급수 인구(지방 및 광역상수도) 비율을 산출함.
 - ‘(시·군별 면 지역 지방 및 광역상수도 급수 인구수 / 시·군별 면 지역 주민등록인구수) × 100’이 85% 이상이면 목표치를 충족한 것으로 판단함.
- (점검 자료) 환경부 ‘2021 상수도 통계’ 자료 중 급수인구현황을 기반으로 면 지역 총인구(행정구역내 주민등록인구(등록외국인포함)) 및 급수인구 계(지방 및 광역상수도) 데이터를 활용함.
- (점검 결과) 면 지역 지방 및 광역상수도 보급률은 81.6%로 목표치에 미달함.
 - 도·농간 상수도 보급률 격차는 감소되는 추세이나 전국 상수도 보급률과 면 지역 상수도 보급률 간 격차가 약 20%p 정도 여전히 존재해 상수도 취약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음.

나. 이행실태 세부 분석

- 2021년 기준 면 지역 주민등록인구는 472만 명이며, 이 중 지방 및 광역상수도 급수 인구는 약 385만 명으로, 이에 따른 이행실태는 81.6%임.
 - 군 지역 내의 면 지역에 대한 상수도 보급률은 76.5%, 도농복합시 내의 면 지역에 대한 상수도 보급률은 85.7%임.

- 목표치 달성 시·군은 138곳 중 65곳(47.1%)이었으며, 나머지 73곳(52.9%)은 미달함.
- 지역 구분에 따라서는 군 지역 82곳 중 34곳(41.5%)과 도농복합시 56곳 중 31곳(55.4%)이 목표치를 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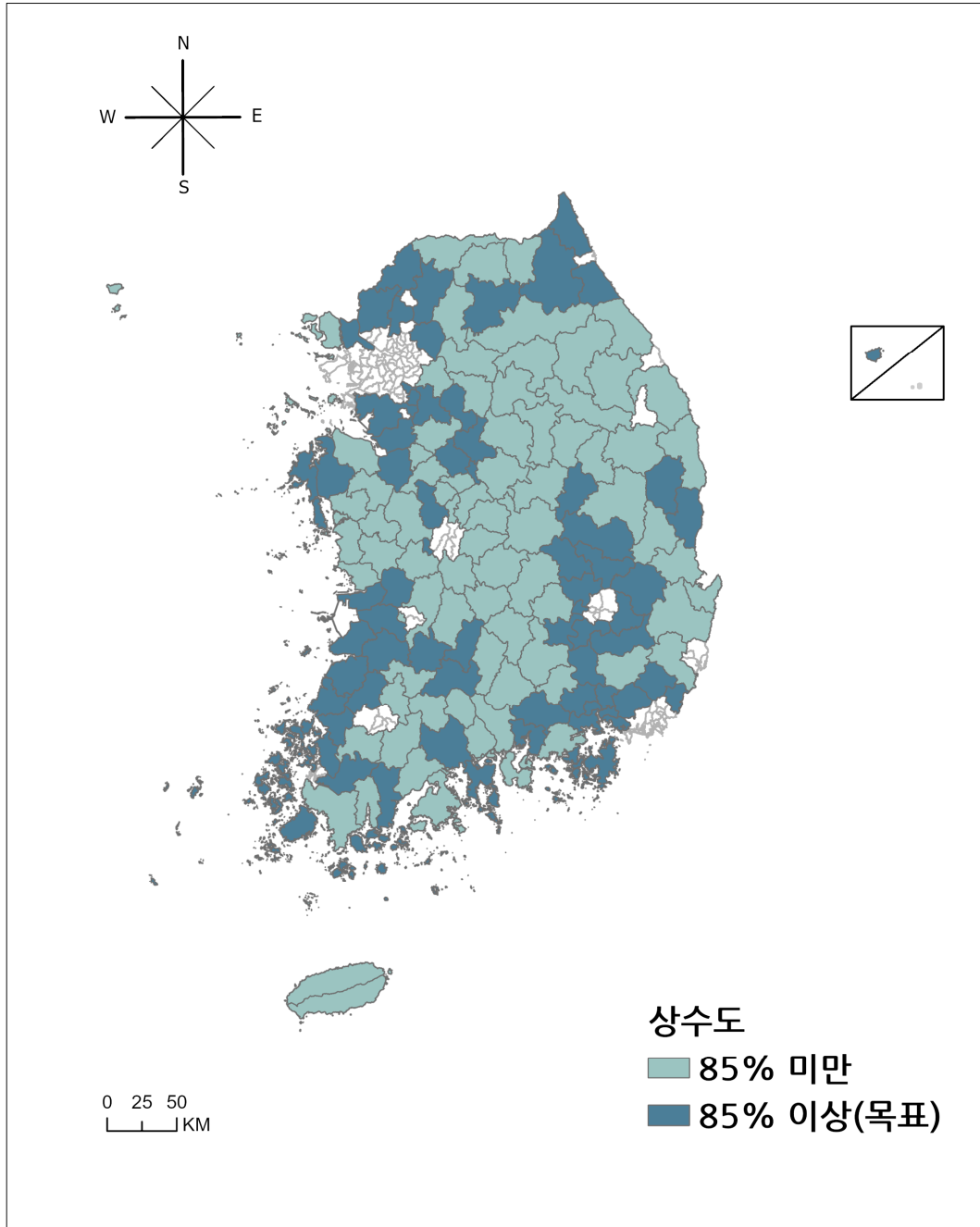
〈표 3-31〉 상수도 항목 이행실태 현황

단위: %, 개, %

| 지역 구분 | 상수도 보급률 | 목표 달성 지역 | |
|------------|---------|----------|--------|
| | | 시·군 수 | 시·군 비율 |
| 군 | 76.5 | 34 / 82 | 41.5 |
| 도농복합시 | 85.7 | 31 / 56 | 55.4 |
| 전체 농어촌 시·군 | 81.6 | 65 / 138 | 47.1 |

주: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통합된 수치로 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하나의 지역으로 간주해 138개 시·군으로 명시함.

〈그림 3-10〉 상수도 항목 서비스기준 충족 지역 현황



주: 전체 시·군 중 도시 지역은 제외하고 농어촌 시·군만 표시함.

2.3.3. 하수도

군 지역 하수도 보급률을 76% 이상으로 한다.

가. 점검 방법 및 결과

- (점검 방법) 군 지역별 총인구 중 공공하수처리인구를 집계해 공공하수처리구역 인구의 하수도 보급률을 도출함.
 - ‘(군 지역 공공하수처리 인구수 / 군 지역 총 인구수) × 100’이 76% 이상이면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판단함.
- (점검 자료) 공식통계자료인 환경부 ‘2021 하수도 통계’를 활용함.
 - 군 지역을 대상으로 총인구, 하수처리구역 내 공공하수처리 인구, 공공하수처리구역 인구 보급률을 집계하여 이행실태를 측정함.
- (점검 결과) 농어촌 군 지역의 하수도 보급률은 75.6%로, 서비스기준 목표치(76%)에는 미달함.
 - 목표치 달성한 곳은 군 지역 82곳 중 38곳(46.3%)에 불과하므로, 미달성 군 지역에 우선적으로 시설을 확충해야 함.

나. 이행실태 세부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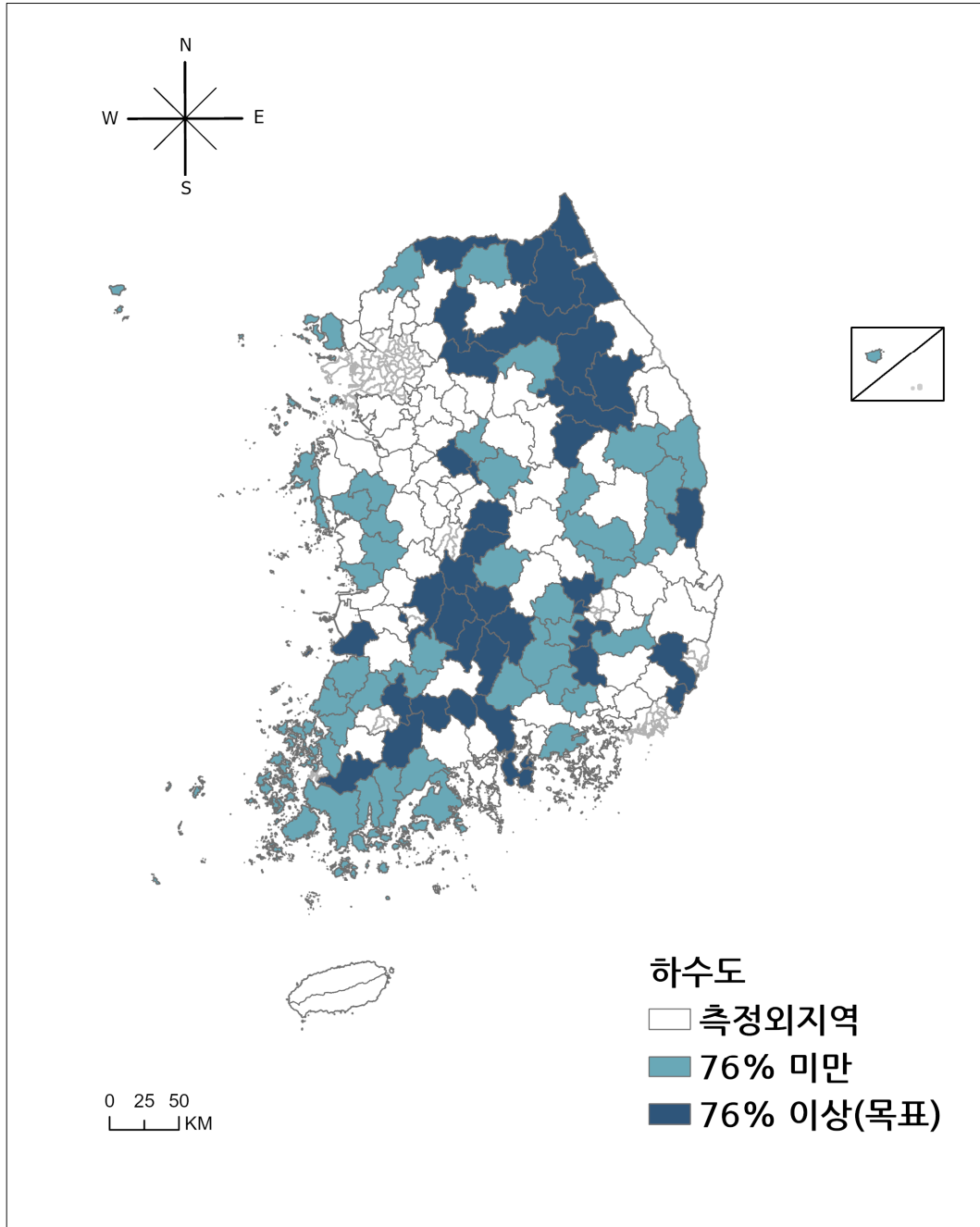
- 군 지역 총인구 4,413,553명 중 공공하수처리 인구는 3,337,315명으로, 이에 따른 하수도 보급률은 75.6%로 나타남.
 - 목표치를 달성한 군 지역은 82곳 중 38곳(46.3%), 나머지 44곳(53.7%)은 미달함.

〈표 3-32〉 하수도 항목 이행실태 현황

단위: %, 개, %

| 지역 구분 | 하수도 보급률 | 목표 달성 지역 | |
|-------|---------|----------|--------|
| | | 시·군 수 | 시·군 비율 |
| 군 | 75.6 | 38 / 82 | 46.3 |

〈그림 3-11〉 하수도 항목 서비스기준 충족 지역 현황



주: 전체 시·군 중 도시 지역은 제외하고 농어촌 시·군만 표시함.

2.3.4. 난방

읍 지역 도시가스 주택보급률을 68% 이상으로 한다.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엘피지(LPG) 소형저장탱크를 활용하여 가스 보급을 확대한다.

가. 점검 방법 및 결과

- (점검 방법) 농어촌 시·군 내 읍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을 집계하여 난방 항목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함.
 - ‘(읍 지역 내 도시가스 보급 가구 수 / 읍 지역 전체 가구 수) × 100’이 68% 이상이면 서비스기준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간주함.
- (점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21 전국 읍·면부 도시가스 보급률’ 자료를 확보하여 ‘주민등록세대수’, ‘가정용 수요가수’, ‘보급률’ 데이터를 집계함.
 - 인천광역시 옹진군, 충청남도 계룡시, 경상남도 거제시는 읍 지역이 없는 관계로 집계하지 않음.
 - 난방 여건이 열악한 농촌 지역의 경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마을에 LPG소형저장탱크를 공급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LPG소형저장탱크 지원사업 현황 자료협조를 받아 읍·면부 도시가스 미보급세대 수 중 소형LPG저장탱크 공급 가구 비율을 추가 제시함.
- (점검 결과) 농어촌 지역 읍부 도시가스 보급률은 70.0%로, 목표치(68%)를 상회함.
 - 도시가스 배관망 설치가 어려운 면 지역 대상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의 수혜 가구 수는 11,324세대로 미보급 세대의 0.44%에 불과하여 면 지역 난방 여건의 개선이 시급함.

나. 이행실태 세부 분석

- 시·군 내 읍이 있는 136개 지역의 읍부 주민등록세대수는 230만 호, 이 중 도시가스 보급 세대 수가 약 161만 호로, 농어촌 지역의 읍부 도시가스 보급률은 70.0%임.
 - 지역 구분에 따른 이행실태를 살펴보면, 군 지역 읍부 도시가스 보급률은 59.6%, 도농복합시 읍부 도시가스 보급률은 78.0%로, 지역별 편차가 큼.
- 분석 대상인 136개 시·군 중 목표치를 달성한 곳은 46곳(33.8%)에 불과하며, 나머지 90곳(66.2%)은 목표치에 미달함.
 - 군 지역 81곳 중 19곳(23.5%), 도농복합시 55곳 중 27곳(49.1%)이 목표치를 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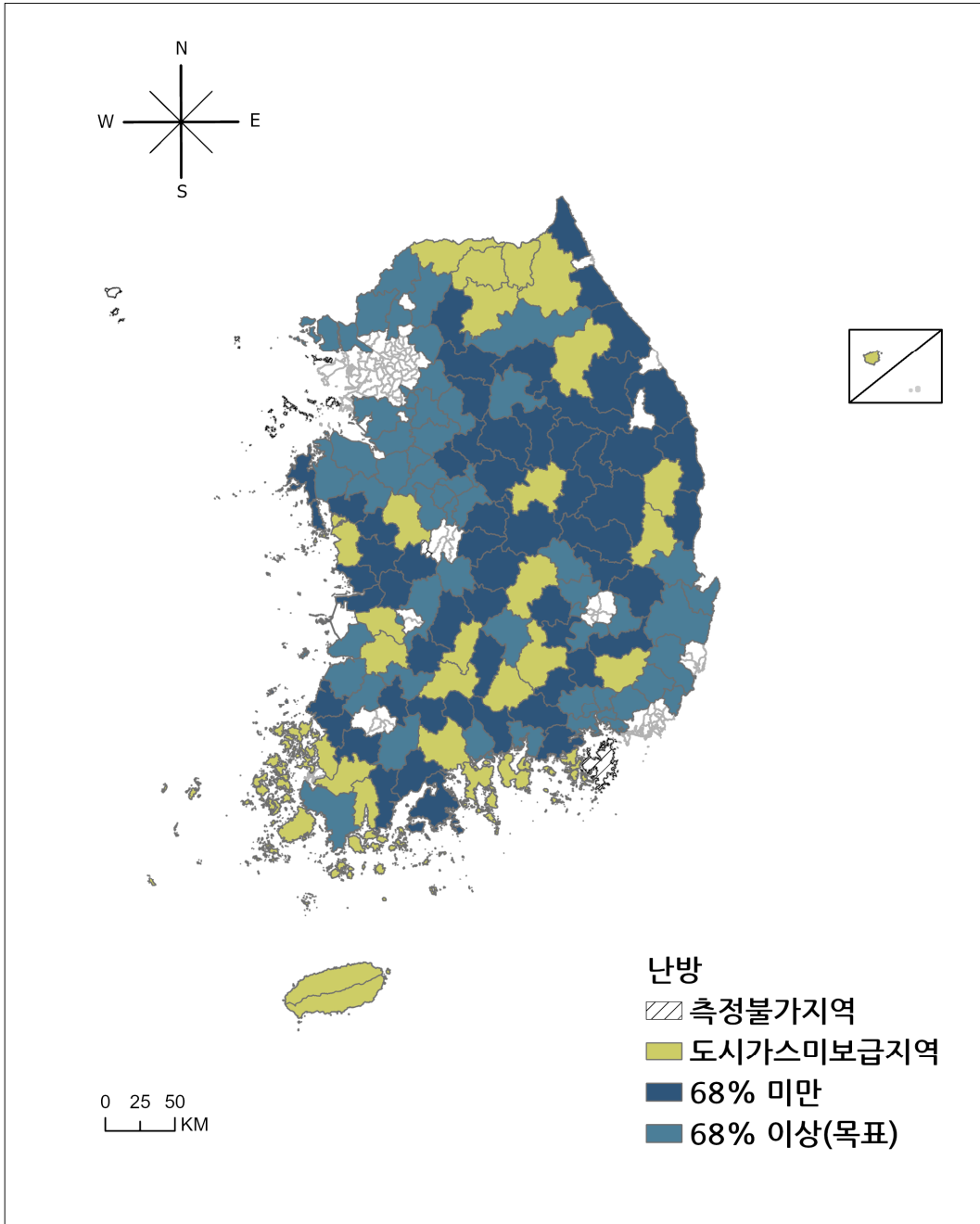
〈표 3-33〉 난방 항목 이행실태 현황

단위: %, 개, %

| 지역 구분 | 도시가스 보급률 | 목표 달성 지역 | |
|------------|----------|----------|--------|
| | | 시·군 수 | 시·군 비율 |
| 군 | 59.6 | 19 / 81 | 23.5 |
| 도농복합시 | 78.0 | 27 / 55 | 49.1 |
| 전체 농어촌 시·군 | 70.0 | 46 / 136 | 33.8 |

- 보완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2021 시·군별 LPG 소형저장탱크 지원사업 현황’ 자료를 통해 읍·면부 도시가구 미보급세대 수 중 LPG 소형저장탱크 공급 가구 비율을 제시함.
 -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가구 수 / (읍·면 지역 총 가구 수 - 읍·면 지역 도시가스 보급가구 수)} × 100’을 계산하여 값을 산출함.
- 농어촌 지역 읍·면부 도시가스 미보급 세대수는 약 257만 가구이며, 이 중 11,324가구에 LPG 소형저장탱크가 공급되어 이에 따른 LPG 소형저장탱크 공급 가구 비율은 0.44%임.

〈그림 3-12〉 난방 항목 서비스기준 충족 지역 현황



주: 전체 시·군 중 도시 지역은 제외하고 농어촌 시·군만 표시함.

2.3.5. 대중교통

행정리 내에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대중교통수단(이하 “대중교통수단” 이라 한다)을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 수요 부족으로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 어려운 지역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도입한다. 도서 지역의 경우 모든 본섬에 「선박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여객선이 1일 왕복 1회 이상 운항된다.

가. 점검 방법 및 결과

- (점검 방법) 대중교통 항목은 농어촌 지역 중 하루 3회 이상 버스 운행이 가능한 지역을 파악하여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함.
 - 이행실태 점검은 ‘(하루 버스 운행 3회 이상인 법정리 수 / 총 법정리 수) × 100’이 100%인 경우 서비스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함.
 - 2021년도부터 농어촌 시·군의 대중교통 이행실태는 해당 농어촌 지역(도농복합시 또는 군지역) 내 모든 마을(법정리)의 버스 운행 횟수가 하루 3회 이상이면 해당 농어촌 지역(도농복합시 또는 군지역)은 대중교통 서비스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함.
 - 도서지역의 여객선 운항 여부를 추가 조사하여 보완지표로 제시함.
- (점검 자료) 한국임업진흥원의 산림빅데이터거래스에 버스노선 및 버스정류장 위치 정보를 제공하였던 민간기업의 대중교통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중교통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함.
 - 민간기업¹²⁾의 교통정보 종합안내 시스템 및 지식베이스 생성 방법을 활용하여 2022년 전국 버스노선 정보와 버스정류장 정보를 구축하여 농어촌 법정리에 위치한 버스정류장별 버스 운행 횟수를 파악함.
 - 버스노선 정보는 전국 26,045개의 시내·마을·농어촌·광역버스 노선 데이터 및 각 노선이 경유하는 버스정류장 세부 정보, 배차 간격, 기·종점 정보를 포함함.

12) ㈜아로정보기술은 2022년까지 한국임업진흥원의 산림빅데이터거래스에 대중교통 데이터를 제공한 기관이었으며, 2023년부터는 데이터 제공 계약 종료로 버스노선 및 버스정류장 데이터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음.

- 버스정류장 정보는 전국 1,278,372개의 버스 정류장별 버스노선 데이터 및 버스정류장의 세부 위치, 경유 노선버스 등의 정보를 포함함.
- 버스노선이 경유하는 정류장 정보와 노선별 배차 간격, 버스정류장 위치 정보를 활용하여 버스 정류장별 경유 버스노선과 정차 횟수를 분석함.
-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농어촌 15,169개 법정리 공간 자료와 일별 운행 횟수를 적용한 버스 정류장별 위치 정보를 활용하여 대중교통 항목의 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평가함.

○ (점검 결과) 농어촌 시·군의 전체 법정리 중 1일 3회 이상 버스 이용이 가능한 법정리 비율은 89.1%로, 목표치(100%)에 미달함.

나. 이행실태 세부 분석

- 전체 농어촌 시·군의 15,169개 법정리 중 1일 3회 이상 버스 이용이 가능한 법정리는 13,523개로 이에 따른 이행실태는 89.1%임.
- 지역 구분에 따른 이행실태는 군 지역 법정리 8,764곳 중 7,671곳(87.5%), 도농복합시 법정리 6,405곳 중 5,852곳(91.4%)이 1일 3회 이상 버스를 운영함.

〈표 3-34〉 대중교통 항목 이행실태 현황(법정리)

단위: %, 개

| 지역 구분 | 1일 3회 이상 버스 이용 가능 법정리 비율 | 목표 달성 법정리 수 |
|------------|--------------------------|-----------------|
| 군 | 87.5 | 7,671 / 8,764 |
| 도농복합시 | 91.4 | 5,852 / 6,405 |
| 전체 농어촌 시·군 | 89.1 | 13,523 / 15,169 |

- 전체 139개 농어촌 시·군 중 행정구역 내 모든 마을(법정리)에서 1일 3회 이상 버스 이용이 가능한 지역은 34개(24.5%)임.
- 군 지역 82개 중 17개 지역(20.7%)에서 1일 3회 이상 버스 이용이 가능함.
 - 도농복합시 57개 중 17개 지역(29.8%)에서 1일 3회 이상 버스 이용이 가능함.

〈표 3-35〉 대중교통 항목 이행실태 현황(시·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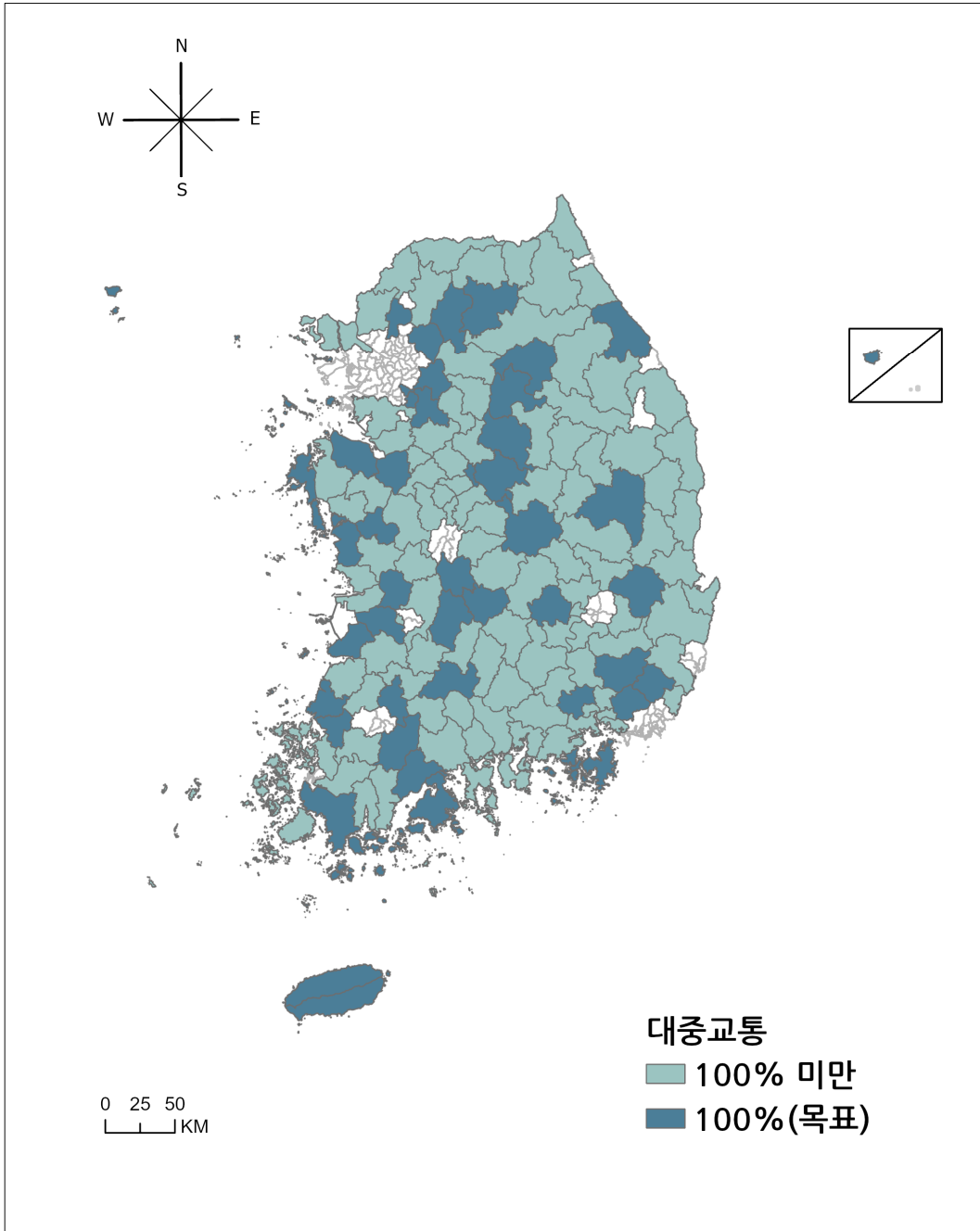
단위: %, 개

| 지역 구분 | 1일 3회 이상 버스 이용 가능 시·군 비율 | 목표 달성 시·군 수 |
|------------|--------------------------|-------------|
| 군 | 20.7 | 17 / 82 |
| 도농복합시 | 29.8 | 17 / 57 |
| 전체 농어촌 시·군 | 24.5 | 34 / 139 |

○ 해양수산부처의 협조를 받아 1일 왕복 1회 이상 여객선을 운항하는 도서 지역을 조사하여 대중교통 항목의 보완지표로 활용함.

- 행정기관이 위치한 본도가 포함되어있는 도서 지역은 총 12곳이며, 12곳 중 군 지역이 8곳, 시 지역이 4곳임.
- 인천광역시 강화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전라북도 부안군, 전라남도 여수시, 전라남도 고흥군, 전라남도 영광군, 전라남도 완도군, 전라남도 진도군, 전라남도 신안군, 경상남도 통영시, 제주도 제주시, 제주도 서귀포시 등임.
- ‘주요도서여객선이용실적’ 자료에 따른 본도의 수는 총 31개이며, 이 중 1일 왕복 1회 이상 여객선을 운항하는 곳은 31개(100%)임.

〈그림 3-13〉 대중교통 항목 서비스기준 충족 지역 현황



주: 전체 시·군 중 도시 지역은 제외하고 농어촌 시·군만 표시함.

2.3.6. 생활폐기물

행정리내에서 영농·생활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가. 점검 방법 및 결과

- (점검 방법) 영농폐기물집하장 설치 읍·면 비율과 생활폐기물 처리장 설치 행정리 비율을 시·군별로 집계하여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함.
 - 영농폐기물에 관한 이행실태는 '(영농폐기물집하장이 있는 읍·면 수 / 총 읍·면 수 × 100)'가 100%이면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판단함.
 - 생활폐기물에 관한 이행실태는 '(생활폐기물처리장이 있는 행정리 수 / 총 행정리 수 × 100)'가 100%인 경우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판단함.
- (점검 자료) 영농폐기물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 자료와 한국환경공단 공동집하장 현황 자료, 생활폐기물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 현황 자료와 지자체 행정조사를 진행하여 데이터를 수집함.
 - 영농폐기물은 2022년 기준 전국의 8,980개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주소 데이터를 활용하여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이 설치된 읍·면 수를 시·군별로 집계함.
 - 생활폐기물은 지자체 행정조사를 실시하여 마을 내 생활폐기물 처리장이 있는 행정리 수를 시·군별로 집계함.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 자료를 기반으로 농어촌 시·군별로 전체 읍·면 중 영농폐기물집하장 설치 비율과 전체 행정리 중 생활폐기물 처리장 설치 비율을 측정함.
- (점검 결과) 영농폐기물 및 생활폐기물 모두 목표치(100%)에 미달함.
 - 영농폐기물 이행실태는 76.6%, 생활폐기물 이행실태는 20.6%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함.
 - * '22 안건 기준 영농폐기물 이행실태는 76.9%이나 원자료 수정으로 인하여 이행실태를 재측정한 수치임.
 - 한국환경공단 등에 의해 폐기물처리장 설치 지원사업이 실시되고 있으나, 예산이 수요가 많은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배분되기 때문에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보임.

나. 이행실태 세부 분석

○ (영농폐기물) 139개 농어촌 지역 내 읍·면 1,412곳 중 1,081곳에 영농폐기물처리장이 설치되어 영농폐기물 이행실태는 76.6%임.

- 지역 구분에 따른 이행실태 분석 결과, 군 지역 83.0%, 도농복합시는 67.5%로 나타남.
- 군 지역은 82곳 중 40곳(48.8%)이 목표치를 달성하였으며, 도농복합시는 57곳 중 16곳(28.1%)이 목표치를 달성함.

〈표 3-36〉 생활폐기물(영농폐기물) 항목 이행실태 현황

단위: %, 개, %

| 지역 구분 | 설치율 | 목표 달성 지역 | |
|------------|------|----------|--------|
| | | 시·군 수 | 시·군 비율 |
| 군 | 83.0 | 40 / 82 | 48.8 |
| 도농복합시 | 67.5 | 16 / 57 | 28.1 |
| 전체 농어촌 시·군 | 76.6 | 56 / 139 | 40.3 |

○ (생활폐기물) 농어촌 지역 내 행정리 37,840개 중 7,802개에 생활폐기물처리장이 설치되어 이에 따른 이행실태는 20.6%임.

- 지역 구분에 따른 이행실태 분석 결과, 군 지역은 21.7%, 도농복합시는 19.3%에 불과함.
- 목표치 달성 지역은 군 지역 82곳 중 5곳(충청남도 금산군, 경상북도 고령군, 봉화군, 경상남도 고성군, 함양군)으로 6.1%, 도농복합시 또한 56곳 중 3곳(강원도 강릉시, 삼척시, 제주도)으로 5.4%에 불과하여 두 지역 모두 개선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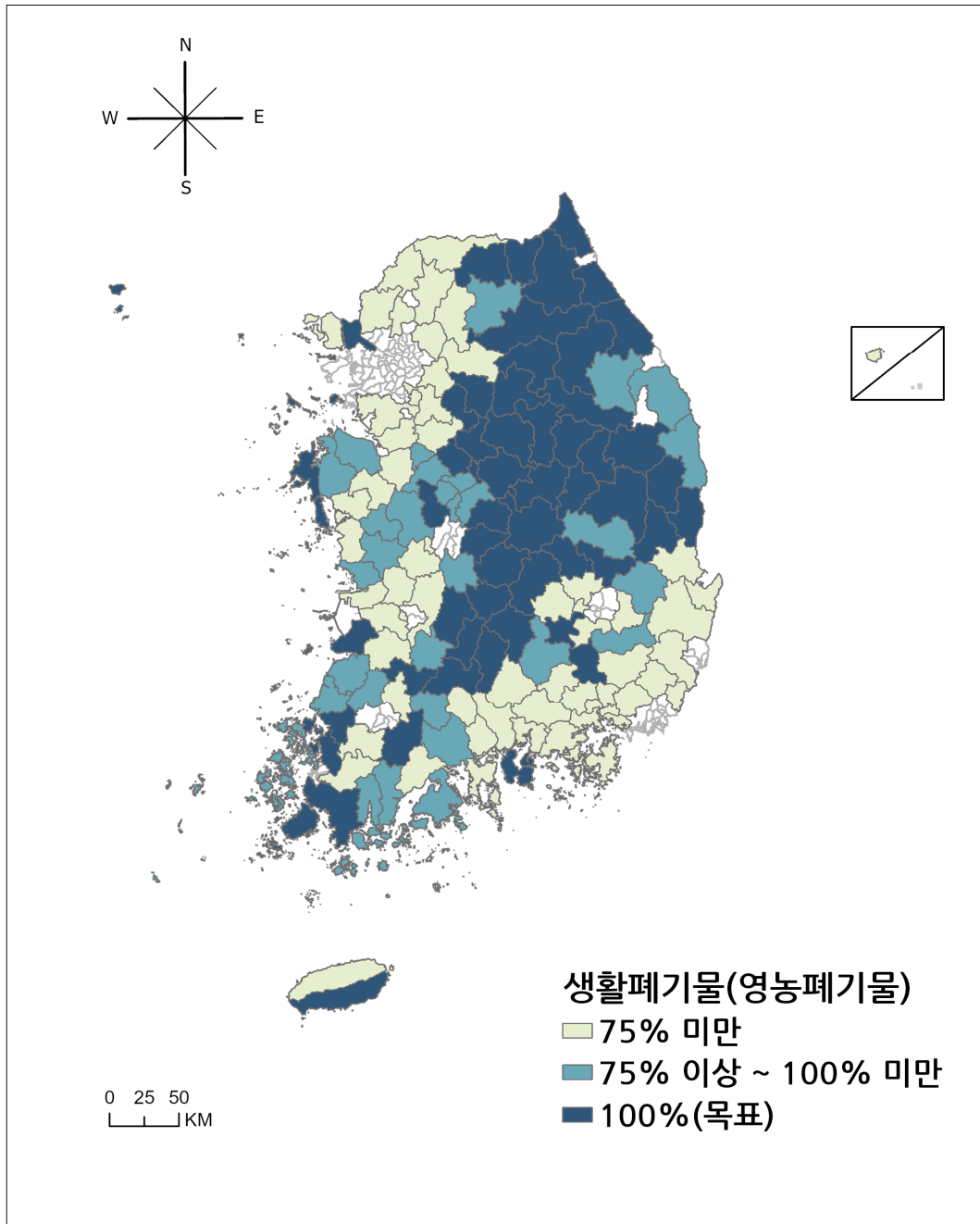
〈표 3-37〉 생활폐기물(생활폐기물) 항목 이행실태 현황

단위: %, 개, %

| 지역 구분 | 설치율 | 목표 달성 지역 | |
|------------|------|----------|--------|
| | | 시·군 수 | 시·군 비율 |
| 군 | 21.7 | 5 / 82 | 6.1 |
| 도농복합시 | 19.3 | 3 / 56 | 5.4 |
| 전체 농어촌 시·군 | 20.6 | 8 / 138 | 5.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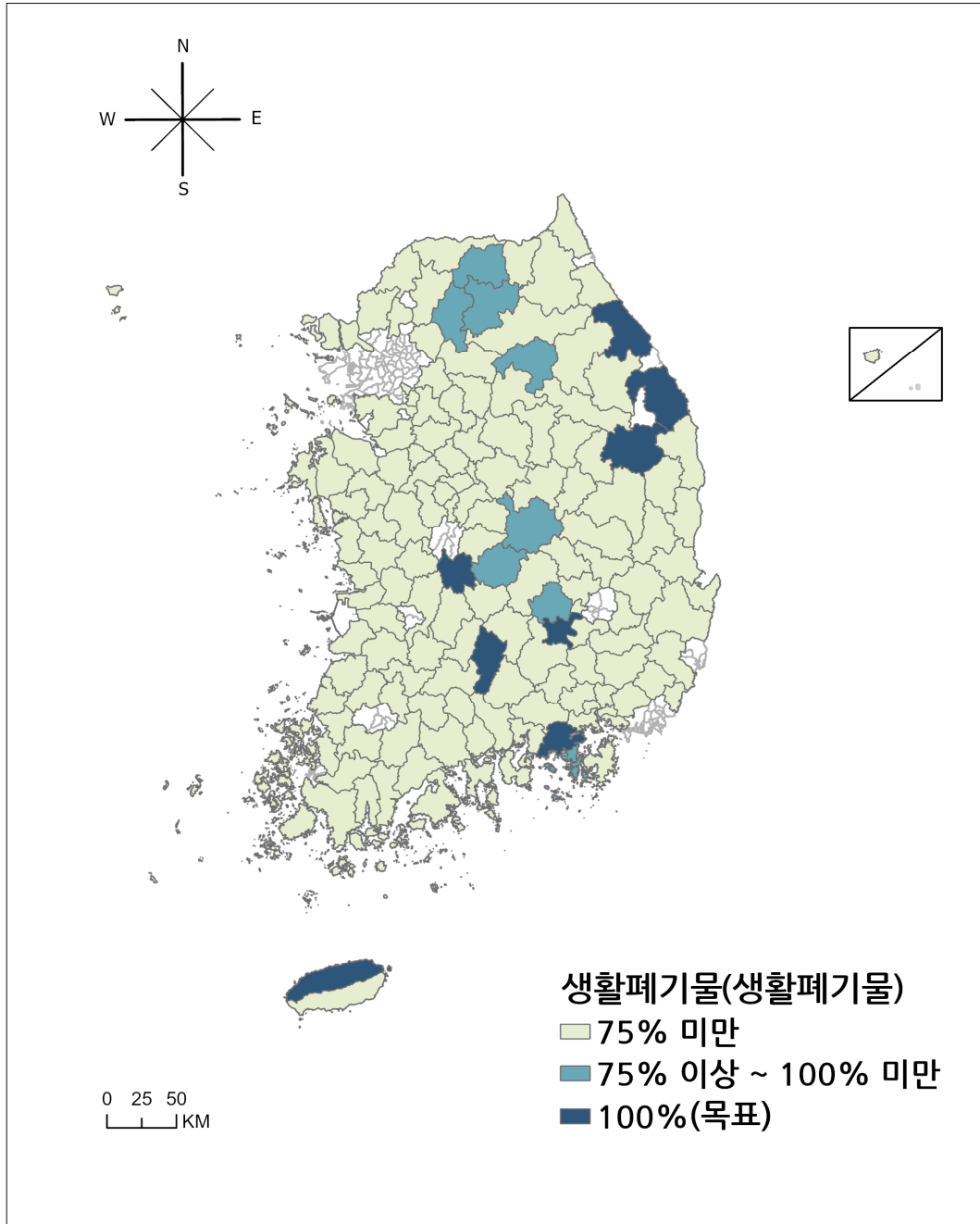
주: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통합된 수치로 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하나의 지역으로 간주해 138개 시·군으로 명시함.

〈그림 3-14〉 생활폐기물 항목(영농폐기물) 서비스기준 충족 지역 현황



주: 전체 시·군 중 도시 지역은 제외하고 농어촌 시·군만 표시함.

〈그림 3-15〉 생활폐기물 항목(생활폐기물) 서비스기준 충족 지역 현황



주: 전체 시·군 중 도시 지역은 제외하고 농어촌 시·군만 표시함.

2.3.7. 방법설비

범죄 예방을 위해 마을 주요지점과 주요 진입로의 방법용 폐쇄회로 텔레비전(「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말한다)의 설치율을 60% 이상으로 한다.

가. 점검 방법 및 결과

- (점검 방법) 시·군별 총 행정리 중 방법용 CCTV를 설치한 행정리 비율을 조사함.
 - ‘(방법용 CCTV가 설치된 행정리 수 / 총 행정리 수) × 100’이 60% 이상인 경우 목표치(60%)를 충족한 것으로 판단함.
- (점검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 자료 및 지자체 행정조사를 통해 시·군별 방법용 CCTV 설치 행정리 현황을 조사함.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 자료를 기반으로 농어촌 시·군별 행정리 중 CCTV 설치 행정리 비율을 측정함.
- (점검 결과) 139개 농어촌 시·군의 이행실태는 75.9%로 목표치(60%)를 상회함.
 - 방법설비 항목 목표치 달성 지역은 102곳(73.4%)임.

나. 이행실태 세부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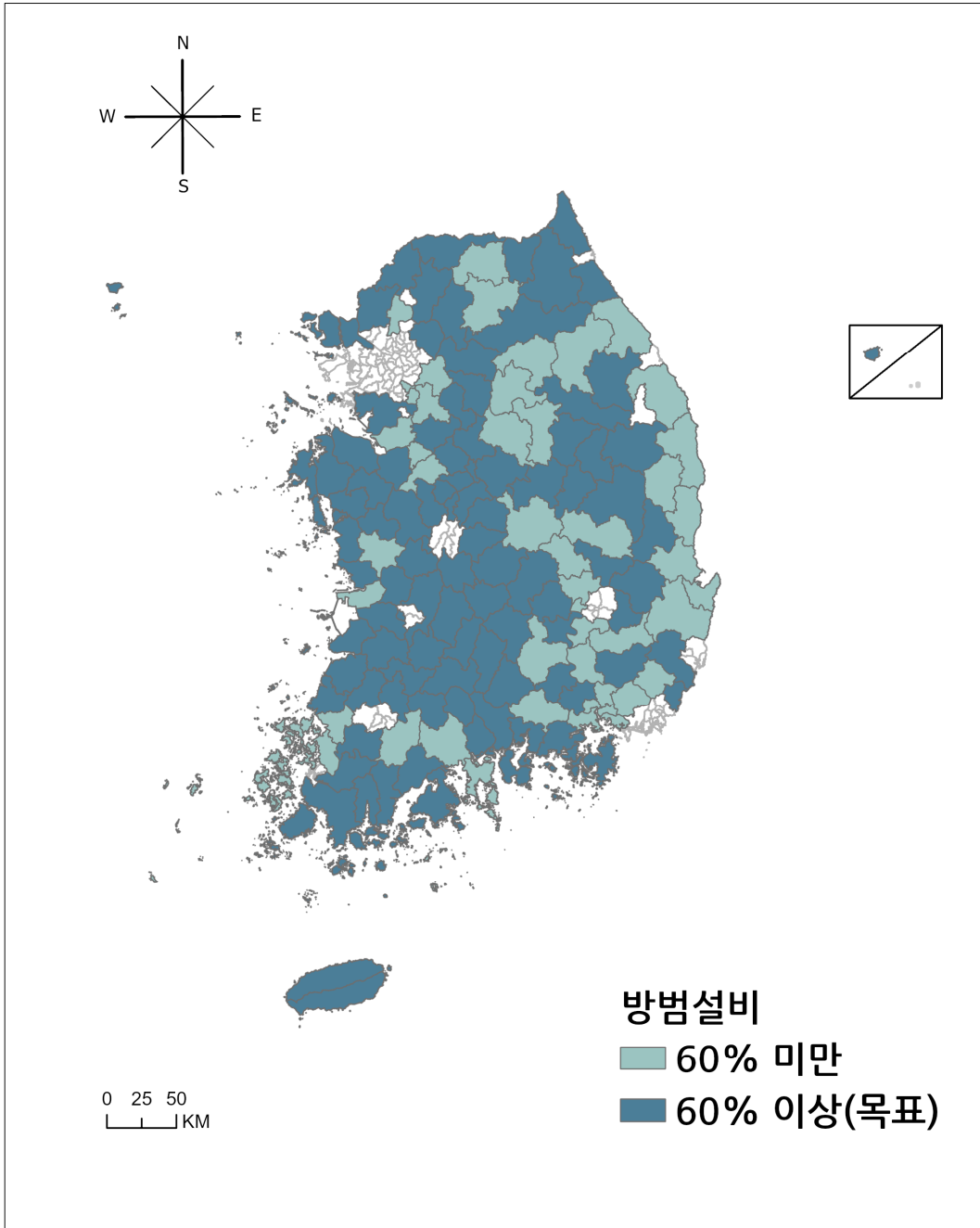
- 농어촌 지역 37,840개 행정리 중 28,723개 행정리에 방법용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행실태는 75.9%임.
 - 지역 구분에 따른 이행실태는 군 지역 80.3%, 도농복합시 70.6%로 나타남.
 - 방법설비 항목 목표치(60%) 달성 지역은 군 지역 82곳 중 67곳(81.7%), 도농복합시 57곳 중 35곳(61.4%)임.

〈표 3-38〉 방법설비 항목 이행실태 현황

단위: %, 개, %

| 지역 구분 | 방법용 CCTV 설치 행정리 비율 | 목표 달성 지역 | |
|------------|--------------------|-----------|--------|
| | | 시·군 수 | 시·군 비율 |
| 군 | 80.3 | 67 / 82 | 81.7 |
| 도농복합시 | 70.6 | 35 / 57 | 61.4 |
| 전체 농어촌 시·군 | 75.9 | 102 / 139 | 73.4 |

〈그림 3-16〉 방법설비 항목 서비스기준 충족 지역 현황



주: 전체 시·군 중 도시 지역은 제외하고 농어촌 시·군만 표시함.

2.3.8. 경찰순찰

지역주민이 요청하는 장소·시간에 대하여 탄력적인 방식의 순찰을 1일 1회 이상 실시한다.

가. 점검 방법 및 결과

- (점검 방법) 시·군별 탄력순찰 대상 지역에 대한 탄력순찰(1일 1회 이상) 이행률로 이행 실태를 점검·평가함.
 - ‘(탄력순찰 실시지역 수 / 탄력순찰 대상 지역 수) × 100’이 100%인 경우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간주함.
 - 예를 들어 수요자 A가 B지역에 대해 30일, 수요자 C가 D지역에 대해 20일간 탄력순찰을 요청하는 경우, 경찰이 B지역에 대해 20일, D지역에 대해 10일간 탄력순찰을 실시하였을 때의 이행실태는 60%(=30/50)로 계산함.
- (점검 자료) 경찰청 협조를 통해 탄력순찰 대상 지역 수 및 탄력순찰 실시지역 수, 탄력순찰 이행률 현황 자료를 확보하여 이행실태를 측정함.
 - 탄력순찰은 지역주민이 요청하는 시간·장소에 대하여 순찰하는 제도로써 2017년 9월부터 시행 중임.
 - 파출소가 아닌 경찰서 단위로 데이터가 집계되는 관계로 경찰서가 없는 5곳(인천광역시 옹진군, 강원도 양양군, 충청북도 증평군, 충청남도 계룡시, 전라남도 신안군)은 제외함.
- (점검 결과) 농어촌 지역 탄력순찰 이행률(1일 1회 이상)은 95.4%로 양호한 수준이나 서비스기준 목표치(100%)에는 미달한 것으로 나타남.
 - 경찰서 단위로 집계가 가능한 134개 농어촌 시·군 중 목표치(100%)를 달성한 지역은 27곳(20.1%)임.

나. 이행실태 세부 분석

○ 134개 농어촌 지역 내의 탄력순찰 대상지는 약 510만 곳이며, 이중 탄력순찰이 1일 1회 이상 실시된 곳은 약 486만 개로, 이에 따른 이행실태는 95.4%로 나타남.

- 탄력순찰 대상지는 '21년 5,086천 개소에서 '22년 5,095천 개소로 소폭 증가, 탄력순찰을 실시한 곳도 '21년 4,619천 개소에서 '22년 4,859천 개소로 증가해 이행실태가 꾸준히 향상됨.

- 지역 구분에 따른 이행실태는 군 지역 97.0%, 도농복합시 94.5%임.

○ 경찰서가 있는 농어촌 134곳 중 27곳(20.1%)이 목표치를 달성함.

- 목표치를 달성한 군 지역은 16곳(20.5%), 도농복합시는 11곳(19.6%)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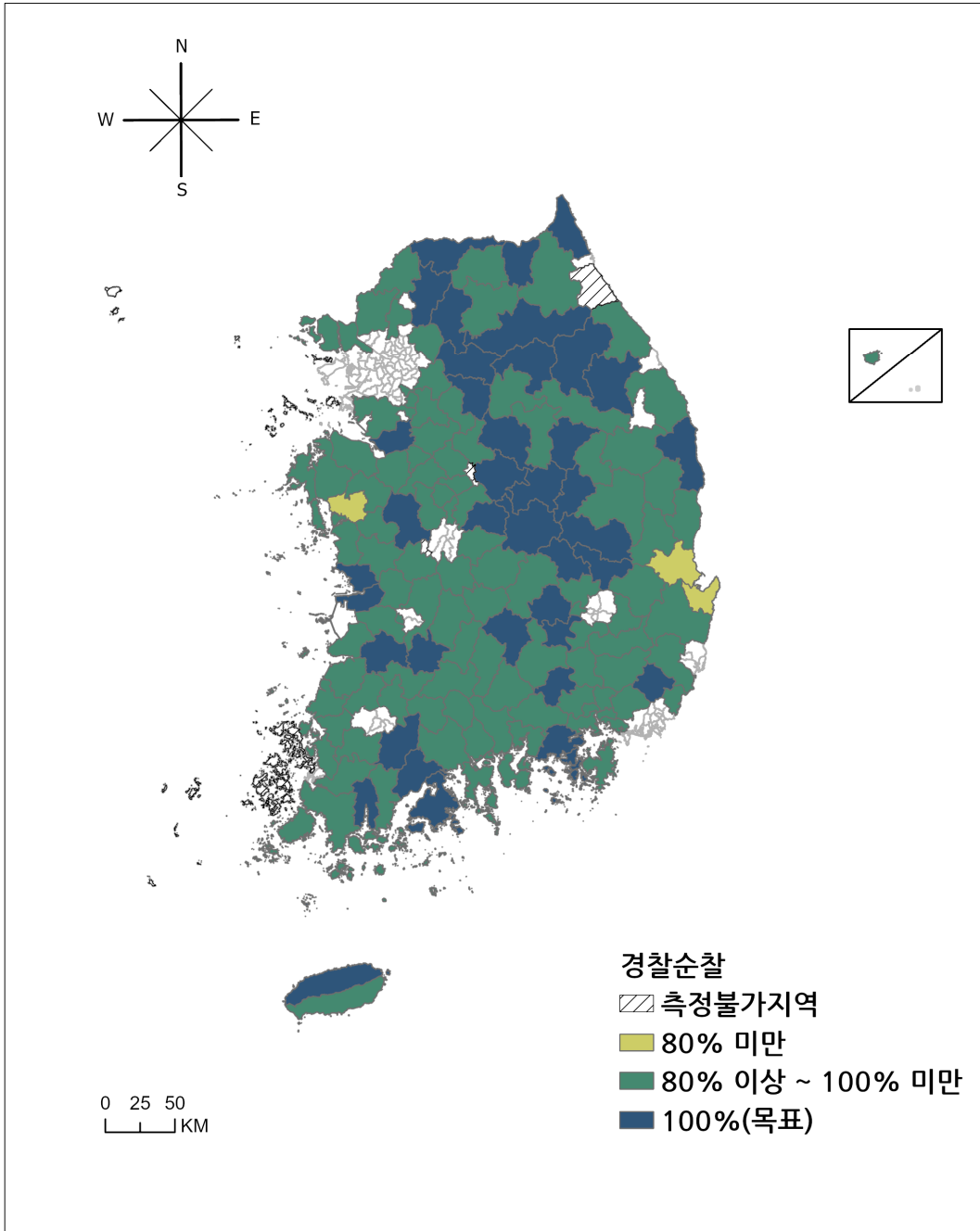
〈표 3-39〉 경찰순찰 항목 이행실태 현황

단위: %, 개, %

| 지역 구분 | 탄력순찰 이행률 | 목표 달성 지역 | |
|------------|----------|----------|--------|
| | | 시·군 수 | 시·군 비율 |
| 군 | 97.0 | 16 / 78 | 20.5 |
| 도농복합시 | 94.5 | 11 / 56 | 19.6 |
| 전체 농어촌 시·군 | 95.4 | 27 / 134 | 20.1 |

주: 경찰서 단위로 자료가 집계되는 관계로 농어촌 시·군 중 경찰서가 있는 134개 지역을 대상으로 함.

〈그림 3-17〉 경찰순찰 항목 서비스기준 충족 지역 현황



주: 전체 시·군 중 도시 지역은 제외하고 농어촌 시·군만 표시함.

2.3.9. 소방출동

화재 발생 신고 접수 후 소방차가 지역별 목표시간 내에 현장에 도착하는 비율을 70% 이상으로 한다.

가. 점검 방법 및 결과

- (점검 방법) '지역별 목표시간'을 산출하여 화재 신고 접수 후 출동 건별로 지역별 목표시간 내 도착 여부를 파악해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함.
 - '(지역별 목표시간 내 도착 건수 / 총 출동 건수) × 100'이 70% 이상이면 서비스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함.
 - 농어촌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하여 '화재 출동 5분 이내 도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고자 목표시간 7분을 기준으로 기준거리(2.5km) 초과 시 0.5km당 1분씩 목표시간을 추가하는 '지역별 목표시간'을 설정함.
- (점검 자료) 소방청에서 제공하는 행정리별 화재진압시설에서 화재발생지역 도착까지 소요된 시간과 이동 거리를 활용하여 지역별 목표시간 달성 여부를 평가함.
 - 출동 건별 차고에서 화재 현장까지의 이동 거리 자료를 기반으로 지역별 목표시간을 산출함.
 - 소방청으로부터 총 40,106건의 소방 출동 자료를 확보하여 소방 출동 주소¹³⁾와 가장 가까운 소방서(소방본서, 119안전센터, 119구조대)에서 화재발생지역까지 소요된 시간 및 거리를 측정함.
 - 지역별 목표시간을 적용하여 달성 여부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함.

¹³⁾ 소방 출동 주소는 읍·면·동 단위 정보이므로 해당 읍·면·동의 중심부를 추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거리를 측정하여 지역별 목표시간을 추정함.

○ (점검 결과) 농어촌 시·군 내 소방 출동 중 지역별 목표시간 내에 도착한 비율은 69.1%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함.

- 전체 농어촌 시·군 139곳 중 소방출동 목표치 서비스기준을 달성한 지역은 98곳(70.5%)임.

나. 이행실태 세부 분석

○ 전체 농어촌 시·군의 2022년 총 소방출동 건수는 총 23,442건이며, 총 소방출동 건수 중 지역별 목표시간 내 도착 소방출동 건수는 16,193건으로, 이행실태는 69.1%임.

- 지역 구분에 따른 이행실태 분석 결과, 군 지역의 지역별 목표시간 내 도착 비율은 79.0%, 도농복합시는 63.1%로 나타남.

○ 전체 농어촌 시·군 중 서비스기준 목표치 70%를 달성한 지역은 98곳(70.5%)으로, 나머지 41곳(29.5%)은 기준을 달성하지 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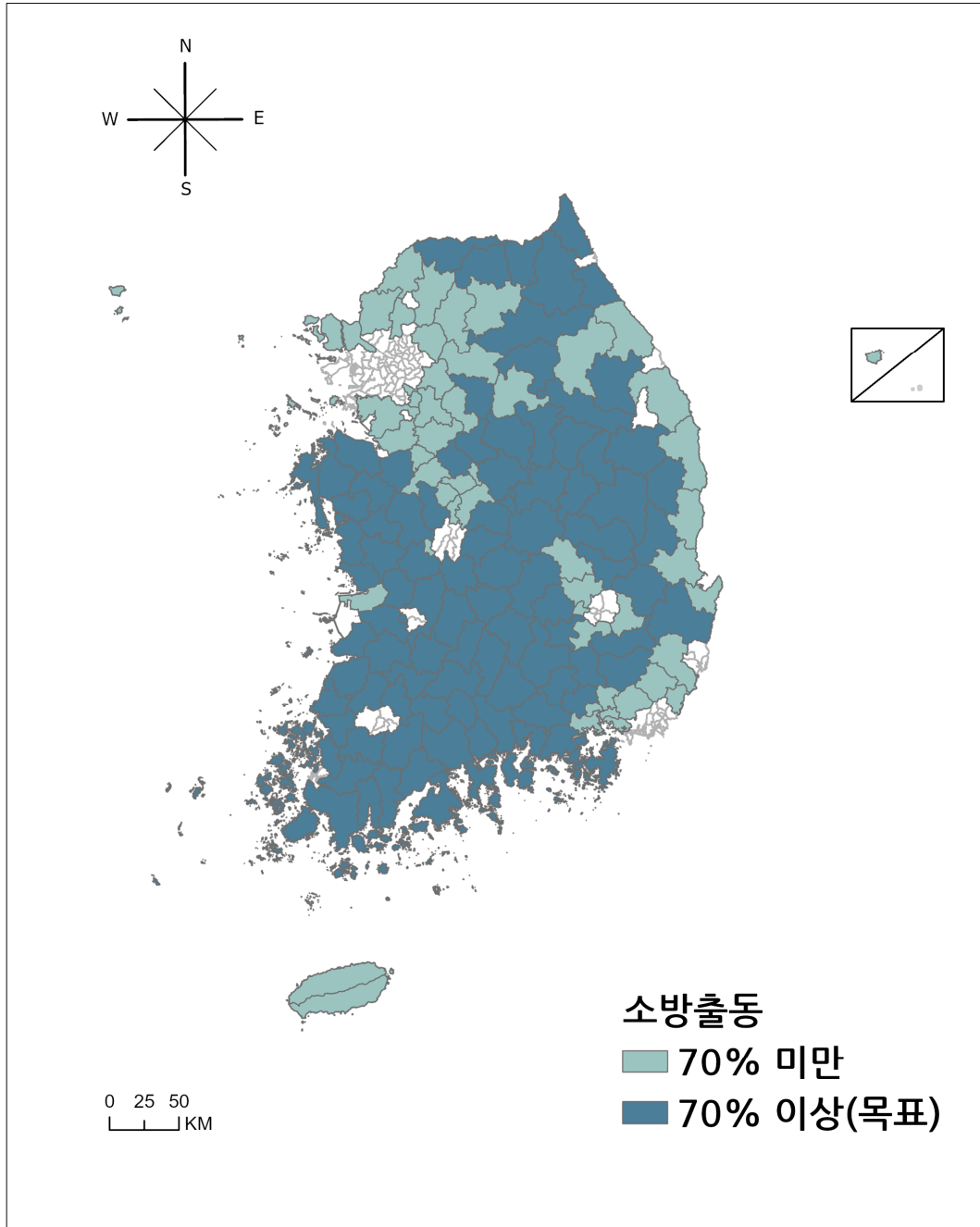
- 군 지역 82개 중 68개(82.9%), 도농복합시 57개 중 30개(52.6%) 지역이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표 3-40〉 소방출동 항목 이행실태 현황

단위: %, 개, %

| 지역 구분 | 지역별 목표시간 내 도착 비율 | 목표 달성 지역 | |
|------------|------------------|----------|--------|
| | | 시·군 수 | 시·군 비율 |
| 군 | 79.0 | 68 / 82 | 82.9 |
| 도농복합시 | 63.1 | 30 / 57 | 52.6 |
| 전체 농어촌 시·군 | 69.1 | 98 / 139 | 70.5 |

〈그림 3-18〉 소방출동 항목 서비스기준 충족 지역 현황



주: 전체 시·군 중 도시 지역은 제외하고 농어촌 시·군만 표시함.

2.4. 경제활동 부문

2.4.1. 창업·취업 컨설팅 교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창업·취업 관련 지원센터에서 사업체 창업·취업에 관한 전문적인 컨설팅 또는 교육서비스를 1년 1회 이상 받을 수 있는 비율을 86% 이상으로 한다.

가. 점검 방법 및 결과

- (점검 방법) 창업 및 사업체 운영, 취업 관련 전문프로그램 운영 횟수를 파악하여 농어촌 시·군별로 집계함.
 - ‘시·군 내 창업 및 사업체 운영, 취업 관련 전문프로그램 연간 운영 횟수’가 1회 이상이면 서비스기준을 달성한 것으로 간주함.
- (점검 자료) 지자체 행정조사를 통해 ‘창업 및 사업체 운영, 취업 관련 전문프로그램 연간 운영 횟수’ 데이터를 수집함.
 - 이외 ‘창업보육지원센터 등 창업 및 사업체 운영을 위한 지원센터 유무’, ‘일자리센터 등 취업 상담을 위한 지원센터 유무’, ‘창업 및 취업 상담을 위한 전문 인력(전담 인력) 수’ 등을 조사함.
- (점검 결과) 연간 1회 이상 창업 및 사업체 운영, 취업 관련 전문프로그램 운영 시·군은 77.5%로, 목표치(86%)에 미달함.
 - 올해 추가적으로 실시한 온라인 활용 비대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농어촌 시·군은 38곳(27.5%)으로 나타남.

나. 이행실태 세부 분석

○ 농어촌 지역 138개 중 107개(77.5%) 시·군에서 연간 1회 이상 창업 및 사업체 운영, 취업 관련 전문프로그램을 운영함.

- 목표치 달성 지역은 군 지역 82곳 중 56곳(68.3%), 도농복합시 56곳 중 51곳(91.1%)임.

- 온라인 활용 비대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군 지역은 82곳 중 16곳(20.7%), 도농복합시는 56곳 중 21곳(37.5%)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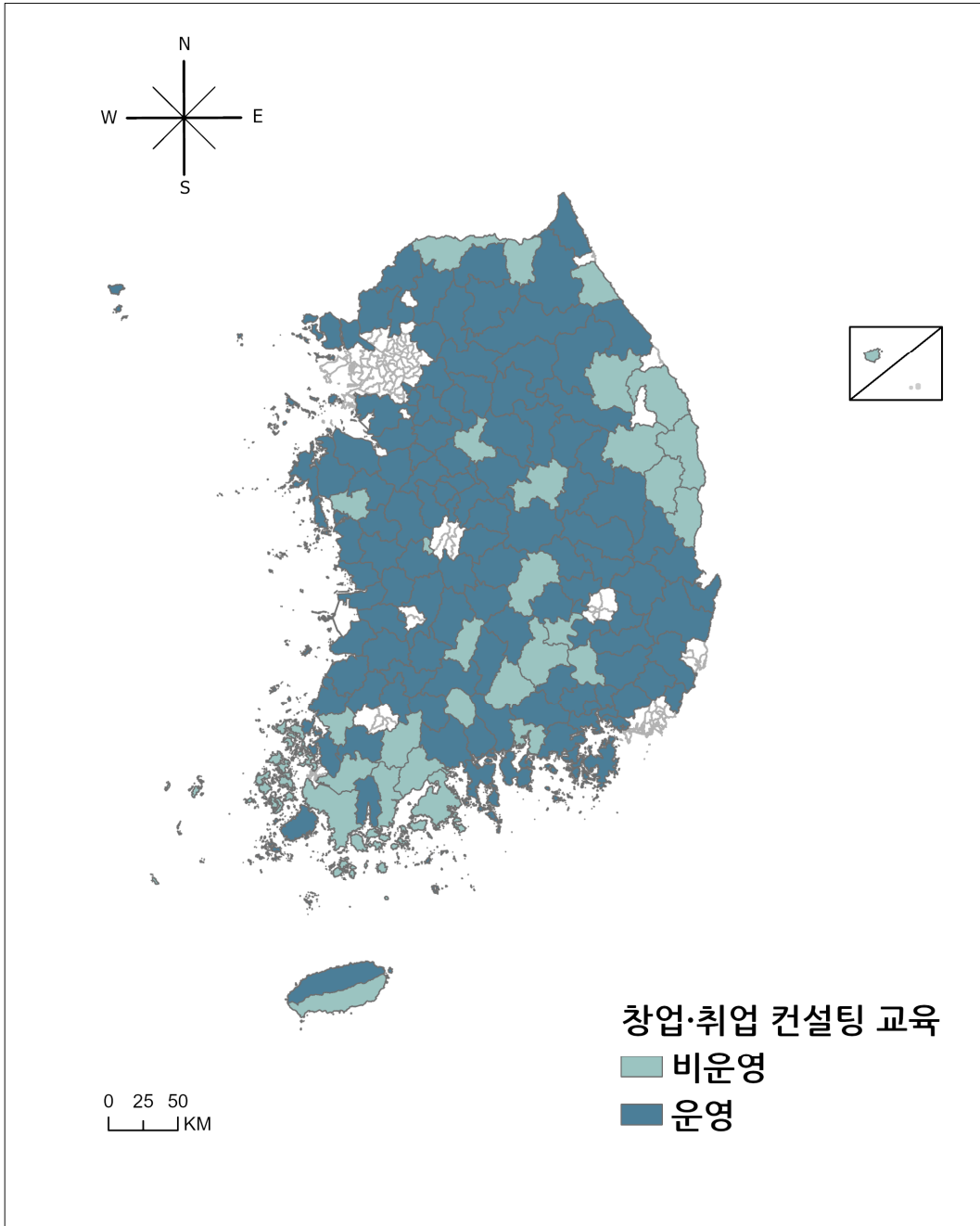
〈표 3-41〉 창업·취업 컨설팅 교육 항목 이행실태 현황

단위: 개, %

| 지역 구분 | 목표 달성 지역 | |
|------------|-----------|--------|
| | 시·군 수 | 시·군 비율 |
| 군 | 56 / 82 | 68.3 |
| 도농복합시 | 51 / 56 | 91.1 |
| 전체 농어촌 시·군 | 107 / 138 | 77.5 |

주: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통합된 수치로 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하나의 지역으로 간주해 138개 시·군으로 명시함.

〈그림 3-19〉 창업·취업 컨설팅 교육 항목 서비스기준 충족 지역 현황



주: 전체 시·군 중 도시 지역은 제외하고 농어촌 시·군만 표시함.

4

농어촌서비스기준 개선을 위한 고려사항 및 향후 계획

1. 농어촌서비스기준 개선을 위한 고려사항

○ 주민의 일상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원활하게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과의 관계된다는 점에서 서비스 접근성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에 농어촌서비스기준에서도 19개 중 7개 항목*에서 접근성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이용 여건을 파악하고 있음.

* 진료, 응급의료, 영유아 보육·교육, 초·중등교육, 문화, 도서관, 체육시설

○ 현행 농어촌서비스기준에서는 자차를 이용한 평균 소요시간을 기준으로 접근성을 측정하고 있고 대중교통을 기준으로 한 접근성 정보는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그러나 자차 기준 접근성은 자차 소유나 자차 이동(운전)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되므로 고령층, 청소년, 차량 미소유자 등 자차 이용이 어려운 계층이 농촌에서 경험하는 서비스 접근성 실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함.

- 대중교통 인프라 여건이 양호하지 않은 농촌에서는 대중교통 이용에 제약이 크기 때문에 자차 이용이 어려운 계층의 실질적 접근성은 상당히 취약할 수 있음.
- 결과적으로 자차 기준 서비스 접근성만으로는 교통 취약 계층의 이동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게 됨.

- 따라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서비스 접근성을 측정하여 농촌 지역주민의 실제적 서비스 접근성 실태를 파악하고, 이러한 정보를 대중교통 여건 개선을 통해 주민의 이동권을 지원하는 정책 추진의 근거로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대중교통 기준 서비스 접근성 측정을 위해서는 주민 거주지로부터 서비스 시설까지 실제 소요되는 대중교통 접근성(거리, 시간) 측정이 가능하도록 대중교통 노선, 대중교통 정류장 위치, 대중교통량 등 정보 데이터가 필요함. 현재로서는 민간기업에서 구축한 데이터를 구매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에 대해 지속가능한 데이터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한편 비대면 방식의 서비스 여건이 발전되면서 원격 진료나 e-러닝을 통한 각종 교육·학습 참여, 온라인 문화·예술 콘텐츠 향유 등 온라인 서비스 접근성의 의미가 점차 커지고 있음. 농어촌 지역은 상대적으로 넓은 면적의 행정구역에 인구밀도가 낮은 공간 특성으로 인해 서비스 시설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이 불가피하게 도시보다 낮을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비물리적 방식의 온라인 서비스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
- 온라인 서비스가 일상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대체할 수 없으며 특정 영역의 서비스나 고차서비스 이용, 사람들과의 대면 교류 등을 위해서는 여전히 직접적 대면 방식이 불가결함에도 불구하고, 농촌 주민의 서비스 이용 여건 향상을 위한 보완적 방편으로서 온라인 서비스 이용 여건 개선·확대를 검토할 수 있음.
- 이러한 점에서 농어촌서비스기준에서도 현행과 같이 서비스 시설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 외에 비대면 서비스 영역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반영하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누리는 서비스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이 경우도 이행 실태 측정을 위해 필요한 적합한 데이터 확보가 선결되어야 가능함.
- 마지막으로, 각 항목의 이행실태 점검에 요구되는 신뢰성을 갖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은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기초가 됨. 그러나 일부 항목의 경우에는 시·군 단위의 대표성 있는 자료 구득이 불가능하거나 자료 보유 기관의 협조가 원활하

지 않은 등의 이유로 점검을 위한 데이터 구축에 한계가 있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데이터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주택 항목에서 최저주거기준에 적합한 주택이나 슬레이트 주택 지붕의 철거·개량 비율 자료, 대중교통 항목에서 대중교통 운행 관련 자료 등은 이행실태 점검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2. 향후 계획

○ ‘농어업인삶의질법’ 및 동법 시행령¹⁴⁾에 근거한 농어촌 영향평가 제도 운영 지침에 따라 중앙정부나 광역지자체가 시행하는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 관련 정책·사업¹⁵⁾ 중 위원회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정책·사업, 그 외에 위원회에서 농어촌 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계획·정책·사업 등을 대상으로 농어촌 영향평가를 수행함.

- 지침에 근거한 영향평가 대상 과제(안)를 일차적 후보로 하되 시행계획의 점검·평가 결과, 대상 현안의 심각성 및 시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제를 선정하고, 농어촌 영향평가 관점에서 대상 계획·정책·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정책 개선방안 등을 도출함.

○ 농어촌 영향평가 수행 결과가 해당 중앙정부, 지자체에 환류되고 관련 계획·정책·사업에 대한 개선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2023년도의 경우 전년도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농어촌 주민의 난방·에너지 비용 경감, 도서 지역 해상교통환경 개선 등 두 개 과제가 위원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선정되어 농어촌 영향평가가 수행될 예정임.

- 관련하여 2021년에는 초·중등 교육, 대중교통 항목과 관련하여 농어촌 통학 여건 개선, 농촌형·도시형 교통모델 개선, 2022년에는 진료 항목과 영유아 보육·교육 항목

14) ‘농어업인삶의질법’ 제45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15)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0-85호의 [별표 1] 농어촌 서비스기준 관련 농어촌 영향평가 대상 과제(안)

과 관련하여 분만의료 도·농 간 격차 해소, 농어촌 영유아 돌봄 시설 확대를 주제로 농어촌영향평가를 수행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

○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제5차 삶의질기본계획(2025~2029) 수립 시기를 앞두고 향후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개편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이루어질 현행 제도 검토를 바탕으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제5차 삶의질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 세부 내용’ 고시¹⁶⁾ 제3조(재검토 기한)에 따라 현행 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 세부 내용에 대해 '24년 6월 30일까지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조치를 해야 하는 점도 감안해야 함.

○ 개편 방안 모색에 있어 ① 서비스기준 항목(점검 항목의 적절성, 데이터 구득가능성 등), ② 서비스기준 설정 방식(평균 소요시간, 평균 도달거리, 특정 수준의 서비스 이용권 내 거주인구 비율 등), ③ 서비스기준 목표 수준(현행 목표치 상향, 달성 항목 제외 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변화하는 사회·정책 여건을 반영하여 ‘제5차 기본계획’에서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의 운영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보다 근본적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음.

○ 중앙정부 사업의 지방이양 확대, 지자체 권한과 책임 강화 등 지방분권 기초, 농촌협약 등 관련 정책·사업과의 연계 가능성,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농어촌 삶의 질 지표, 지방시대위원회의 국가균형발전지표 등 관련 지표와의 관계 설정 내지 연계 필요성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면서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의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 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¹⁶⁾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1-43호

부록 1

2022년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행정조사표(시·군 대상)

※ 주의 사항 : 별도의 표기가 없을 경우 '가장 최근의' 조사 자료를 토대로 수치 형태로 작성 요망, 시·군별 1개 파일로 작성 후 시·도에서 압축해서 제출

| 부문 | 항목 | 서비스기준 내용 | 조사 항목 | 응답란 | 응답자 | 조사 기준일 | 응답 예시 |
|-----------------|----------|--|--|----------|-------------------------|-------------------------|-------------------------|
| 보건 의료· 복지 | 진료 | 차량을 이용하여 30분~1시간 이내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가능하다. | 시·군내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여부 | 운영 / 미운영 | ()실·과 성명 : Tel : | 년 월 | 운영 |
| | 노인 복지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방문요양·돌봄 등의 서비스 및 같은 법 제38조의1항 각 호에 따른 재가 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비율을 80% 이상으로 한다. | 시·군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혜자 현황 | ()명 | ()실·과 성명 : Tel : | 년 월 | ()개소 분만 가능 (403)명 |
| 교육· 문화 | 평생 교육 | 면내에서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또는 같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설치·지정된 평생학습센터에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을 70% 이상으로 한다. | 시·군내 비형식 기관에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읍·면의 수 | ()개 읍·면 | ()실·과 성명 : Tel : | 년 월 | (10)개 읍면 |
| | | | ※ 평생교육이란,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 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독교육, 직업능력 향상 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함(평생교육법) ※ 비형식 평생교육시설이란, 주민자치센터, 학교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인문기관부설, 평생학습센터 등 비형식 기관과 관련됨. | ()명 | ()개 읍·면 | ()실·과 성명 : Tel : | 년 월 |
| | | | 시·군내 온라인 등 비대면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읍·면의 수 | ()개 읍·면 | ()실·과 성명 : Tel : | 년 월 | (10)개 읍면 |

| 부문 | 항목 | 서비스기준 내용 | 조사 항목 | 응답 란 | 응답자 | 조사 기준일 | 응답 예시 |
|----------|-----------|---|--|--|-------------------------|--------|--|
| 정주 여건 | 생활 폐기물 | 행정리내에서 영농·생활 폐기물을 수 집하여 처리할 수 있다. | 1. 시·군내 마을 내 생활 폐기물 집하장 및 처리장 이 있는 마을(행정리) 수 2. 시·군내 마을 내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및 처 리장 있는 마을(행정리) 수 ※ 점검 대상 생활 폐기물 집하장 및 처리장: 마을 내 비가림시설 및 재활용품, 음식물쓰러기기 수거 용기등을 갖춘 거점수거시설 | 1. 생활 폐기물 집하장 및 처리장 ()개 행정리 ()개 행정리 2. 영농폐기물 공동집 하장 및 처리장 ()개 행정리 | ()실·과 성명 : Tel : | 년 월 | 1. 생활 폐기물 집하장 및 처리장 (225)개 행정리- 2. 영농폐기물 공동집 하장 및 처리장 (10)개 행정리- |
| | 대중 교통 | 행정리 내에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대중교통수단(이하 “대중교통수단”이라 한다)을 3회 이 상 이용할 수 있다. 수요 부족으로 대 중교통수단의 운행이 어려운 지역에 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 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차 동차운송사업을 도입한다. 도시지역 의 경우 모든 본선에 「선박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여객선이 1일 왕복 1회 이상 운항된다. | 시·군별 대중교통취약지역 대상 마을 수 및 준공 공교통 프로그램 사업 수혜 마을 수 ※ 대상 마을: 농촌형(농식품부)·도시형(국토부) 교통모델 사업 수혜 마을, 지자체 자체 운영· 순환버스, 콜택시 수혜 마을 ※ 대상 마을 판단 기준 - 버스형(노선운행): 사업을 통해 운행하는 버 스가 정차하는 정류장 1km이내의 마을 - 택시형 및 수요응답형: 택시 및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을 호출할 수 있는 마을 | 1. 국비지원사업 ① 대중교통취약지역 대상 전체 마을 수 ()개 ② 버스형 운행 마을 수 ()개 ③ 택시형 운행 마을 수 ()개 ④ 버스형+택시형 운행 마을(중복하여 운 행하는 경우) ()개 ⑤ 대중교통취약지역 중 사업미운영 마을 수 ()개 ※ ①=②+③+⑤ | ()실·과 성명 : Tel : | 년 월 | 1. 국비지원사업 ① 대중교통취약지역 대상 전체 마을 수 (12)개 ② 버스형 운행 마을 수 (5)개 ③ 택시형 운행 마을 수 (3)개 ④ 버스형+택시형 운행 마을 수(중복하여 운 행하는 경우) (1)개 ⑤ 대중교통취약지역 중 사업 미운영 마을 수 (4)개 ※ ①=②+③+⑤ (12=5+3+4) 2. 시·군 자체사업 (프로그램 명칭) 1) 행복택시 2) 100원택시 |

| 부문 | 항목 | 서비스기준 내용 | 조사 항목 | 응답 란 | 응답자 | 조사 기준일 | 응답 예시 |
|----------|-------------------|--|---|------------------------|-------------------------|--------|--------------------------------|
| | 방범 설비 | 범죄예방을 위해 마을 주요지점과 주요 진입로의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말한다)의 설치율을 60% 이상으로 한다. | 시·군내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는 마을 (행정리) 수 (동지역 제외) 시·군 내 전체 방범용 CCTV 개수 (동지역 제외) | ()개 행정리 총 ()개 | ()실·과 성명 : Tel : | 년 월 | (225)개 행정리 총 (320)개 |
| 경제 활동 | 창업 및 취업 컨설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창업·취업 관련 지원센터에서 사업체 창업·취업에 관한 전문적인 컨설팅 또는 교육서비스를 1년 1회 이상 받을 수 있는 비율을 86% 이상으로 한다. | 시·군내 창업보육지원센터 등 창업 및 사업체 운영을 위한 지원센터 유무 | 유 / 무 | | | 무 |
| | | | 시·군내 일자리센터 등 취업상담을 위한 지원센터 유무 | 유 / 무 | | | 유 |
| | | | 시·군내 창업 및 사업체 운영, 취업 상담을 위한 전문인력(직업인력) 고용 여부 | 여 / 부 () 명 | ()실·과 성명 : Tel : | 년 월 | 여 (2) 명 |
| | | | 시·군내 창업, 사업체 운영, 취업 관련 대면 프로그램 운영 횟수(연간) | 연 ()회 | | | 연 (7)회 |
| | | 시·군내 창업, 사업체 운영, 취업 관련 온라인 활용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 횟수(연간) | 연 ()회 | | | | 연 (7)회 |

부록 2

2022년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부처 간 협조자료 요청 목록

* 모든 자료는 별도의 표기가 없을 경우 '가장 최근의' 현황을 조사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부문 | 관련항목 | 농어촌서비스기준 | 세부기준 | 통계 | 구축 기관 |
|----------|-----------|--|----------------------|---|---------------------------------|
| 보건·의료 복지 | 응급의료 | 응급환자 발생 시 기본적인 응급장비가 마련되고 전문인력이 동승한 구급차가 30분 이내 도착하여 응급처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신고 접수 후 30분내 응급현장 도착 | 소방서(시·군)별 119 구급대 응급출동 소요시간 현황자료 | 소방청 (119구급과) |
| | 영유아 보육·교육 | 차량을 이용하여 20분 이내로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 및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국공립·민간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할 수 있다. | 국공립·민간 어린이집 | 국공립·민간 어린이집 주소 현황 자료 |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
| 교육 문화 | 체육 | 차량을 이용하여 30분 이내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공공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 체육진흥관리공단: 공공체육시설(경기장, 체육관, 수영장) 및 생활체육시설(체육도장, 체력단련장, 간이운동장) 주소 현황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국민체육진흥공단 |

| 부문 | 관련항목 | 농어촌서비스기준 | 세부기준 | 통계 | 구축기관 |
|----------|------|--|--|--|-------------------------|
| 정주 여건 | 주택 | 주민 누구나 「추거분법」제17조에 따라 국도교통부장관이 공고한 최저추거기준에 적합한 주택에서 거주한다. 슬레이트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를 말한다)가 사용된 주택 지붕의 철거·개량 비율을 23% 이상으로 한다. | 2014년 슬레이트 소재 주택 수 대비 농어촌에서 철거한 슬레이트 소재 주택 수 비율 23% 이상 | 환경부·농어촌 시·군별 슬레이트 철거 실적 - 주택 철거·처리 분야 14년 슬레이트 주택 물량 대비 22년까지의 주택 철거처리 물량 비율 | 환경부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
| | 난방 | 읍지역 도시가스 주택보급률을 68% 이상으로 한다.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엘피지(LPG) 소형저장탱크를 활용하여 가스 보급을 확대한다. | 읍지역 도시가스 보급률 68% 이상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은 LPG소형저장탱크 등 난방비 저감정책 추진 | 시·군별 읍·면부 도시가스보급률 시·군별 LPG소형저장탱크 지원사업 현황 (도시가스 미보급 가구 중 설치 가구 수) |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
| | 대중교통 | 행정리 내에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기목에 해당하는 대중교통수단(이하 "대중교통 수단"이라 한다)을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 수도 부속으로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 어려운 지역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도입한다. 도시지역의 경우 모든 본선에 「신박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여객선이 1일 왕복 1회 이상 운항된다. | 모든 도시지역과 본도에 1일 1회 이상 왕복선 운행 | 도시지역(시·군)별 본도(읍·면)현황 및 여객선 운항현황 |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
| | 방범설비 | 범죄 예방을 위해 마을 주요지점과 주요 진입로의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말한다)의 설치율을 60% 이상으로 한다. | 양식장 등의 어산을 도난 방지를 위한 CCTV 설치 | 시·군별 포구/항만 현황 및 방범용 CCTV 설치 현황 |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 |
| | 경찰순찰 | 지역주민이 요청하는 장소·시간에 대하여 탄력적인 방식의 순찰을 1일 1회 이상 실시한다. | 탄력순찰 실시 여부 | 시·군별 탄력순찰 대상 장소 선정 현황 시·군별 탄력순찰 실시 현황 |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
| | 소방출동 | 화재 발생 신고 접수 후 소방차가 지역별 목표시간 내에 현장에 도착하는 비율을 70% 이상으로 한다. | 신고 접수 후 화재현장에 목표시간 내 도착 비율을 70% 이상으로 함 | 소방서(시·군)별 화재 출동 현황 자료 1. 출동거리와 소요 시간 2. 소방 출동 주소 자료(화재 발생 장소의 주소 및 출동한 소방서·119인원센터·119지역대·구조대의 주소정보) | 소방청 (119구급과장) |

부 록 3

2022년 시·군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결과

□ 보건의료·복지 및 교육·문화 부문

| 구분 | 1. 보건의료·복지 | | | | 2. 교육·문화 | | | | |
|--------------|------------|-------------|-----------------|-------------|---------------|-------------|-----------|------------|-------------|
| | 진료 (분) | 응급의료 (분) | 영유아보육·교육 (분) | 노인복지 (%) | 초·중등교육 (분) | 평생교육 (%) | 문화 (분) | 도서관 (분) | 체육시설 (분) |
| 시·도명 | 30분~1시간 | 30분 | 20분 | 80% | 10분 | 70% | 40분 | 10분 | 30분 |
| 농어촌서비스기준 목표치 | | | | | | | | | |
| 부산광역시 | 6.7 | 12.5 | 4.9 | 19.2 | 5.5 | 0.0 | 17.3 | 3.5 | 9.1 |
| 대구광역시 | 10.4 | 11.7 | 6.2 | 19.0 | 5.8 | 100.0 | 15.1 | 7.8 | 12.3 |
| 인천광역시 | 22.8 | 12.6 | 10.1 | 16.0 | 7.2 | 84.6 | 23.5 | 7.6 | 16.4 |
| 인천광역시 | 46.7 | - | 6.1 | 22.3 | 6.5 | 100.0 | 71.4 | 21.2 | 32.7 |
| 울산광역시 | 13.5 | 9.8 | 8.1 | 20.2 | 7.5 | 100.0 | 24.4 | 9.8 | 14.4 |
| 세종특별자치시 | 13.1 | 14.2 | 6.6 | 16.0 | 5.9 | 100.0 | 20.3 | 7.2 | 9.9 |
| 경기도 | 7.8 | 13.6 | 3.9 | 15.8 | 5.2 | 100.0 | 11.3 | 5.0 | 8.9 |
| 경기도 | 8.1 | 13.4 | 3.8 | 14.3 | 4.3 | 100.0 | 20.9 | 4.7 | 8.3 |
| 경기도 | 10.7 | 14.0 | 4.3 | 7.0 | 4.7 | 100.0 | 17.4 | 4.7 | 12.3 |
| 경기도 | 11.0 | 12.6 | 4.6 | 15.0 | 4.9 | 15.4 | 15.0 | 5.5 | 10.4 |
| 경기도 | 13.0 | 13.3 | 4.7 | 15.1 | 6.0 | 100.0 | 24.2 | 5.9 | 8.3 |
| 경기도 | 14.4 | 13.0 | 6.4 | 17.4 | 6.9 | 100.0 | 18.1 | 8.1 | 14.3 |
| 경기도 | 9.0 | 12.6 | 4.8 | 11.9 | 4.4 | 100.0 | 17.4 | 4.9 | 8.4 |
| 경기도 | 10.2 | 13.9 | 5.3 | 16.4 | 5.5 | 100.0 | 16.1 | 6.4 | 12.0 |
| 경기도 | 11.1 | 14.4 | 4.9 | 10.3 | 6.4 | 57.1 | 17.5 | 5.7 | 13.2 |
| 경기도 | 9.6 | 13.0 | 3.7 | 17.2 | 5.0 | 100.0 | 12.4 | 5.0 | 6.7 |

| 구분 | | 1. 보건의료·복지 | | | | | 2. 교육·문화 | | | | |
|--------------|------|------------|-------------|-----------------|-------------|---------------|-------------|-----------|------------|-------------|--|
| 시·도명 | 시·군명 | 진료 (분) | 응급의료 (분) | 영유아보육·교육 (분) | 노인복지 (%) | 초·중등교육 (분) | 평생교육 (%) | 문화 (분) | 도서관 (분) | 체육시설 (분) | |
| 농어촌서비스기준 목표치 | | 30분~1시간 | 30분 | 20분 | 80% | 10분 | 70% | 40분 | 10분 | 30분 | |
| 경기도 | 포천시 | 14.4 | 12.0 | 5.9 | 17.2 | 6.7 | 100.0 | 23.0 | 6.7 | 8.4 | |
| 경기도 | 여주시 | 17.0 | 14.3 | 7.0 | 17.5 | 6.5 | 100.0 | 19.5 | 7.6 | 14.1 | |
| 경기도 | 연천군 | 29.6 | 11.8 | 7.2 | 19.8 | 6.7 | 70.0 | 22.9 | 6.6 | 6.9 | |
| 경기도 | 기평군 | 27.1 | 14.2 | 9.3 | 16.1 | 9.1 | 100.0 | 31.5 | 13.3 | 18.2 | |
| 경기도 | 양평군 | 22.4 | 14.9 | 7.5 | 15.9 | 8.2 | 100.0 | 29.0 | 8.0 | 10.6 | |
| 강원도 | 춘천시 | 18.1 | 12.5 | 9.6 | 16.8 | 7.8 | 30.0 | 18.5 | 12.1 | 17.9 | |
| 강원도 | 원주시 | 15.7 | 11.3 | 10.0 | 19.0 | 7.2 | 100.0 | 23.0 | 7.7 | 16.2 | |
| 강원도 | 강릉시 | 15.7 | 10.9 | 10.1 | 20.0 | 8.4 | 75.0 | 21.3 | 11.6 | 19.4 | |
| 강원도 | 삼척시 | 32.3 | 11.7 | 11.0 | 24.1 | 9.2 | 87.5 | 34.3 | 16.0 | 28.2 | |
| 강원도 | 홍천군 | 34.0 | 16.5 | 16.5 | 16.0 | 10.0 | 60.0 | 41.4 | 19.0 | 23.8 | |
| 강원도 | 횡성군 | 35.4 | 13.5 | 16.6 | 20.4 | 8.7 | 100.0 | 33.2 | 9.1 | 17.4 | |
| 강원도 | 영월군 | 28.7 | 13.2 | 18.9 | 25.5 | 9.7 | 100.0 | 30.4 | 18.5 | 15.6 | |
| 강원도 | 평창군 | 56.5 | 14.0 | 10.7 | 16.9 | 9.0 | 100.0 | 48.9 | 9.7 | 26.7 | |
| 강원도 | 정선군 | 41.0 | 13.0 | 18.5 | 20.5 | 9.9 | 100.0 | 36.7 | 12.8 | 18.7 | |
| 강원도 | 철원군 | 18.2 | 13.0 | 7.4 | 19.8 | 8.0 | 54.5 | 16.7 | 10.0 | 9.7 | |
| 강원도 | 화천군 | 36.8 | 15.1 | 8.1 | 19.7 | 7.9 | 100.0 | 27.6 | 23.4 | 16.4 | |
| 강원도 | 양구군 | 18.0 | 13.2 | 11.1 | 22.7 | 7.4 | 100.0 | 19.1 | 8.3 | 16.2 | |
| 강원도 | 인제군 | 44.4 | 15.7 | 13.4 | 20.2 | 11.6 | 100.0 | 40.5 | 11.0 | 13.8 | |
| 강원도 | 고성군 | 29.2 | 11.4 | 7.5 | 19.8 | 7.3 | 83.3 | 14.5 | 7.2 | 16.2 | |
| 강원도 | 양양군 | 20.7 | 15.4 | 11.7 | 22.6 | 9.0 | 83.3 | 20.3 | 15.0 | 19.9 | |
| 충청북도 | 충주시 | 22.0 | 11.4 | 9.7 | 15.3 | 8.0 | 23.1 | 25.2 | 10.8 | 21.4 | |
| 충청북도 | 제천시 | 27.2 | 11.9 | 13.9 | 22.3 | 8.1 | 100.0 | 27.6 | 11.2 | 25.1 | |
| 충청북도 | 청주시 | 12.8 | 12.9 | 7.7 | 17.7 | 6.2 | 76.9 | 17.9 | 6.4 | 11.9 | |
| 충청북도 | 보은군 | 19.8 | 13.4 | 12.3 | 28.2 | 9.3 | 100.0 | 20.4 | 10.6 | 20.5 | |
| 충청북도 | 옥천군 | 21.8 | 12.2 | 10.6 | 26.5 | 8.5 | 88.9 | 22.5 | 9.0 | 22.7 | |
| 충청북도 | 영동군 | 30.8 | 12.0 | 13.1 | 24.5 | 10.3 | 100.0 | 25.1 | 12.6 | 25.2 | |

| 구분 | | 1. 보건의료·복지 | | | | | 2. 교육·문화 | | | | |
|--------------|------|------------|-------------|-----------------|-------------|---------------|-------------|-----------|------------|-------------|--|
| 시·도명 | 시·군명 | 진료 (분) | 응급의료 (분) | 영유아보육·교육 (분) | 노인복지 (%) | 초·중등교육 (분) | 평생교육 (%) | 문화 (분) | 도서관 (분) | 체육시설 (분) | |
| 농어촌서비스기준 목표치 | | 30분~1시간 | 30분 | 20분 | 80% | 10분 | 70% | 40분 | 10분 | 30분 | |
| 충청북도 | 진천군 | 12.1 | 11.3 | 7.1 | 25.4 | 8.0 | 100.0 | 16.8 | 6.9 | 13.1 | |
| 충청북도 | 괴산군 | 26.6 | 15.1 | 12.4 | 20.7 | 9.0 | 100.0 | 22.3 | 9.7 | 17.5 | |
| 충청북도 | 음성군 | 12.7 | 12.0 | 6.3 | 22.8 | 6.6 | 100.0 | 26.6 | 6.5 | 10.6 | |
| 충청북도 | 단양군 | 36.5 | 13.7 | 13.9 | 21.1 | 11.1 | 100.0 | 28.2 | 22.8 | 24.0 | |
| 충청북도 | 증평군 | 7.5 | 10.1 | 4.5 | 25.0 | 5.3 | 100.0 | 7.0 | 5.5 | 7.2 | |
| 충청남도 | 천안시 | 12.6 | 11.7 | 5.3 | 8.1 | 6.2 | 100.0 | 13.5 | 5.6 | 11.4 | |
| 충청남도 | 공주시 | 24.1 | 11.2 | 10.1 | 17.5 | 8.8 | 100.0 | 25.4 | 9.5 | 23.1 | |
| 충청남도 | 보령시 | 19.8 | 10.5 | 10.2 | 15.8 | 7.3 | 100.0 | 24.2 | 7.9 | 21.3 | |
| 충청남도 | 아산시 | 12.9 | 11.3 | 5.5 | 11.4 | 5.5 | 18.2 | 17.6 | 5.6 | 13.8 | |
| 충청남도 | 서산시 | 16.8 | 11.5 | 8.6 | 13.7 | 6.4 | 100.0 | 23.3 | 7.6 | 22.8 | |
| 충청남도 | 논산시 | 16.4 | 11.9 | 7.0 | 13.7 | 6.1 | 100.0 | 19.2 | 8.0 | 16.7 | |
| 충청남도 | 계룡시 | 5.2 | 9.3 | 2.8 | 12.3 | 3.7 | 100.0 | 6.9 | 3.5 | 7.0 | |
| 충청남도 | 당진시 | 15.3 | 11.9 | 6.2 | 10.4 | 6.7 | 100.0 | 23.1 | 7.5 | 11.5 | |
| 충청남도 | 금산군 | 16.5 | 13.1 | 8.3 | 18.3 | 7.7 | 100.0 | 18.8 | 8.4 | 8.7 | |
| 충청남도 | 부여군 | 21.5 | 10.0 | 10.7 | 21.9 | 6.7 | 100.0 | 23.9 | 9.3 | 16.8 | |
| 충청남도 | 서천군 | 17.5 | 11.9 | 10.7 | 19.1 | 6.8 | 100.0 | 19.0 | 6.5 | 13.6 | |
| 충청남도 | 청양군 | 23.9 | 13.2 | 8.3 | 18.5 | 8.2 | 100.0 | 18.8 | 7.9 | 16.9 | |
| 충청남도 | 홍성군 | 15.9 | 3.2 | 8.9 | 15.6 | 6.6 | 100.0 | 17.7 | 12.1 | 19.5 | |
| 충청남도 | 예산군 | 17.5 | 12.0 | 9.4 | 24.7 | 6.2 | 100.0 | 17.3 | 7.8 | 15.2 | |
| 충청남도 | 태안군 | 36.8 | 15.2 | 11.6 | 10.1 | 7.4 | 100.0 | 33.1 | 16.4 | 19.8 | |
| 전라북도 | 군산시 | 13.1 | 14.1 | 6.8 | 15.2 | 4.8 | 81.8 | 18.0 | 6.3 | 14.2 | |
| 전라북도 | 익산시 | 11.8 | 14.4 | 6.0 | 14.4 | 5.0 | 100.0 | 19.7 | 7.1 | 8.8 | |
| 전라북도 | 정읍시 | 18.1 | 13.5 | 9.6 | 18.1 | 6.0 | 20.0 | 22.0 | 9.9 | 13.5 | |
| 전라북도 | 남원시 | 18.8 | 17.6 | 8.7 | 23.3 | 6.3 | 100.0 | 20.8 | 7.3 | 16.4 | |
| 전라북도 | 김제시 | 16.2 | 18.0 | 8.5 | 20.2 | 6.4 | 100.0 | 18.1 | 8.4 | 14.8 | |
| 전라북도 | 완주군 | 18.7 | 18.2 | 7.6 | 19.0 | 6.8 | 92.3 | 18.7 | 8.6 | 17.6 | |

| 구분 | | 1. 보건의료·복지 | | | | 2. 교육·문화 | | | | |
|------|---------------------|----------------|-------------|-----------------|-------------|---------------|-------------|------------|------------|-------------|
| 시·도명 | 시·군명 | 진료 (분) | 응급의료 (분) | 영유아보육·교육 (분) | 노인복지 (%) | 초·중등교육 (분) | 평생교육 (%) | 문화 (분) | 도서관 (분) | 체육시설 (분) |
| | 농어촌서비스기준 목표치 | 30분~1시간 | 30분 | 20분 | 80% | 10분 | 70% | 40분 | 10분 | 30분 |
| 전라북도 | 진안군 | 24.3 | 19.7 | 12.9 | 15.9 | 8.6 | 100.0 | 25.0 | 9.1 | 13.0 |
| 전라북도 | 무주군 | 35.6 | - | 10.1 | 25.7 | 8.5 | 100.0 | 31.8 | 14.2 | 17.7 |
| 전라북도 | 장수군 | 28.7 | 18.5 | 11.9 | 17.8 | 7.5 | 28.6 | 23.9 | 10.0 | 10.4 |
| 전라북도 | 임실군 | 27.9 | - | 18.6 | 27.0 | 7.0 | 100.0 | 24.9 | 10.3 | 20.5 |
| 전라북도 | 순창군 | 23.3 | 21.8 | 7.1 | 20.7 | 7.2 | 100.0 | 20.8 | 7.1 | 11.2 |
| 전라북도 | 고창군 | 22.4 | 17.1 | 10.7 | 24.4 | 5.8 | 85.7 | 24.4 | 8.9 | 8.8 |
| 전라북도 | 부안군 | 22.3 | 16.2 | 8.5 | 19.6 | 5.6 | 100.0 | 22.5 | 7.5 | 20.0 |
| 전라남도 | 여수시 | 17.4 | 12.1 | 9.4 | 13.8 | 5.8 | 57.1 | 26.9 | 9.0 | 20.6 |
| 전라남도 | 순천시 | 20.7 | 13.3 | 9.8 | 14.8 | 7.4 | 0.0 | 26.7 | 7.4 | 14.4 |
| 전라남도 | 나주시 | 16.3 | 13.3 | 7.7 | 20.5 | 5.9 | 61.5 | 20.8 | 7.1 | 13.5 |
| 전라남도 | 광양시 | 18.0 | 13.1 | 7.5 | 16.9 | 7.0 | 100.0 | 18.0 | 9.8 | 13.8 |
| 전라남도 | 담양군 | 16.2 | 15.2 | 9.1 | 19.4 | 7.3 | 83.3 | 16.7 | 8.7 | 16.7 |
| 전라남도 | 곡성군 | 22.0 | - | 10.6 | 30.3 | 9.4 | 100.0 | 26.2 | 7.0 | 22.9 |
| 전라남도 | 구례군 | 25.7 | - | 10.3 | 31.8 | 6.6 | 87.5 | 45.7 | 15.9 | 17.2 |
| 전라남도 | 고흥군 | 25.9 | 17.3 | 12.8 | 31.7 | 7.6 | 6.3 | 33.8 | 16.9 | 21.9 |
| 전라남도 | 보성군 | 29.2 | 15.9 | 11.5 | 30.7 | 8.0 | 33.3 | 27.1 | 16.6 | 19.1 |
| 전라남도 | 화순군 | 22.0 | 15.6 | 12.9 | 30.0 | 7.3 | 84.6 | 27.8 | 15.1 | 25.0 |
| 전라남도 | 장흥군 | 28.0 | 13.0 | 14.3 | 36.0 | 7.3 | 40.0 | 28.4 | 22.0 | 25.0 |
| 전라남도 | 강진군 | 20.2 | 14.8 | 11.1 | 38.3 | 6.4 | 18.2 | 20.8 | 13.7 | 18.4 |
| 전라남도 | 해남군 | 28.0 | 19.8 | 11.7 | 27.6 | 8.7 | 100.0 | 30.9 | 20.8 | 26.2 |
| 전라남도 | 영암군 | 24.3 | 14.0 | 8.7 | 34.4 | 5.8 | 18.2 | 20.3 | 6.8 | 15.4 |
| 전라남도 | 무안군 | 18.3 | 13.0 | 11.0 | 26.3 | 6.6 | 100.0 | 22.0 | 7.8 | 16.9 |
| 전라남도 | 함평군 | 19.4 | 15.1 | 10.6 | 36.0 | 7.3 | 100.0 | 20.8 | 8.8 | 21.2 |
| 전라남도 | 영광군 | 17.0 | 12.6 | 8.0 | 37.6 | 7.3 | 81.8 | 19.7 | 14.0 | 16.1 |
| 전라남도 | 장성군 | 21.3 | 15.5 | 11.0 | 29.1 | 7.3 | 9.1 | 18.8 | 10.2 | 16.2 |
| 전라남도 | 원도군 | 26.5 | 22.3 | 8.4 | 30.5 | 6.6 | 100.0 | 27.7 | 13.5 | 16.1 |

| 구분 | | 1. 보건의료·복지 | | | | | 2. 교육·문화 | | | | |
|--------------|------|------------|-------------|-----------------|-------------|---------------|-------------|-----------|------------|-------------|--|
| | | 진료 (분) | 응급의료 (분) | 영유아보육·교육 (분) | 노인복지 (%) | 초·중등교육 (분) | 평생교육 (%) | 문화 (분) | 도서관 (분) | 체육시설 (분) | |
| 시·도명 | 시·군명 | 30분~1시간 | 30분 | 20분 | 80% | 10분 | 70% | 40분 | 10분 | 30분 | |
| 농어촌서비스기준 목표치 | | | | | | | | | | | |
| 전라남도 | 진도군 | 38.7 | 19.5 | 12.5 | 37.1 | 7.9 | 100.0 | 20.1 | 11.1 | 19.8 | |
| 전라남도 | 신안군 | 35.5 | 22.6 | 11.8 | 23.8 | 8.3 | 100.0 | 52.1 | 25.6 | 32.5 | |
| 경상북도 | 포항시 | 20.6 | 11.0 | 9.1 | 12.6 | 6.4 | 100.0 | 29.5 | 7.9 | 18.9 | |
| 경상북도 | 경주시 | 22.0 | 11.8 | 8.3 | 29.0 | 8.7 | 100.0 | 27.3 | 10.7 | 17.8 | |
| 경상북도 | 김천시 | 22.5 | 15.4 | 10.2 | 22.2 | 9.9 | 86.7 | 24.5 | 18.7 | 24.1 | |
| 경상북도 | 안동시 | 24.1 | 14.0 | 10.2 | 22.9 | 11.1 | 100.0 | 28.7 | 13.7 | 26.2 | |
| 경상북도 | 구미시 | 11.6 | 11.2 | 6.2 | 20.4 | 5.7 | 75.0 | 16.7 | 8.7 | 13.0 | |
| 경상북도 | 영주시 | 15.6 | 12.6 | 8.1 | 21.3 | 8.1 | 0.0 | 19.2 | 12.3 | 15.0 | |
| 경상북도 | 영천시 | 22.1 | 13.6 | 9.9 | 24.4 | 9.1 | 100.0 | 24.3 | 14.2 | 20.8 | |
| 경상북도 | 상주시 | 24.8 | 13.2 | 9.9 | 26.1 | 7.9 | 72.2 | 27.1 | 13.1 | 26.4 | |
| 경상북도 | 문경시 | 30.4 | 11.7 | 9.6 | 26.9 | 8.3 | 100.0 | 30.9 | 11.4 | 22.9 | |
| 경상북도 | 경산시 | 10.7 | 12.7 | 5.8 | 18.8 | 5.9 | 100.0 | 18.6 | 6.8 | 12.8 | |
| 경상북도 | 군위군 | 29.5 | - | 11.9 | 24.4 | 10.6 | 100.0 | 30.1 | 21.5 | 19.7 | |
| 경상북도 | 의성군 | 21.2 | 13.8 | 11.4 | 26.6 | 9.7 | 100.0 | 30.5 | 12.7 | 20.3 | |
| 경상북도 | 청송군 | 62.0 | 15.9 | 13.6 | 27.4 | 9.6 | 100.0 | 61.6 | 15.5 | 30.5 | |
| 경상북도 | 영양군 | 46.5 | - | 13.2 | 25.1 | 12.7 | 66.7 | 26.4 | 15.8 | 24.1 | |
| 경상북도 | 영덕군 | 21.2 | 17.8 | 12.0 | 28.1 | 10.1 | 11.1 | 19.2 | 15.2 | 17.7 | |
| 경상북도 | 청도군 | 23.5 | 16.0 | 9.7 | 29.4 | 9.1 | 100.0 | 25.3 | 13.3 | 17.4 | |
| 경상북도 | 고령군 | 14.9 | 14.5 | 8.6 | 23.9 | 7.5 | 100.0 | 17.3 | 10.7 | 14.1 | |
| 경상북도 | 상주군 | 22.2 | 13.7 | 9.0 | 21.5 | 7.5 | 100.0 | 18.7 | 14.5 | 17.1 | |
| 경상북도 | 칠곡군 | 12.5 | 13.5 | 6.9 | 19.9 | 6.9 | 100.0 | 16.6 | 7.9 | 16.8 | |
| 경상북도 | 예천군 | 19.6 | 12.4 | 8.7 | 24.0 | 8.2 | 25.0 | 21.5 | 10.8 | 19.3 | |
| 경상북도 | 봉화군 | 40.5 | 28.7 | 11.1 | 22.4 | 9.4 | 70.0 | 33.5 | 16.9 | 20.5 | |
| 경상북도 | 울진군 | 28.6 | 12.4 | 8.9 | 31.1 | 8.5 | 100.0 | 20.9 | 10.1 | 28.0 | |
| 경상북도 | 울릉군 | - | - | 16.4 | 19.9 | 14.0 | 100.0 | 25.3 | 28.2 | 18.1 | |

| 구분 | | 1. 보건의료·복지 | | | | 2. 교육·문화 | | | | |
|------|--------------|------------|-------------|-----------------|-------------|---------------|-------------|-----------|------------|-------------|
| 시·도명 | 시·군명 | 진료 (분) | 응급의료 (분) | 영유아보육·교육 (분) | 노인복지 (%) | 초·중등교육 (분) | 평생교육 (%) | 문화 (분) | 도서관 (분) | 체육시설 (분) |
| | 농어촌서비스기준 목표치 | 30분~1시간 | 30분 | 20분 | 80% | 10분 | 70% | 40분 | 10분 | 30분 |
| 경상남도 | 창원시 | 9.5 | 9.2 | 4.3 | 8.2 | 5.0 | 100.0 | 21.8 | 7.0 | 10.8 |
| 경상남도 | 진주시 | 17.7 | 10.9 | 7.4 | 20.5 | 7.3 | 100.0 | 23.5 | 10.2 | 15.8 |
| 경상남도 | 통영시 | 12.8 | 15.9 | 6.7 | 18.6 | 5.6 | 100.0 | 16.4 | 5.8 | 11.0 |
| 경상남도 | 사천시 | 17.9 | 12.6 | 7.8 | 24.9 | 6.9 | 75.0 | 26.2 | 7.6 | 16.0 |
| 경상남도 | 김해시 | 9.5 | 11.1 | 5.6 | 14.8 | 5.8 | 100.0 | 17.8 | 5.2 | 10.0 |
| 경상남도 | 밀양시 | 19.4 | 13.0 | 11.6 | 22.6 | 7.9 | 100.0 | 25.0 | 8.8 | 22.3 |
| 경상남도 | 거제시 | 17.4 | 12.0 | 7.0 | 21.1 | 5.8 | 100.0 | 30.9 | 9.2 | 12.3 |
| 경상남도 | 양산시 | 11.7 | 11.0 | 6.0 | 14.1 | 5.7 | 80.0 | 20.6 | 6.4 | 14.5 |
| 경상남도 | 의령군 | 28.8 | 14.8 | 10.3 | 27.3 | 10.2 | 100.0 | 24.9 | 12.4 | 16.8 |
| 경상남도 | 함안군 | 13.9 | 14.5 | 6.4 | 28.1 | 6.4 | 60.0 | 18.2 | 9.4 | 10.6 |
| 경상남도 | 창녕군 | 19.0 | 14.5 | 8.9 | 26.6 | 8.2 | 100.0 | 21.5 | 9.4 | 14.0 |
| 경상남도 | 고성군 | 23.0 | 14.7 | 9.4 | 35.3 | 7.8 | 100.0 | 21.7 | 10.9 | 16.1 |
| 경상남도 | 남해군 | 22.2 | 15.7 | 11.2 | 35.5 | 8.1 | 100.0 | 23.1 | 12.1 | 20.4 |
| 경상남도 | 하동군 | 42.7 | 14.9 | 10.5 | 30.0 | 8.5 | 7.7 | 32.7 | 11.6 | 27.7 |
| 경상남도 | 산청군 | 47.0 | 17.2 | 11.2 | 35.7 | 9.9 | 100.0 | 30.4 | 10.9 | 17.8 |
| 경상남도 | 함양군 | 23.7 | 14.2 | 9.4 | 31.9 | 8.9 | 100.0 | 25.1 | 8.8 | 16.3 |
| 경상남도 | 거창군 | 22.0 | 15.7 | 10.9 | 30.6 | 9.6 | 100.0 | 25.3 | 14.4 | 18.1 |
| 경상남도 | 합천군 | 28.8 | 15.9 | 12.9 | 32.2 | 9.0 | 100.0 | 29.3 | 11.4 | 17.8 |
| 제주도 | 제주시 | 20.1 | 12.5 | 6.4 | 18.2 | 5.4 | 100.0 | 35.1 | 5.7 | 9.4 |
| 제주도 | 서귀포시 | 26.7 | 12.1 | 5.5 | 17.8 | 5.6 | 100.0 | 37.8 | 4.1 | 7.7 |

주: 노인복지 항목은 '독립적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는 저소득 노인가구(6.5% 추정)*를 대상으로 함. 각 시·군의 평균 값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제가노인지원서비스 이용자 수+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수'의 비율로서, 최소 6.5% 이상의 노인에게 제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봄.

* [산세] 6.5%=16.6%(제가노인 중 IADL제한) × 70%(7초연금수급비율) × 55.9%(독거 및 부부동거가구 비율)

□ 정주여건 및 경제활동 부문

| 구분 | | 3. 정주여건 | | | | | | | | | | 4. 경제활동 | |
|---------------------|------|------------|------------|------------|------------|-------------|-------------|-------------|-------------|-------------|-------------|--------------------|-----|
| 시·도명 | 시·군명 | 주택 (%) | 상수도 (%) | 하수도 (%) | 난방 (%) | 대중교통 (%) | 생활폐기물 (%) | | 방범설비 (%) | 경찰순찰 (%) | 소방출동 (%) | 4. 경제활동 | |
| | | | | | | | 영능 | 생활 | | | | 창업·취업 컨설팅교육 (%) | 86% |
| 농어촌서비스기준 목표치 | | 23% | 85% | 76% | 68% | 100% | 100% | 100% | 60% | 100% | 70% | 86% | |
| 부산광역시 | 기장군 | - | 97.4 | 96.4 | 89.3 | 94.8 | 0.0 | 2.2 | 100.0 | 88.8 | 46.6 | 100.0 | |
| 대구광역시 | 달성군 | - | 100.0 | 92.1 | 90.2 | 94.2 | 55.6 | 72.7 | 29.5 | 98.9 | 67.2 | 100.0 | |
| 인천광역시 | 강화군 | - | 69.9 | 37.0 | 76.8 | 98.9 | 61.5 | 48.9 | 79.8 | 96.7 | 66.7 | 100.0 | |
| 인천광역시 | 옹진군 | - | 40.2 | 60.6 | 0.0 | 100.0 | 100.0 | 24.4 | 100.0 | 0.0 | 47.4 | 100.0 | |
| 울산광역시 | 울주군 | - | 72.9 | 97.8 | 97.1 | 97.1 | 0.0 | 0.0 | 62.9 | 93.0 | 64.4 | 100.0 | |
| 세종특별자치시 | | - | 89.9 | - | 110.4 | 95.7 | 100.0 | 7.6 | 85.2 | 97.0 | 70.6 | 100.0 | |
| 경기도 | 평택시 | - | 100.0 | - | 102.8 | 97.1 | 55.6 | 71.8 | 28.0 | 100.0 | 40.3 | 100.0 | |
| 경기도 | 남양주시 | - | 86.2 | - | 93.2 | 100.0 | 0.0 | 37.1 | 96.9 | 97.5 | 39.7 | 100.0 | |
| 경기도 | 용인시 | - | 92.0 | - | 77.9 | 100.0 | 71.4 | 12.3 | 21.1 | 97.9 | 35.8 | 100.0 | |
| 경기도 | 파주시 | - | 95.9 | - | 72.8 | 97.7 | 7.7 | 2.8 | 98.0 | 94.0 | 50.9 | 100.0 | |
| 경기도 | 이천시 | - | 89.5 | - | 82.2 | 96.6 | 100.0 | 4.4 | 100.0 | 98.3 | 67.9 | 100.0 | |
| 경기도 | 안성시 | - | 83.2 | - | 98.3 | 90.7 | 50.0 | 13.8 | 95.1 | 98.0 | 62.1 | 100.0 | |
| 경기도 | 김포시 | - | 96.5 | - | 90.5 | 91.2 | 100.0 | 7.3 | 98.5 | 90.6 | 43.2 | 100.0 | |
| 경기도 | 화성시 | - | 100.0 | - | 86.1 | 95.8 | 69.2 | 1.6 | 100.9 | 98.7 | 58.5 | 100.0 | |
| 경기도 | 광주시 | - | 53.0 | - | 85.4 | 100.0 | 0.0 | 38.2 | 33.3 | 92.1 | 40.4 | 100.0 | |
| 경기도 | 양주시 | - | 97.4 | - | 78.2 | 100.0 | 20.0 | 30.4 | 46.1 | 90.7 | 41.5 | 100.0 | |
| 경기도 | 포천시 | - | 88.9 | - | 77.8 | 98.8 | 33.3 | 0.0 | 100.0 | 100.0 | 59.0 | 100.0 | |
| 경기도 | 여주시 | - | 76.9 | - | 58.2 | 95.9 | 100.0 | 26.6 | 95.7 | 100.0 | 81.7 | 100.0 | |
| 경기도 | 연천군 | - | 97.1 | 72.5 | 74.0 | 89.5 | 60.0 | 1.0 | 88.8 | 94.3 | 54.7 | 100.0 | |
| 경기도 | 기평군 | - | 44.4 | 82.8 | 63.9 | 100.0 | 16.7 | 97.6 | 96.0 | 100.0 | 64.2 | 100.0 | |
| 경기도 | 양평군 | - | 75.3 | 79.2 | 60.0 | 98.1 | 66.7 | 17.0 | 98.9 | 99.1 | 66.5 | 100.0 | |

| 구분 | | 3. 정주여건 | | | | | | | | | | 4. 경제활동 | |
|--------------|------|-----------|------------|------------|-----------|-------------|-----------|-------|-------------|-------------|-------------|-------------------------------|-------|
| 시·도명 | 시·군명 | 주택 (%) | 상수도 (%) | 하수도 (%) | 난방 (%) | 대중교통 (%) | 생활폐기물 (%) | | 방범설비 (%) | 경찰순찰 (%) | 소방출동 (%) | 4. 경제활동 창업·취업 컨설팅교육 (%) | |
| 농어촌서비스기준 목표치 | | 23% | 85% | 76% | 68% | 100% | 영능 | 생활 | 60% | 100% | 70% | 86% | 86% |
| 강원도 | 춘천시 | - | 90.7 | - | 0.0 | 100.0 | 90.0 | 93.3 | 37.1 | 94.8 | 58.9 | 100.0 | 100.0 |
| 강원도 | 원주시 | - | 80.8 | - | 95.6 | 100.0 | 100.0 | 4.8 | 27.6 | 88.7 | 52.0 | 100.0 | 100.0 |
| 강원도 | 강릉시 | - | 78.7 | - | 19.3 | 100.0 | 100.0 | 100.0 | 26.5 | 89.8 | 58.4 | 100.0 | 100.0 |
| 강원도 | 삼척시 | - | 59.0 | - | 23.5 | 94.4 | 87.5 | 100.0 | 34.2 | 97.4 | 45.3 | 0.0 | 0.0 |
| 강원도 | 홍천군 | - | 61.8 | 78.6 | 78.3 | 94.9 | 100.0 | 14.6 | 89.4 | 100.0 | 72.4 | 100.0 | 100.0 |
| 강원도 | 횡성군 | - | 81.0 | 70.2 | 55.7 | 100.0 | 100.0 | 91.5 | 46.6 | 99.2 | 77.5 | 100.0 | 100.0 |
| 강원도 | 영월군 | - | 55.0 | 78.8 | 52.8 | 96.2 | 100.0 | 36.4 | 98.4 | 88.8 | 79.0 | 100.0 | 100.0 |
| 강원도 | 평창군 | - | 80.1 | 82.0 | 0.0 | 86.1 | 100.0 | 0.5 | 25.1 | 100.0 | 69.4 | 100.0 | 100.0 |
| 강원도 | 정선군 | - | 66.8 | 90.1 | 13.1 | 98.2 | 88.9 | 24.6 | 76.5 | 99.7 | 73.2 | 0.0 | 0.0 |
| 강원도 | 철원군 | - | 82.3 | 83.0 | 0.0 | 80.0 | 63.6 | 6.8 | 98.3 | 100.0 | 75.5 | 0.0 | 0.0 |
| 강원도 | 화천군 | - | 56.4 | 72.1 | 0.0 | 87.2 | 100.0 | 97.7 | 45.3 | 97.1 | 74.5 | 100.0 | 100.0 |
| 강원도 | 양구군 | - | 60.9 | 89.2 | 0.0 | 90.9 | 100.0 | 47.1 | 95.3 | 99.7 | 86.8 | 0.0 | 0.0 |
| 강원도 | 인제군 | - | 86.1 | 83.9 | 0.0 | 94.6 | 100.0 | 14.1 | 100.0 | 96.2 | 80.0 | 100.0 | 100.0 |
| 강원도 | 고성군 | - | 91.7 | 88.8 | 8.8 | 91.8 | 100.0 | 26.6 | 84.4 | 100.0 | 80.0 | 100.0 | 100.0 |
| 강원도 | 양양군 | - | 87.2 | 83.7 | 31.8 | 85.9 | 100.0 | 68.5 | 70.2 | 0.0 | 73.7 | 0.0 | 0.0 |
| 충청북도 | 충주시 | - | 81.3 | - | 20.2 | 100.0 | 100.0 | 68.6 | 33.1 | 100.4 | 74.1 | 100.0 | 100.0 |
| 충청북도 | 제천시 | - | 76.9 | - | 25.5 | 93.5 | 100.0 | 17.6 | 33.3 | 94.6 | 78.4 | 100.0 | 100.0 |
| 충청북도 | 청주시 | - | 82.0 | - | 97.0 | 91.7 | 92.3 | 1.4 | 89.0 | 96.3 | 58.0 | 100.0 | 100.0 |
| 충청북도 | 보은군 | - | 23.6 | 79.1 | 33.2 | 90.4 | 100.0 | 10.0 | 68.3 | 100.3 | 77.3 | 100.0 | 100.0 |
| 충청북도 | 옥천군 | - | 76.7 | 91.0 | 55.6 | 95.8 | 100.0 | 10.1 | 99.1 | 96.8 | 79.8 | 100.0 | 100.0 |
| 충청북도 | 영동군 | - | 70.8 | 72.7 | 45.5 | 97.6 | 100.0 | 77.6 | 100.0 | 98.7 | 79.4 | 100.0 | 100.0 |
| 충청북도 | 진천군 | - | 88.4 | 86.5 | 67.4 | 98.8 | 100.0 | 8.1 | 72.3 | 96.1 | 79.2 | 100.0 | 100.0 |
| 충청북도 | 괴산군 | - | 53.0 | 49.6 | 43.9 | 99.2 | 100.0 | 0.4 | 96.8 | 99.3 | 88.0 | 100.0 | 100.0 |
| 충청북도 | 음성군 | - | 88.2 | 64.2 | 63.4 | 98.2 | 100.0 | 3.5 | 93.6 | 94.4 | 76.3 | 0.0 | 0.0 |
| 충청북도 | 단양군 | - | 53.9 | 77.4 | 32.1 | 96.0 | 100.0 | 13.2 | 63.8 | 100.4 | 87.5 | 100.0 | 100.0 |
| 충청북도 | 증평군 | - | 99.7 | 97.5 | 87.3 | 100.0 | 100.0 | 3.7 | 101.8 | 0.0 | 58.6 | 100.0 | 100.0 |

| 구분 | | 3. 정주여건 | | | | | | | | | | 4. 경제활동 | |
|--------------|------|-----------|------------|------------|-----------|-------------|-----------|-------|-------------|-------------|-------------|-------------------------------|-----|
| 시·도명 | 시·군명 | 주택 (%) | 상수도 (%) | 하수도 (%) | 난방 (%) | 대중교통 (%) | 생활폐기물 (%) | | 비범설비 (%) | 경철순찰 (%) | 소방활동 (%) | 4. 경제활동 창업·취업 컨설팅교육 (%) | |
| 농어촌서비스기준 목표치 | | 23% | 85% | 76% | 68% | 100% | 100% | 100% | 100% | 60% | 100% | 70% | 86% |
| 충청남도 | 천안시 | - | 62.8 | - | 81.6 | 97.3 | 91.7 | 2.4 | 30.9 | 97.5 | 62.9 | 100.0 | |
| 충청남도 | 공주시 | - | 74.8 | - | 0.0 | 96.1 | 90.0 | 5.2 | 100.0 | 100.0 | 88.5 | 100.0 | |
| 충청남도 | 보령시 | - | 74.2 | - | 0.0 | 100.0 | 63.6 | 10.6 | 85.5 | 93.6 | 87.7 | 100.0 | |
| 충청남도 | 아산시 | - | 94.6 | - | 87.4 | 99.3 | 54.5 | 15.4 | 76.0 | 93.4 | 72.2 | 100.0 | |
| 충청남도 | 서산시 | - | 98.0 | - | 92.5 | 98.3 | 90.0 | 6.2 | 92.7 | 89.1 | 74.8 | 100.0 | |
| 충청남도 | 논산시 | - | 82.4 | - | 17.3 | 96.3 | 23.1 | 10.1 | 100.0 | 90.9 | 83.1 | 100.0 | |
| 충청남도 | 계룡시 | - | 97.4 | - | 0.0 | 92.3 | 0.0 | 0.0 | 100.0 | 0.0 | 47.4 | 0.0 | |
| 충청남도 | 당진시 | - | 83.4 | - | 103.8 | 100.0 | 90.9 | 27.6 | 69.3 | 90.5 | 84.7 | 100.0 | |
| 충청남도 | 금산군 | - | 71.9 | 81.0 | 73.5 | 100.0 | 90.0 | 100.0 | 100.8 | 98.4 | 79.2 | 100.0 | |
| 충청남도 | 부여군 | - | 83.6 | 66.7 | 51.9 | 96.2 | 87.5 | 50.6 | 52.4 | 90.0 | 83.7 | 100.0 | |
| 충청남도 | 서천군 | - | 77.7 | 60.0 | 66.0 | 97.4 | 92.3 | 7.6 | 70.8 | 100.0 | 78.4 | 100.0 | |
| 충청남도 | 청양군 | - | 23.8 | 55.6 | 29.5 | 100.0 | 80.0 | 20.8 | 100.0 | 92.2 | 91.9 | 100.0 | |
| 충청남도 | 홍성군 | - | 74.5 | 73.0 | 67.9 | 97.8 | 72.7 | 0.3 | 64.3 | 73.0 | 84.6 | 0.0 | |
| 충청남도 | 예산군 | - | 55.1 | 62.6 | 69.9 | 98.8 | 66.7 | 0.0 | 74.3 | 81.2 | 91.1 | 100.0 | |
| 충청남도 | 태안군 | - | 94.0 | 59.5 | 54.1 | 100.0 | 100.0 | 4.3 | 83.0 | 98.4 | 88.8 | 100.0 | |
| 전라북도 | 군산시 | - | 93.3 | - | 3.7 | 97.0 | 27.3 | 3.8 | 17.8 | 100.0 | 60.1 | 100.0 | |
| 전라북도 | 익산시 | - | 97.6 | - | 44.0 | 99.1 | 40.0 | 2.2 | 92.5 | 94.5 | 76.5 | 100.0 | |
| 전라북도 | 정읍시 | - | 96.9 | - | 0.0 | 97.7 | 73.3 | 2.9 | 88.1 | 99.1 | 80.9 | 100.0 | |
| 전라북도 | 남원시 | - | 85.7 | - | 0.0 | 99.4 | 100.0 | 18.4 | 100.0 | 94.5 | 85.7 | 100.0 | |
| 전라북도 | 김제시 | - | 99.9 | - | 0.0 | 100.0 | 40.0 | 2.7 | 100.0 | 98.8 | 87.1 | 100.0 | |
| 전라북도 | 완주군 | - | 79.1 | 84.1 | 73.1 | 98.8 | 23.1 | 0.4 | 99.5 | 90.6 | 90.6 | 100.0 | |
| 전라북도 | 진안군 | - | 81.4 | 85.6 | 41.9 | 100.0 | 100.0 | 55.3 | 99.4 | 98.6 | 93.2 | 100.0 | |
| 전라북도 | 무주군 | - | 78.2 | 79.5 | 61.1 | 100.0 | 100.0 | 27.8 | 99.3 | 98.9 | 89.4 | 100.0 | |
| 전라북도 | 장수군 | - | 88.3 | 85.2 | 0.0 | 97.1 | 100.0 | 10.7 | 100.0 | 94.1 | 78.3 | 0.0 | |
| 전라북도 | 임실군 | - | 92.7 | 67.8 | 64.2 | 98.4 | 91.7 | 5.3 | 99.6 | 100.0 | 95.3 | 100.0 | |

| 구분 | | 3. 정주여건 | | | | | | | 4. 경제활동 | | | | |
|------|--------------|-----------|------------|------------|-----------|-------------|-----------|------|-------------|-------------|-------------|-------------------------------|--|
| 시·도명 | 시·군명 | 주택 (%) | 상수도 (%) | 하수도 (%) | 난방 (%) | 대중교통 (%) | 생활폐기물 (%) | | 방범설비 (%) | 경찰순찰 (%) | 소방출동 (%) | 4. 경제활동 창업·취업 컨설팅교육 (%) | |
| | 농어촌서비스기준 목표치 | 23% | 85% | 76% | 68% | 100% | 영능 | 생활 | 60% | 100% | 70% | 86% | |
| 전라북도 | 순창군 | - | 77.3 | 64.1 | 76.8 | 94.4 | 100.0 | 22.4 | 98.4 | 98.7 | 87.1 | 100.0 | |
| 전라북도 | 고창군 | - | 99.5 | 76.0 | 78.6 | 98.3 | 92.9 | 2.5 | 99.5 | 98.4 | 77.1 | 100.0 | |
| 전라북도 | 부안군 | - | 99.7 | 85.4 | 70.8 | 100.0 | 100.0 | 3.5 | 93.3 | 92.7 | 73.7 | 100.0 | |
| 전라남도 | 여수시 | - | 89.8 | - | 0.0 | 92.6 | 57.1 | 3.8 | 43.9 | 96.2 | 77.3 | 100.0 | |
| 전라남도 | 순천시 | - | 92.7 | - | 0.0 | 96.7 | 81.8 | 5.8 | 27.1 | 98.8 | 78.2 | 100.0 | |
| 전라남도 | 나주시 | - | 54.4 | - | 66.3 | 98.7 | 15.4 | 0.0 | 99.8 | 96.5 | 84.0 | 100.0 | |
| 전라남도 | 광양시 | - | 76.1 | - | 88.6 | 98.1 | 71.4 | 2.0 | 62.9 | 98.1 | 82.1 | 100.0 | |
| 전라남도 | 담양군 | - | 78.9 | 78.0 | 67.5 | 99.2 | 41.7 | 6.0 | 81.4 | 90.7 | 88.2 | 100.0 | |
| 전라남도 | 곡성군 | - | 83.0 | 83.4 | 36.3 | 98.2 | 90.9 | 5.5 | 92.3 | 98.0 | 89.8 | 100.0 | |
| 전라남도 | 구례군 | - | 78.1 | 95.7 | 44.9 | 98.5 | 62.5 | 0.0 | 100.0 | 97.4 | 73.7 | 0.0 | |
| 전라남도 | 고흥군 | - | 72.3 | 58.5 | 27.5 | 100.0 | 93.8 | 0.0 | 99.6 | 99.8 | 88.3 | 0.0 | |
| 전라남도 | 보성군 | - | 38.6 | 65.8 | 15.0 | 100.0 | 75.0 | 2.5 | 100.0 | 100.0 | 89.2 | 0.0 | |
| 전라남도 | 화순군 | - | 80.4 | 84.0 | 91.8 | 99.4 | 100.0 | 0.0 | 43.9 | 99.7 | 81.8 | 0.0 | |
| 전라남도 | 장흥군 | - | 91.3 | 72.4 | 32.8 | 97.7 | 80.0 | 3.2 | 100.0 | 98.0 | 84.7 | 0.0 | |
| 전라남도 | 강진군 | - | 60.2 | 68.6 | 0.0 | 95.7 | 90.9 | 1.0 | 95.2 | 100.3 | 77.0 | 100.0 | |
| 전라남도 | 해남군 | - | 71.9 | 57.0 | 79.3 | 100.0 | 100.0 | 5.4 | 98.1 | 95.7 | 75.4 | 0.0 | |
| 전라남도 | 영암군 | - | 88.1 | 78.1 | 0.0 | 93.3 | 54.5 | 4.7 | 100.0 | 98.7 | 84.1 | 0.0 | |
| 전라남도 | 무안군 | - | 99.8 | 73.8 | 0.0 | 98.1 | 100.0 | 0.0 | 42.2 | 95.8 | 87.7 | 100.0 | |
| 전라남도 | 합평군 | - | 95.2 | 75.4 | 42.2 | 99.0 | 100.0 | 0.0 | 24.9 | 98.3 | 90.4 | 0.0 | |
| 전라남도 | 영광군 | - | 93.8 | 66.2 | 43.1 | 100.0 | 90.9 | 0.0 | 88.0 | 92.6 | 89.3 | 100.0 | |
| 전라남도 | 장성군 | - | 91.8 | 64.8 | 68.3 | 94.8 | 81.8 | 3.8 | 100.0 | 98.3 | 90.8 | 100.0 | |
| 전라남도 | 완도군 | - | 95.2 | 68.0 | 0.0 | 100.0 | 91.7 | 0.0 | 89.8 | 98.2 | 92.2 | 0.0 | |
| 전라남도 | 진도군 | - | 98.2 | 70.1 | 0.0 | 97.2 | 100.0 | 5.0 | 100.0 | 98.6 | 90.4 | 100.0 | |
| 전라남도 | 신안군 | - | 86.9 | 41.0 | 0.0 | 85.7 | 92.9 | 2.0 | 20.7 | 0.0 | 89.8 | 0.0 | |

| 구분 | | 3. 정주여건 | | | | | | | 4. 경제활동 | | | | |
|--------------|------|-----------|------------|------------|-----------|-------------|-----------|-------|-------------|-------------|-------------|--------------------|-------|
| 시·도명 | 시·군명 | 주택 (%) | 상수도 (%) | 하수도 (%) | 난방 (%) | 대중교통 (%) | 생활폐기물 (%) | | 비범설비 (%) | 경찰순찰 (%) | 소방출동 (%) | 4. 경제활동 | |
| 농어촌서비스기준 목표치 | | 23% | 85% | 76% | 68% | 100% | 영능 | 생활 | 60% | 100% | 70% | 창업·취업 컨설팅교육 (%) | 86% |
| 경상북도 | 포항시 | - | 76.2 | - | 86.0 | 90.4 | 28.6 | 0.0 | 38.4 | 79.6 | 58.4 | 100.0 | 100.0 |
| 경상북도 | 경주시 | - | 78.1 | - | 68.5 | 98.5 | 75.0 | 37.1 | 30.5 | 92.3 | 70.7 | 100.0 | 100.0 |
| 경상북도 | 김천시 | - | 57.9 | - | 0.0 | 97.2 | 100.0 | 0.0 | 98.6 | 97.3 | 70.1 | 0.0 | 0.0 |
| 경상북도 | 안동시 | - | 74.2 | - | 13.0 | 99.4 | 100.0 | 61.6 | 70.3 | 98.3 | 85.8 | 100.0 | 100.0 |
| 경상북도 | 구미시 | - | 96.3 | - | 79.1 | 95.7 | 100.0 | 12.9 | 45.5 | 100.0 | 56.8 | 100.0 | 100.0 |
| 경상북도 | 영주시 | - | 56.9 | - | 40.7 | 95.6 | 100.0 | 23.5 | 100.0 | 96.9 | 73.5 | 100.0 | 100.0 |
| 경상북도 | 영천시 | - | 91.5 | - | 60.0 | 99.4 | 90.9 | 9.5 | 102.2 | 98.5 | 72.7 | 100.0 | 100.0 |
| 경상북도 | 상주시 | - | 48.6 | - | 15.4 | 99.5 | 100.0 | 82.2 | 43.2 | 100.0 | 71.6 | 100.0 | 100.0 |
| 경상북도 | 문경시 | - | 78.4 | - | 0.0 | 96.5 | 100.0 | 74.3 | 94.5 | 100.0 | 82.1 | 0.0 | 0.0 |
| 경상북도 | 경산시 | - | 95.3 | - | 100.0 | 94.6 | 62.5 | 9.3 | 100.0 | 93.5 | 59.9 | 100.0 | 100.0 |
| 경상북도 | 군위군 | - | 88.4 | 49.8 | 28.2 | 95.5 | 100.0 | 0.0 | 100.0 | 99.8 | 70.8 | 100.0 | 100.0 |
| 경상북도 | 의성군 | - | 93.5 | 51.1 | 35.6 | 97.2 | 94.4 | 5.8 | 44.5 | 100.0 | 70.2 | 100.0 | 100.0 |
| 경상북도 | 청송군 | - | 71.9 | 52.6 | 0.0 | 97.6 | 100.0 | 34.6 | 100.0 | 96.0 | 81.1 | 100.0 | 100.0 |
| 경상북도 | 영양군 | - | 86.8 | 63.7 | 0.0 | 97.2 | 100.0 | 54.8 | 60.0 | 96.1 | 80.6 | 0.0 | 0.0 |
| 경상북도 | 영덕군 | - | 95.8 | 77.8 | 31.8 | 86.7 | 100.0 | 27.5 | 53.4 | 94.2 | 53.7 | 0.0 | 0.0 |
| 경상북도 | 청도군 | - | 86.0 | 57.7 | 30.4 | 95.8 | 77.8 | 13.2 | 59.9 | 89.9 | 85.7 | 100.0 | 100.0 |
| 경상북도 | 고령군 | - | 98.8 | 63.9 | 58.0 | 91.3 | 100.0 | 100.0 | 73.2 | 99.8 | 86.0 | 0.0 | 0.0 |
| 경상북도 | 성주군 | - | 73.8 | 50.7 | 32.1 | 99.0 | 50.0 | 96.6 | 82.0 | 100.0 | 75.6 | 100.0 | 100.0 |
| 경상북도 | 칠곡군 | - | 88.4 | 77.6 | 97.1 | 98.5 | 62.5 | 9.3 | 33.8 | 95.8 | 66.9 | 100.0 | 100.0 |
| 경상북도 | 예천군 | - | 89.0 | 66.3 | 61.8 | 95.6 | 100.0 | 48.0 | 96.4 | 100.6 | 77.3 | 100.0 | 100.0 |
| 경상북도 | 봉화군 | - | 57.9 | 74.3 | 38.5 | 98.6 | 100.0 | 100.0 | 88.5 | 98.9 | 75.9 | 0.0 | 0.0 |
| 경상북도 | 울진군 | - | 75.3 | 72.0 | 41.4 | 98.7 | 90.0 | 64.1 | 60.0 | 100.0 | 64.2 | 0.0 | 0.0 |
| 경상북도 | 울릉군 | - | 92.1 | 5.5 | 0.0 | 100.0 | 0.0 | 8.0 | 88.0 | 92.8 | 50.0 | 0.0 | 0.0 |

| 구분 | | 3. 정주여건 | | | | | | | 4. 경제활동 | | | | |
|--------------|------|-----------|------------|------------|-----------|-------------|-----------|-------|-------------|-------------|-------------|--------------------|-----|
| 시·도명 | 시·군명 | 주택 (%) | 상수도 (%) | 하수도 (%) | 난방 (%) | 대중교통 (%) | 생활폐기물 (%) | | 비범설비 (%) | 경찰순찰 (%) | 소빙출동 (%) | 창업·취업 컨설팅교육 (%) | |
| | | | | | | | | 영능 | 생활 | | | | |
| 농어촌서비스기준 목표치 | | 23% | 85% | 76% | 68% | 100% | 100% | 100% | 100% | 60% | 100% | 70% | 86% |
| 경상남도 | 창원시 | - | 88.7 | - | 86.1 | 97.2 | 50.0 | 4.6 | 27.7 | 91.2 | 51.4 | 100.0 | |
| 경상남도 | 진주시 | - | 99.9 | - | 38.8 | 94.3 | 37.5 | 0.0 | 28.7 | 94.8 | 74.0 | 100.0 | |
| 경상남도 | 통영시 | - | 97.0 | - | 0.0 | 100.0 | 28.6 | 82.1 | 97.2 | 100.0 | 72.2 | 100.0 | |
| 경상남도 | 사천시 | - | 98.0 | - | 101.9 | 96.2 | 0.0 | 0.8 | 100.0 | 96.9 | 72.3 | 0.0 | |
| 경상남도 | 김해시 | - | 88.4 | - | 97.1 | 100.0 | 71.4 | 0.0 | 24.2 | 96.6 | 61.8 | 100.0 | |
| 경상남도 | 밀양시 | - | 68.5 | - | 0.0 | 99.1 | 72.7 | 12.0 | 100.0 | 95.9 | 78.8 | 100.0 | |
| 경상남도 | 거제시 | - | 92.5 | - | 0.0 | 100.0 | 66.7 | 0.0 | 100.0 | 95.3 | 80.2 | 100.0 | |
| 경상남도 | 양산시 | - | 92.2 | - | 87.9 | 100.0 | 40.0 | 15.7 | 22.3 | 100.0 | 60.7 | 100.0 | |
| 경상남도 | 의령군 | - | 65.0 | 67.2 | 64.0 | 95.5 | 69.2 | 19.7 | 100.0 | 99.7 | 93.3 | 100.0 | |
| 경상남도 | 합안군 | - | 96.1 | 67.9 | 69.4 | 100.0 | 50.0 | 31.4 | 77.6 | 98.4 | 90.2 | 100.0 | |
| 경상남도 | 창녕군 | - | 99.7 | 78.6 | 26.5 | 96.2 | 100.0 | 18.6 | 33.3 | 96.9 | 78.3 | 0.0 | |
| 경상남도 | 고성군 | - | 64.8 | 70.5 | 54.2 | 95.7 | 42.9 | 100.0 | 85.2 | 100.0 | 88.3 | 100.0 | |
| 경상남도 | 남해군 | - | 76.9 | 81.2 | 0.0 | 98.7 | 100.0 | 0.0 | 100.0 | 94.9 | 87.7 | 100.0 | |
| 경상남도 | 하동군 | - | 49.9 | 78.3 | 59.3 | 95.1 | 69.2 | 11.6 | 100.0 | 86.9 | 86.4 | 100.0 | |
| 경상남도 | 산청군 | - | 44.5 | 68.8 | 0.0 | 96.3 | 54.5 | 28.5 | 99.0 | 98.4 | 92.8 | 0.0 | |
| 경상남도 | 합양군 | - | 43.7 | 78.7 | 58.1 | 93.8 | 100.0 | 100.0 | 70.2 | 89.8 | 84.6 | 100.0 | |
| 경상남도 | 거창군 | - | 42.8 | 84.2 | 71.9 | 98.9 | 100.0 | 65.9 | 86.1 | 100.1 | 81.7 | 100.0 | |
| 경상남도 | 합천군 | - | 45.1 | 69.0 | 0.0 | 95.8 | 82.4 | 21.8 | 53.7 | 97.2 | 92.2 | 0.0 | |
| 제주도 | 제주시 | - | 34.8 | - | 0.0 | 100.0 | 71.4 | 100.0 | 68.8 | 100.4 | 63.0 | 100.0 | |
| 제주도 | 서귀포시 | - | 0.0 | - | 0.0 | 100.0 | 100.0 | 0.0 | 63.2 | 97.8 | 67.0 | 0.0 | |

주 1) 주택 항목은 데이터(환경부 협조자료)상의 한계로 인해 시·군별 이행실태 측정이 불가함.

2) 하수도 항목은 농어촌서비스기준상 '군 지역'을 대상으로 하므로 군에 대하여 점검함.

3) 대중교통 항목은 1일 3회 이상 버스 이용이 가능한 시·군 내 법정리 비율임.

4) 창업·취업컨설팅교육 항목은 시·군에서 창업·취업 관련 전문적 컨설팅·교육서비스를 연 1회 이상 운영한 경우 100%, 그렇지 않은 경우 0%로 측정함.

참고문헌

- 김광선, 송미령, 김용렬, 권인혜, 윤병석. (2010). 농어촌서비스기준 운용방안 및 농어촌 통계기반 구축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위원회. (2020). 2020~2024 제 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5개년 기본계획.
- 농림어업총조사. (2015). 지역조사.
- 송미령, 김광선, 박주영. (2009). 기초생활권 생활서비스 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송미령, 박시현, 성주인, 김광선, 권인혜. (2009). 지역발전정책 변화에 대응한 농어촌정책 방향 설정 및 농어촌서비스기준 도입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